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FTA TRADE REPORT

Vol.04

December 2015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FTA TRADE REPORT

Vol.04

December 2015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Contents

FTA FOCUS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와 관세사의 역할 ····· 004

안치성 | 한국관세사회 회장

- 한–중 FTA와 FTA 추세
- FTA 활용률 제고 노력
- 수출중소기업의 영세성과 원산지관리 현황
- 활용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

FTA 최근 동향

FTA 최근 동향 ····· 013

- 관세청 FTA 동향
- 우리나라 FTA 동향
- 해외 FTA 관련 동향
- 제7회 국제원산지 포럼 주요내용

FTA ANALYSIS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유아용품 FTA 수입동향과 시사점 ····· 073

임병호 |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한–호주 FTA 발효 1주년:
영연방 국가의 FTA 활용현황과 전망 ····· 118

권민경 |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FTA EXPERT

① 전문가 기고 메가 FTA 전망 및 활용방안 ····· 163

김한성 교수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② 전문가 기고 메가 FTA 부상과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 ····· 171

김지선 수석연구원 | 포스코경영연구원

③ 전문가 기고 메가 FTA 동향과 전망 ····· 182

김영귀 팀장, 강민지 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Trade Report

FTA와 품목분류

융합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 191
오수교 관세사 | KPMG 세정관세법인 고문

FTA 활용 성공사례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 206

- 동반성장 모델
-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모델
- FTA를 활용한 영세기업 성장 모델
-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기업 협력형 모델
- 체약상대국 FTA를 활용한 생산 · 물류거점 설립 모델
- 누적기준 활용 모델 등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그것이 알고싶다. What is the 원산지관리사? ····· 257
원산지관리사 합격 수기 ····· 260

활용하기 쉬운 FTA PASS

FTA-PASS 이모저모 ····· 267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FTA 100% 활용하기

베트남 통관환경 동향 및 FTA 활용방안 ····· 270
명재호 | 청솔관세법인 관세사

FTA 지도

지도로 보는 2015 상반기
FTA 특혜 대상 품목의 수출입실적
– 품목별 세분화(MTI 6단위 기준) ····· 281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와 관세사의 역할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

01. 한-중 FTA와 FTA 추세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가 타결된 지 1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 한-중 FTA 발효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서비스투자)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어, FTA 협정 타결 후 추진하였던 모든 협정의 국회비준이 완료되었다.

한-중 FTA는 우리에게 각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비중이 21.4%로 가장 높고 이제까지 체결된 FTA 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이다. 전통적인 경제통합에서 지리적 인접성은 기본적 요인으로, EU, NAFTA 등 많은 경제통합체는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구성 · 운영되어 왔다.

또한 심리적 거리 역시 무역확대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한류의 중심국가로서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국 관광객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여타 FTA보다 빠른 속도로 무역확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국제무역환경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①] 메가 FTA는 원산지규정의 단일화에 따른 무역비용 감소의 장점이 있어 보다 활발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2. FTA 활용률 제고 노력

FTA 발효가 자동적으로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여야만 FTA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FTA 수출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년 거대경제권인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면서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민간기관에서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펼쳤다.

FTA의 활용률 제고와 관련하여 「FTA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2010)」는 북미, 유럽 사례로 볼 때, 2015년에 우리나라의 FTA 평균 유효수출활용률을 최소 80%대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한 바 있다.[②]

① 우리나라는 아직 12개국으로 구성된 TPP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② 인하대 산학협력단, 「FTA 활용활성화방안 연구」, 2010.10, pp.90-91.

관세청(201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 협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평균 FTA 활용률[③]은 66.9%로 전년보다 4%p 상승하였다. EU(80.9%) 및 미국(76.4%)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8.5%), 인도(43%) 등과의 FTA 활용은 저조하였다.[④] 2013년 5월 발효된 한-터키 FTA도 70.2%의 비교적 높은 수출활용률을 기록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인식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

(단위: %)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체
대기업	82.7	95.6	57.7	48.9	**84.3**	98.1	**84.5**	73.1	**76.9**
중소기업	70.6	67.9	29.6	35.4	**76.4**	56.3	**69.2**	66.6	**57.3**
전체	78.4	80.5	38.5	43.0	**80.9**	92.0	**76.4**	70.2	**66.9**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3년 12월

③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 중에서 특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비중이다.
④ 낮은 관세양허, 복잡한 원산지증명 등으로 FTA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03. 수출중소기업의 영세성과 원산지관리 현황

이제까지 FTA 활용 지원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지만, 기대했던 활용률 제고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FTA 활용률 제고의 문제점을 수출중소기업의 규모와 원산지관리의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수출중소기업 현황을 보면,[⑤] 2012년 수출중소기업 수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85,866개이며, 금액별로는 5만 달러 이하 수출업체가 35,843개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으며 전체 중소 수출업체의 52.1%가 10만 달러 이하를 수출하였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14,459개사로 전체의 16.9%에 불과하였고, 연간 50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3,992개사로 전체의 4.7%에 불과하여 정부의 500만 달러 이상 강소 수출기업 육성효과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수출금액별 중소기업 현황

(개, %)

업체구분	업체 수	비중	누적 업체 수	누적비중
5만 달러 이하	35,843	41.7	35,843	41.7
5만 달러 초과~10만 달러 이하	8,865	10.3	4,708	52.1
10만 달러 초과~50만 달러 이하	19,726	23.0	64,434	75.0
50만 달러 초과~100만 달러 이하	6,973	8.1	71,407	83.2
100만 달러 초과~500만 달러 이하	10,467	12.2	81,874	95.4
500만 달러 초과~10억 달러 이하	3,992	4.7	85,86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⑤ 장상식 외,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3. 2, pp.6-8.

둘째, FTA 수출활용률 제고의 관건은 원산지 문서관리 특히, 정확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다.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초자료이고 사후검증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자료이기 때문이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 생산업체와 수출용 원재료 공급업체가 발급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이 대부분 수출과 관련 없는 국내부품 납품업자(협력업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관세평가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사실 수출과 거의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에 정확한 원산지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협력업체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원산지관리에 있어 사후검증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부담만 있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어 수출기업을 거래업체로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자 또한 FTA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업체 내 업무 비중은 낮아 원산지관리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협력업체는 원산지판정을 위한 기초정보, BOM, 원산지별 재고, 원산지증빙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하나, ERP 등 시스템 미비와 재고관리 미흡으로 FTA 원산지판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산지관리업무를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관세평가에 기초한 가격결정, HS Code 분류, 충분가공 및 직접운송 등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협력업체로서는 자체인력 부족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세중소기업의 예산 부족 등으로 추가인력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1인이 2역에서 3역까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갖고 있다.

〈표3〉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업무 및 현황

	주요 업무	현황
관리 측면	- 원산지판정 기초 정보 - BOM(Bill Of Material) - 원산지별 재고 - 원산지증빙자료	- ERP 등 시스템 운영미비와 재고관리 미흡 ⇨ FTA 판정 및 사후관리 부실 불가피
전문성 측면	- 원산지결정기준 - 관세평가에 기초한 가격결정 - HS Code 분류 - 충분가공 및 직접운송 입증	- FTA 원산지 규정 숙지 및 적용 어려움 ⇨ 전문성 확보 사실상 불가능

04. 활용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

FTA 활용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전문성과 영세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전문가인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기존 연구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는 전문인력 부재이다. 「FTA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2010)」는 다음과 같은 FTA 활용지원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⑥] 첫째, 실무자 및 CEO교육, 원산지관리사 육성, FTA 동영상, 대학 강좌 개설 시 초기 세팅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이 원산지 사후검증에서 불리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관리 실무전문가의 육성 ·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FTA 교육과정을 통해 성공사례(Best Practice), 원산지 증명 등 활용방법에 대한 내실 있는 CEO교육 및 실무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FTA 교육프로그램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화 및 중복교육의 최소화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인하대 산학협력단, 「FTA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2010.10, pp.106-7.

이러한 육성방안에 맞추어 정부와 유관기관은 전문교육 실시, 대학 강좌의 개설 지원,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매년 꾸준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2010)」에 따르면,[⑦] FTA 활용과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품목분류, 관세평가,[⑧]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전문지식을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비교적 쉽게 갖출 수 있는 인적 집단은 세관공무원과 관세사로 한정된다. 그러나 세관공무원 중 다수의 인원을 FTA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국의 관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산지확인서 작성 · 발급에는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최근 원산지관리사 이외에 원산지실무사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운용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대학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단시간의 한시적 교육만으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을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해 사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은 상당기간의 실무와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⑦ 대외정책경제연구원,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 2010.12.15, p.312.
⑧ FTA 원산지규정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될 경우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이나 본선인도조건(FOB) 등 어떤 것을 적용하는가는 수출국내의 운임 등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만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전제가 되는 것이 관세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국가의 FTA에서도 동일하다.

FTA는 관세양허 스케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되고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장차 필요한 원산지관리 인력을 추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한 후 장기적으로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FTA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분야별 수출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앞선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2010)」 연구는 현실적으로 FTA 전문지식을 보유한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도 관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관세사 100여 명을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하고 있다.

공익관세사의 활성화는 기존 세관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세중소기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일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원산지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협력업체는 안정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으로는 안정적인 원산지관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FTA 전담자의 여부 등 중소기업의 여건에 따라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관세사에게 원산지관리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관세사에게 아웃소싱하는데 따른 예산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이나 협력업체는 사후검증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관련 소명자료를 관리하고, 검증기관의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수많은 원자재 품목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 ·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떨어지므로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도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은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 활용 시 겪는 원산지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FTA-PASS를 무료로 개발 ·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1만 1,850개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⑨] 앞으로도 FTA-PASS는 계속 보완되고 보다 정교하게 진화될 것이며, 수출중소기업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FTA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이나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때까지, 관세사가 무료로 개발 · 보급되고 있는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관리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간 원산지관리에 대한 교육,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수출기업은 혜택 없이 비용과 검증부담만 가중되는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력업체는 수출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확보하기 위해 겪는 고충을 알아야 한다.

수출기업은 FTA에 따른 경제적 과실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면서 상생협력을 이루길 기대한다.

⑨ 이명구,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현황과 무역업계의 대응방안, 관세와무역, 2015.10, p.22.

FTA 최근 동향

관세청 FTA 동향
우리나라 FTA 동향
해외 FTA 관련 동향
제7회 국제원산지 포럼 주요내용

FTA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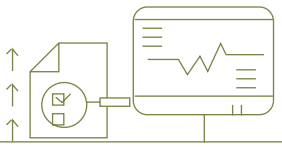

01. 관세청 FTA 동향

관세청 2015년 2호 검증 동향 제공, 2015년 상반기 수출물품 검증 현황 한눈에 (2015.10.01.)

관세청은 지난 10월 1일 관세청 2015년 검증동향 2호를 발표하였다. 'Verification Status'에서는 지난 1호에 이어 검증 동향을 알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2015년 상반기 수출물품 검증 현황(상대국 → 우리나라)에서도 세부적으로 협정별, 품목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협정별로는 EU측에서 검증 요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EU는 무작위(Random) 검증 요청이 활발하며 인증수출자 유효성,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해 검증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한-EU FTA를 적용받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오류를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세관 및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통보를 하여 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다.

● 2015년 상반기 수출물품 검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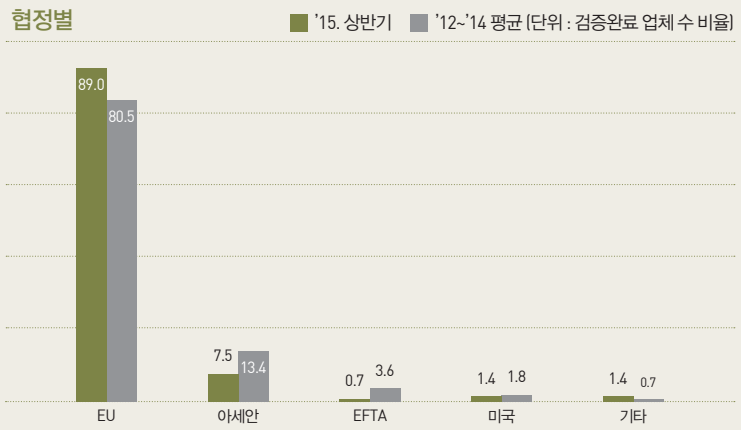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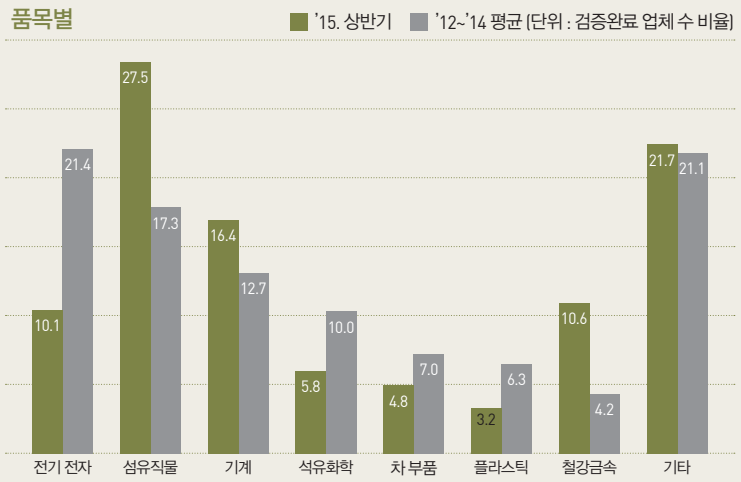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하는 주력 수출품목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EU, 미국 등에서 반복적으로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검증을 요청하고 있으며, 유사품목과 유사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섬유직물, 기계류 수출기업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 2015년 상반기 수입물품 검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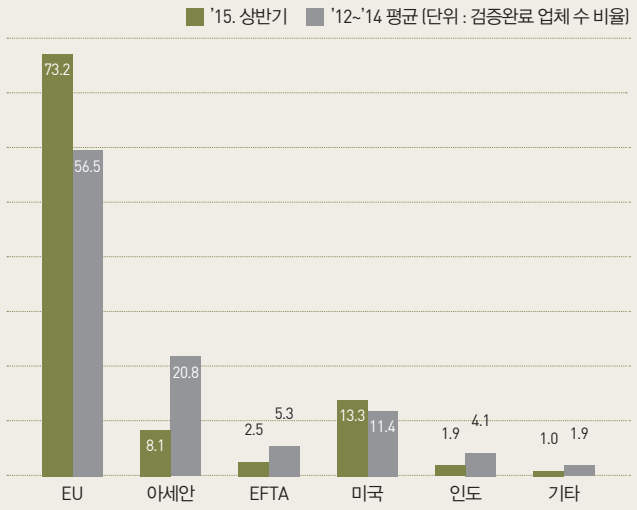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15년 상반기 수입물품 검증 현황에 대하여 한-미 FTA와 한-EU FTA를 활용한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U로부터 수입 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여부 및 인증수출자 번호의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관세청, 2015-2호 원산지검증 동향

자유무역협정(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 발간 (2015.10.13.)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강화를 위해 10월 13일 지난 3년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아 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통관애로 해소 사례를 엮은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수출입 시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들이 FTA 협정별과 통관애로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다.

● 통관애로 9대 유형

① 원산지증명서(C/O) 불인정	②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③ 인증수출자
④ 품목분류	⑤ 협정해석 차이	⑥ 통관절차
⑦ 원산지 결정기준	⑧ 3국 무역 또는 직접운송	⑨ 기타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가 거꾸로 되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낭패를 당한 A사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미국의 한 세관과 서면검증을 진행하는 도중, 또 다른 세관으로부터 검증자료 제출을 통보받고 당황했던 B사 사례 등 100가지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FTA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도 통관애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사전대응 능력도 높이기 위해 FTA 활용과 관련된 국제적 추세와 협정 상대국별로 특히 주의할 점도 함께 실렸다. 예를 들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지역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꼼꼼히 심사하고 있어 발급 시점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측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입증 서류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사례집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yesfta.customs.go.kr)에 게시되고, 전국의 FTA 상담센터에 배포된다. 또한 전자책으로도 제작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FTA 통관애로는 세관당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즉시 관세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 논의 (2015.10.16.)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한 특별지원대책 마련에 앞서, 관세청은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6일 서울세관에서 FTA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 : 교수나 연구원 등 민간 FTA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한-중 FTA 발효대비, 2단계 특별지원'을 주제로 '신속한 이행 준비', '불법 · 부정 특혜 무역 차단'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서 한-중 FTA 발효 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라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를 중국시장 조기 선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FTA 활용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섬유제품 생산 ·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간담회 개최 (2015.10.22.)

지난 10월 22일 관세청은 대구세관에서 섬유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청 등 지자체를 비롯하여 섬유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대구 · 경북 소재 섬유 수출업체 및 관련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대응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유산업은 FTA 활용 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지만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협정별로 달라 원산지 관리가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이고, FTA를 적용받아 수출한 우리나라 섬유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 · 한-EU · 한-터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섬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중 매년 30% 이상을 섬유제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이 직접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또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연합(EU)이나 터키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등에 의한 원산지검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터키의 경우 협정 발효 후 대부분의 원산지검증이 섬유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 원산지검증 관계자는 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의 경우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증명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원산지 관리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항상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사소한 실수 때문에 상대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착수하는 경우도 많아 증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3회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15.10.23.)

관세청은 10월 23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제3회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 · 공유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기업인, 대학(원)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국정과제 FTA 활용 등 중소기업 지원 일환으로 개최했으며, 총 130건의 기업 FTA 활용 성공 사례와 26건의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현장 발표 결과, 기업부문에서는 "빈틈 없는 FTA 활용으로 외화유출을 막아라!"로 차체 자동차 부품업체인 아진산업㈜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FTA 활용을 위해 원재료 구매 방식을 전환하고, 협정별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FTA 맞춤형 신제품을 개발하여 수출 규모를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 자체 FTA 대응팀을 구성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FTA 활용 컨설팅에도 적극 참여하여 FTA 활용을 위한 전사적 환경을 조성한 사례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수출사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용 사례 및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 활용 준비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수상의 영광을 안아 대회의 격을 높였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등의 전자문서 공고 (2015.10.28.)

지난 10월 28일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 일원화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관세법 제232조의2」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8항」에 따라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전자문서를 공고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전자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UNI-PASS ▶ 고객지원 ▶ 4세대 자료실 ▶ 서식자료실
▶ 59번 게시글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 전자문서 재배포"(2015.8.31.)
▶ 전자문서(2015.9.31.) ▶ 전자문서 전체 배포(2015.8.31.)
▶ 항목정의서_전자문서설계서 ▶ FTA ▶ 항목정의서
▶ FTA 원산지증명신청(036)항목정의서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신청(504)항목정의서

일원화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전자문서는 관세청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이 정상 개통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WCO와 공동으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 개최 (2015.11.05.)

관세청은 지난 11월 5일, 서울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Commonizing Origin Procedures in the era of MEGA FTAs)라는 주제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주요 관세당국의 원산지 전문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TPP와 RCEP 등 메가 FTA 시대에 주요 화두인 완전누적 개념, 직접운송과 제3국의 비가공증명제도, 세관당국 간 원산지 절차의 조화로운 이행 등 핵심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라는 주제 아래 원산지 누적규정, 직접운송과 제3국 비가공증명제도, 세관당국 간 원산지 절차의 조화와 이행 등 FTA 협상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이고 시사적인 토의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한-중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을 면제하고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즉시 확인하여 ▲ FTA 특혜신청의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는 세관당국 간 협력사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모범사례로서 참석자들의 평가가 높았다.

관세청은 그간 콘퍼런스를 통해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국내정책뿐 아니라 WCO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FTA 원산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콘퍼런스 및 전문가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원산지 이슈의 국제흐름을 주도하고, FTA 이행 중심기관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으로의 농산가공품 수출 매년 10% 이상 증가 (2015.11.11.)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농산가공품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FTA 발효국과의 농산가공품(음료, 주류, 커피 등의 기호식품과 면, 빵, 비스킷 등)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농산가공품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미발효국으로의 수출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산가공품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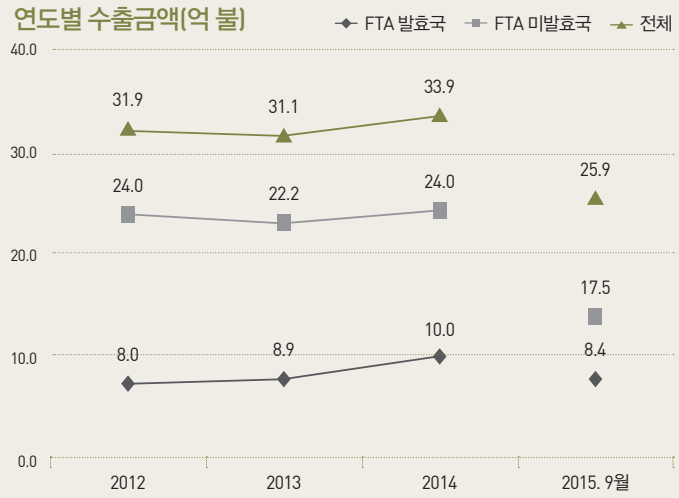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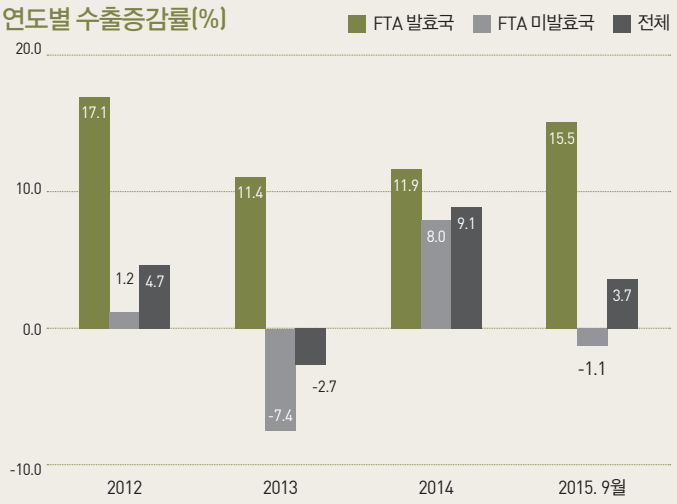

2015년 1~3분기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음료 · 주류, 커피 · 차 등 기호식품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17억2천만 불 → 18억3천만 불)한 가운데, FTA 발효국으로는 24.1% 급증(4억5천만 불 → 5억6천만 불)했고, 면, 빵,

비스킷 등 기타 농산가공품의 수출은 2.8%(7억8천만 불 → 7억6천만 불) 감소했음에도 FTA 발효국으로는 1.7%(2억8천만 불 → 2억9천만 불)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가공품은 숨어있던 수출효자품목으로, 앞으로도 성장세가 주목된다"라며, 농산가공품의 FTA 수출 활용을 중점 지원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 본격 시행 (2015.11.25.)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관세청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여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對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2단계 대책은 한-중 FTA의 가서명('15.2.25.)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의 5대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FTA 기업 활용 지원

② FTA 법규 · 제도 · 조직 정비

③ 대외 FTA 이행 협력

④ 차이나 리스크 관리

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집중하거나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령 등을 개정하고, 통일된 세관 업무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 마련하는 등의 세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세부 내용 관세청 보도자료 참조 "관세청,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 본격 시행"

한-호주 FTA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 운영방법 안내 (2015.11.27.)

관세청은 한-호주 FTA와 관련하여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 운영방법을 안내하였다. 이는 제6.7.7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및 FTA 관세특례법 제8조의27(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특례)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기준발동물량* 소진일('15.11.25.)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품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다. 기준발동물량 소진일 이후 수입신고 물량은 '16년 기준발동물량에서 차감된다.

*기준발동물량 :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 시 적용되는 기준

다만, 한-호주 FTA 제6.7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이행과 운영은 한-호주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 및 재검토될 수 있다.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대회' 개최 (2015.11.30.)

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1월 26일 14:00, 상암동 디엠씨(DMC) 센터에서 '전국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에게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에는 수출입기업 및 무역업 관련 종사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와 함께 FTA 활용 시 알아두어야 할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내용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	원산지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 설립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억 원을 절감한 사례 등 FTA 활용 우수 사례 3편 소개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 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또, 잘못된 FTA 활용으로 특혜배제,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관련 협정 위반에 따른 검증 사례 소개 및 검증 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15년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결과, 546개 중소기업 혜택 (2015.11.30.)

우리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총 546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 기업들은 올해 초 사업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했고, 컨설팅 이전에 FTA 활용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 472개, FTA 활용 중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74개이다.

중소기업의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수료한 상담사가 관세청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신청업체에 구축해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하면 상담을 해주는 사업이다.
컨설팅 결과, FTA 미활용 기업 472개 가운데 451개의 기업(96%)이 컨설팅 이후 FTA를 활용하게 되었고, 이 중 258개 기업(55%)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되었다.

● 2015년 YES FTA 컨설팅 주요 성과

FTA 미활용 기업 중 인증수출자 지정 수 : 43.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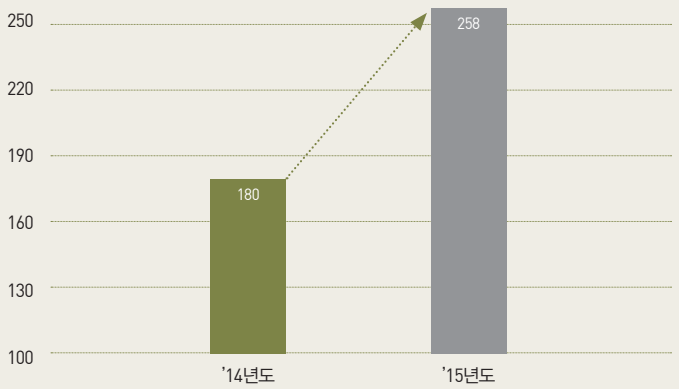

컨설팅 평가점수 : 6.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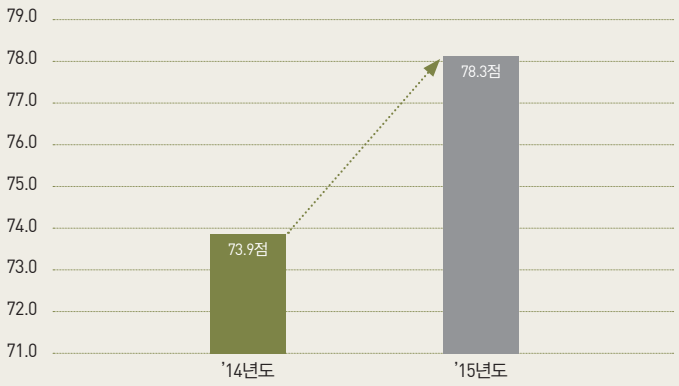

국제원산지정보원,
제7회「FTA전문가포럼」개최 (2015.12.04.)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 김기영)은 2015년 12월 4일(금) 오크우드 프리미어룸에서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후원으로 제7회 FTA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였다.

“FTA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 등 관련 분야 기관장들과 FTA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광대역 FTA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시기”라며 “FTA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FTA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활용방안, 원산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실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하여 FTA가 우리나라 교역증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통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성균관대 오원석 교수의 사회로 엄부영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전민식 국장(서울본부세관), 정재완 교수(한남대) 등 3명이 한-중 FTA 발효와 TPP 가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과 김중근 실장(한국관세사회), 이영수 교수(경북대학교), 정승환 과장(관세청) 등이 토론에 참석하여 균형 있고 수준 높은 학술토론이 되었다.

FTA 전문가 포럼은 주요 대학의 법률 · 통상 등 전공 교수, 주요 경제 단체, 산업별 주요 협회, FTA 정책 관련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FTA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내용은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 아카데미(www.ftaedu.or.kr)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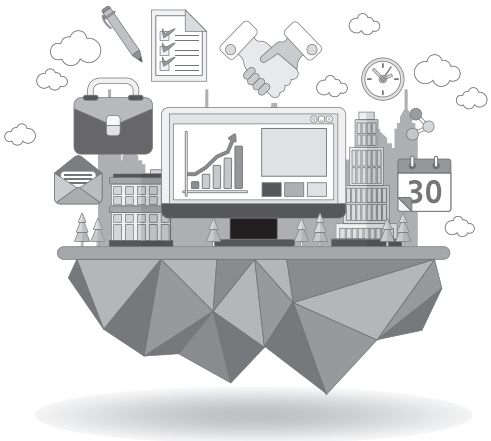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 및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확대 (2015.12.07.)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연내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對)중국 수출기업은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을 받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수출자 · 인증수출자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교〉

구 분	일반 수출자	인증수출자
제출서류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3.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4. 원산지소명서 / 확인서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생략)**
발급기한	3일(현지확인 시 10일)	**2시간**

한-중 FTA 등 신규발효 협정 설명회 개최 (2015.12.11)

관세청은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6개 본부 세관별로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 대상의 FTA 이행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기업들이 신규 발효될 FTA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산지 증명 · 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원산지 증명관련 내용과 함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기록보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협정발효 당일에 통과 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 중인 상품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주요 사항도 설명회에 포함되었다.

〈설명회 내용〉

구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원산지증명방식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세관, 상공회의소
원산지 검증 방식	① 수입자 조사 ⇒ ② 수출국 검증 요청 ⇒ ③ 수출자 · 생산자 방문 검증	① 수입자 조사, ② 수출자 ·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③ 수출자 · 생산자 방문 검증	① 수출국 검증요청 ⇒ 수출자 · 생산자 방문 검증
기록보관기간	3년	5년	5년

02. 우리나라 FTA 동향

G20 통상장관 세계무역 성장세 회복방안 논의
- 산업부 문재도 차관 제3차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 (2015.10.12.)

G20 통상장관들이 10.5~6일 터키 이스탄불에 모여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세계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무역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조속한 비준 · 이행과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및 철폐(Roll-Back)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또한, 세계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저소득개도국의 세계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G20 차원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올해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제10차 WTO 각료회의가 WTO 다자무역체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예상성과,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LDC)의 다자무역체제 편입을 위한 WTO의 역할, 지역무역협정(RTA)과 다자무역체제의 조화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2013년 각료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 성과 도출을 위해 개발 이슈 등을 포함하는 소규모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안,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에 WTO에서 논의될 의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논하였다.

동 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은 각 논의의제에 대해 한국의 현황과 정책경험을 소개하고, G20 차원의 필요한 국제공조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역성장세 회복을 위해 FTA 체결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진 상황임을 감안, 국제사회 선도국들이 국내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경우에 세계 및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한국은 총수출 중 부품 · 소재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한국기업이 무역 및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세계가치사슬(GVC)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APEC에서 '중소기업 지원'의제의 주도국으로서 '15~'16년간 동 분야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세계가치사슬(GVC) 참여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을 소개하였다.

문 차관은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협정(TFA) 수락서 기탁 등 발리패키지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나이로비 패키지 구성, 포스트(Post) 나이로비 WTO 의제 설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필요한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FTA 뉴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 개최 (2015.10월 3주차)

'15.10.12.(月)~'15.10.16.(金) 기간 동안 부산에서 RCEP* 개최, 한국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국장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협상 이외에도 경제 세미나, 홍보전시관 등 다양한 협상 관련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12. 11월 협상 개시

이번 10차 협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메가 FTA 협상으로써 기존 협상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 접근 협상을 진행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

애초에 목표한 올해 연말까지 협상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여국 모두 조기 협상타결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관세청 yes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관련 정부입장 (2015.10월 3주차)

'15.10.5(月) 타결된 TPP*와 관련하여, 정부는 아태지역 최대의 경제통합체 출범을 위한 동 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국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시작한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일본 등 8개국이 추가로 참여 하고 있다.

(12개 회원국은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며 협정발효에 따라 2만 개 품목 무관세 적용예상)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TPP 협정문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공개 될 것'이라며 'TPP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RCEP과 같은 지역경제통합 논의로서 세계적인 큰 흐름이므로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표명을 하였다.

출처: 관세청 yes FTA

제4차 한-중 통상협력회의 개최, 한-중 FTA 협력 논의(산업부) (2015.10월 3주차)

'15.10.20.(火) 산업부는 한-중 FTA 시대 양국 간 협력을 포함하여 양국 간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통상협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MOU에 근거하여 개최되었으며 양국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FTA 협력방안과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 관세청 yes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2015.11월 2주차)

'15.11.5.(木) 총 30개 챕터로 구성된 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할 예정이다.

*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시작한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일본 등 8개국이 추가로 참여 한후, 지난 10.5(月) 타결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약 95~100%(품목수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여 한-미 FTA 등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98~100%)과 유사하다.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TPP 협정문 분석 T/F」에서 즉시 협정문 분석 및 기체결 FTA와 비교 연구 진행 예정이며 11.6.(金)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논의 중이다.

출처: 관세청 yes FTA

VIP '한-중 FTA 처리 시한 11월 26일' 제시 (2015.11월 2주차)

'15.11.10(火) VIP께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중 FTA 등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 11.26.까지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안 처리를 당부하였다.

지난 10.31. 한국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은 '양국 국회 비준후 실제 발효를 위한 지방세관의 실무적인 준비작업에 최소한 4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관세청 yes FTA

FTA 원산지 협상전략 및 한-중, 한-베 FTA 활용설명회 개최(산업부) (2015.11월 2주차)

'15.11.10.(火)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50여 명의 수출기업 원산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내용 및 對중국, 베트남 FTA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FTA 등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산업부는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은 산업부 및 관계부처 업종 담당자, 관련협회, 연구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원산지 협상 관련 수시 의견교환 중이다.

출처: 관세청 yes FTA

'힘내요! 달마과장'
FTA 활용지침서 발간(관계부처합동) (2015.11월 2주차)

'15.11.10.(水) 산업부,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가 협업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FTA 주제로 연재해 인기를 얻은 웹툰 '힘내요! 달마과장'을 FTA 활용 지침서로 발간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FTA의 기본개념과 수출 방법, 국가별 비즈니스 문화, 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목록, 해외 홍보 방법, 자주 하는 질의 · 응답 등이 담겼다.

지난 8월부터 총 8회 연재하여 회당 최고 2만여 명이 애독하는 등 큰 인기를 얻은 후, 최근 홍보와 교육 목적의 책자로 발간하고 산업부 등 6개 기관이 'FTA 홍보 콘텐츠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관세청 yes FTA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재개,
3국 FTA 집중 논의 예정 (2015.10월 4주차)

'15.10.30(金) 윤상직 산업부 장관,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12년 이후 3년만에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11.1.(月) 서울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한-일-중 FTA에 대해 집중 논의 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각국의 입장차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TPP 여파를 최소화 하면서 동아시아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삼국 FTA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 일본은 TPP 후속조치에 전념하며 다소 느긋한 상황, 중국은 최근 경제 둔화와 TPP 타결을 의식하여 3국 공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출처: 관세청 yes FTA

朴 대통령 '조속한 한-중,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 촉구 (2015. 10월 4주차)

'15.10.27(火)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 등은 수출 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연내 조속한 비준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은 동 FTA들이 연내 발효되면, 올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추가로 관세가 절감되는 관세절감효과를 강조하며 10.30.(金)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의 원만한 합의를 당부하였다.

출처: 관세청 yes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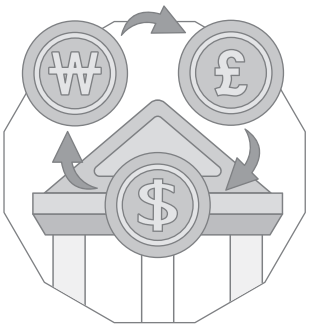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책자 발간(코트라) (2015.10월 4주차)

'15.10.26.(月) 코트라는 한-중 FTA 협상 결과에 기반하여 상품과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수출촉진, 서비스 · 투자진출, 투자유치, 글로벌 밸류체인, 원산지 규정 등 5개 유형 총 20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수록하였다.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총 20개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중 FTA 협상 결과에 기반해 활용 분야를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수출촉진, 서비스 · 투자진출, 투자유치, 글로벌 밸류체인, 원산지규정 등 5개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농수산 가공품 FTA 활용 모델'은 FTA 체결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원산지 요건을 갖춘 후 가공식품을 생산, 관세혜택을 누리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기 체결국인 페루로부터 커피원두를 수입해 조제커피로 가공할 경우, 한-중 FTA의 조제커피 원산지 변경기준(CTH,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해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 활용 모델'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위가 인정된 310개의 품목을 한국산으로 적용받으며 관세혜택을 활용하는 모델이다. 현재 5%의 관세가 적용되는 아크릴사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돼 중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중국-베트남 FTA과 연계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원단을 베트남에 보내 의류를 생산한 후, 제3국에 다시 수출하는 원사 → 원단 → 의류의 밸류체인형 활용도 가능하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가공 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지는데, 이 '누적기준 활용 모델'은 가공무역이 보편적인 한-중 교역구조 특성상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유형별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20선

수출 촉진형	서비스 투자진출형	글로벌 벨류체인(GVC)형
1. 관세율 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 모델	9.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활용 모델	14. R&D를 활용한 핵심부품 전환 모델
2. FTA 체결국 활용 수출입 모델	10. 공동제작을 통한 내국민 대우 활용 모델	15. 기술협력형 GVC 모델
3. 개성공단 활용 모델	11. 환경 서비스 시장 진출 모델	16. 조립공정 이전형 GVC 모델
4. 전자상거래 활용 모델		
5. 농수산 가공품 FTA 수출 경쟁력 제고 모델	**투자유치형**	**원산지 규정 활용형**
6. 중국 권역별 유망산업 활용 모델	12. 그린필드형 투자유치 모델	17. 세트조항 활용 모델
7. 해외임가공 활용 모델		18. 미소기준(최소허용 기준) 활용 모델
8. 'Made in Korea' 프리미엄 활용 모델	13. 중국자본 유치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 모델	19. 누적활용 모델
		20. 중간재 규정 활용 모델

출처: 관세청 yes FTA/코트라 보도자료

콘텐츠 부문에서는 '공동제작 활용 모델'을 눈여겨 볼만하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제작해 중국 내 제작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방영제한이나 까다로운 심의 등 외산 제작물에 대한 수출장벽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책자에는 100여 개 품목에 대한 모델 적용 예시가 수록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품목의 사례를 통해 한-중 FTA 활용방안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품목별 대중 수출통계, 시장동향, 경쟁동향, 바이어 평가 등 시장정보도 함께 소개해 우리 기업들의 정보 활용폭을 넓혔다.

제3회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관계부처 합동) (2015.10월 4주차)

'15.10.23.(火) 산업부는 관세청,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업인, 대학(원)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업부문과 학생부분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의 경우 FTA를 활용한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 성공, 수출확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공사례 보유기업이 대상이다. 학생부문의 자격사항은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주제는 FTA를 활용한 기업의 가상 성공사례 또는 기업이 활용 가능한 FTA 정책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FTA 활용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130여 건의 활용 사례와 2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아진산업㈜*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 동 업체는 지난 7월 관세청 주관 「'15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출처: 관세청 yes FTA

한-중 FTA 공청회 개최(외교통일위원회) (2015.10.26.)

'15.10.26.(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중 FTA 피해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중 FTA 보완 대책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경영인중앙회 등이 참석하여 '한-중 FTA 피해센터 설치' 등 산업별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논의하였다.

출처: 관세청 yes FTA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대비 관계부처 회의 개최 (15. 11월 3주차)

'15.11.15.(日) 당초 10.30. 개최키로 합의되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하여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농림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참석자들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늦어도 11.26.(木)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바, 11.16.(月)부터는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11.17.(火)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종덕 문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야당 불참시 여당과 정부만으로 11.18.(水)부터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전격 발표하였다.

출처: 관세청 yes FTA

업종 · 품목에 특화한 맞춤형 FTA 활용지원(무역협회) (2015.11월 3주차)

'15.11.10.~11.11. 양일간, 무역협회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동으로 기계, 전기전자 및 농수산식품업계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무역협회 선정 5개 FTA 전략 품목과 aT 선정 대표 농수산가공 수출품 4개 품목에 대한 '맞춤형 FTA 활용 매뉴얼' 정보 공유와 확산의 목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약 1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출처: 관세청 yes FTA

03. 해외 FTA 관련 동향

중국-EU FTA 협상 동향 (2015.10월 4주차)

'15.10.21.(水) 중국의 시 주석과 영국의 캐머런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21세기를 향한 글로벌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건설'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EU FTA 체결 논의 본격화되고 있다.

양국은 중-EU FTA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조속히 시작하여 올해 6월 열린 제17차 중-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장기목표' 실현을 촉구, 장기목표에는 전면적인 FTA 포함하고 있다.

출처: 관세청 yes FTA

EU-호주, FTA 협상 시작 합의 (2015.11월 3주차)

'15.11.15.(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호주 총리는 터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EU와 호주간의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세계 무역자유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EU는 FTA를 통해 교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EU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통한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EU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 이뤄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8월 베트남과 FTA 협상을 타결했다.

EU는 궁극적으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FTA 체결을 원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7년 아세안과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미얀마 인권 문제로 2009년 중단됐다. EU와 아세안은 올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U는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말 뉴질랜드와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출처: 관세청 yes FTA/연합뉴스

[한국 빠진 TPP] 미국-EU 'TTIP 협상'도 급물살 타나 (2015.10.07.)

● TTIP 참여하는 미국 · EU 경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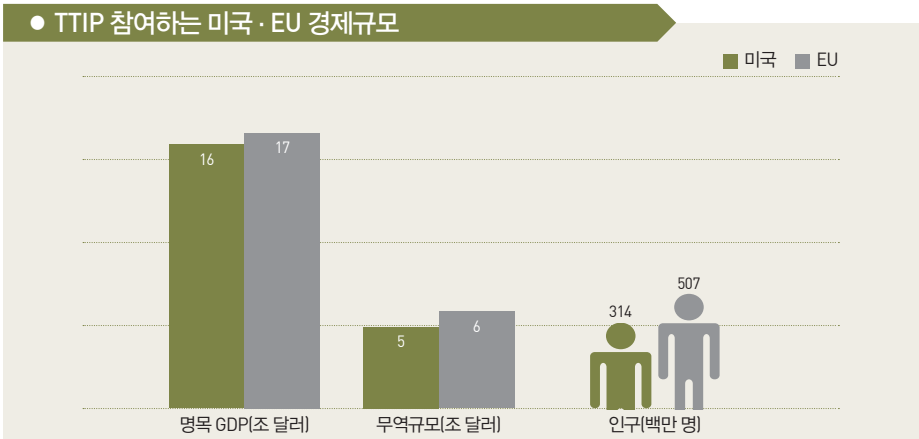

자료: IMF · WTO, 그림 출처: 서울 경제 신문, 2015 / 10 / 07일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도 급물살을 탈 기세다. TTI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33조 달러로 27조 달러인 TTP 경제권보다 훨씬 더 크다.

6일 로이터 등 외신은 "TPP가 타결되면서 유럽이 미국에 TTIP 협상을 서두르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TPP에 전념하기 위해 TTIP는 후순위로 미뤄 놓았다. 전날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위원은 "TPP 타결은 미국과 EU가 TTIP 협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워싱턴DC 회동에서도 세실리아 위원과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이달 미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공식 협상에서 상호 '민감 품목'을 새로 교환하고 무역제품 97%의 관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쟁점사항인 정부조달시장 개방도 협상하기로 했다.

EU 측이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메가 FTA' 체결을 통한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유럽지역 기업들이 안달이 났다. 호석 리 마키야마 전 스웨덴 무역 협상가는 "TPP 체결로 미국과 일본이 얻은 혜택만큼 유럽은 비용손실이 발생한다"며 "TTIP를 체결해야 유럽이 지금의 산업생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 일정도 협상 촉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 전에 협상 타결을 원한다"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안을 다시 검토하느라 시간을 소비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유럽도 내년에는 프랑스 · 독일의 선거, EU 탈퇴 여부를 묻는 영국의 국민투표 등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목표대로 내년까지 협상이 타결될지 회의론이 더 크다. 유전자 변형 제품, 투자자정부제소(ISDS)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견이 큰데다 유럽 쪽의 환경 · 안전 · 사생활 보호 규제가 미국보다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 유럽 좌파 정당들과 시민단체, 노조들도 TTIP가 공공 서비스와 노동자 권리 약화, 민영화 가속화, 소비자 자유 위협 등을 부를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미리엄 사피로 전 USTR 부대표는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측이 정말 힘들게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FTAAP와 RCEP로 반격 꾀하나 (2015.10.08)

〈다자간 무역협정의 인구 및 경제규모〉

규모	연도	TPP	RCEP	AEC	NAFTA	TTIP	한중일FTA
인구 (백만명)	2014(어림)	805.4	3453.1	620	474.3	823.9	1545.3
	2020(예측)	842	3649.2	669.4	497.9	844.1	1587.2
GDP (조$)	2014(어림)	28.05	22.58	2.47	20.49	35.91	16.41
	2020(예측)	34.69	32.23	3.75	26.19	42.93	23.1

(자료 : IMF, World Bank) / 그림 출처: 서울 경제 신문, 2015/10/07일자

각국의 반응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은 타결 소식에도 의례적인 환영인사를 표명할 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 오바마 대통령이

TPP 타결을 독촉하며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게 할 수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TPP가 타결되면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장관회담에서 21개 회원국 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각국 장관들은 구상안을 승인하고 실현을 위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의 왕융 교수는 중국이 TPP 타결에 대항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올해 안에 결론 짓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CEP는 지난 8월 말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 참가국들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 모여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한국,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그러나 다자간 FTA인 한-중-일 FTA나 RCEP에서의 협상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의 림흥캉 장관은 TPP가 싱가포르로부터 본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상을 구현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역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줄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이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PP에는 중소기업의 세계적인 공급망 참가를 지원하는 조항도 들어있어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와 사업 확대,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 사업을 전개시키기가 용이해진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발효를 목표로 국내비준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TPP를 FTAAP가 성립하기 위한 지름길로 보기도 했다. TPP는 배타적인 협정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후속 참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럽은 그간 주력해 오던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FTA인 TTIP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 국제무

역위원회의 마릿톄 샤커(Marietje Schaake) 의원은 미국이 앞으로 TTIP에 시간과 정치적 자본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어려운 논의를 회피할 구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TTIP는 미국과 EU, 단 두 개의 경제권 간의 협상이지만 세계 경제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포괄하며,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규제나 비관세장벽 등 무형의 무역장벽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TTIP 또한 TPP 못지않은 메가 FTA로서 세계 무역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 예견됐다.

한편 EU는 미국 외의 TPP 역내 국가 중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등과도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TPP 참여 국가인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와는 이미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TPP 타결 성과를 극찬하며 TPP를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의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아베노믹스에서는 금융완화와 재정정책 외에도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경제구조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TPP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 향후 협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앞으로도 유럽과의 무역협정이나 한-중-일 FTA 등 무역영토 확장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통해 미국에서 수출하는 1만8,000여 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며, 노동이나 환경 등 무역규범에 대한 구속력도 가진 협정이라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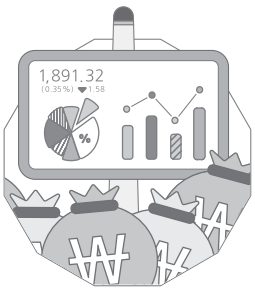

독일 25만명, TTIP 반대 시위… "독점과 패권 강화" 논란 중인 유럽… "자유무역협정은 불평등한 세계화" (2015.10.13.)

미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에 반대하는 유럽 공동행동의 날에 독일에서만 25만 명이 나오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이 유럽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독일 일간 〈노이에스도이칠란트〉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는 25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15만 명)이 모여 TTIP 및 캐나다-EU FTA(CETA)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유럽 500여 단체가 조직한 연대모임 "멈춰 TTIP"가 주최한 것으로 독일에서 최대 인파가 모였다. 이런 반향은 주최자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아테네, 암스테르담과 오슬로에서도 같은 행사가 열렸고, 영국 런던에서는 17일 동일한 행사가 진행된다.

독일노총 등 노동자, 좌파당과 녹색당 그리고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170여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사람들은 TTIP에 반대하고 정의로운 무역을 요구하는 수많은 플래카드, 풍선, 대형 인형, 음악과 어우러져 춤, 발언 그리고 행진을 이어나갔다.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주로 기차를 통해 모였으나 버스도 600대 가량 동원됐다. 이날 참가자 규모는 2003년 이라크 침공 반대 집회 후 가장 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현재 유럽에서는 2013년 미국과 EU가 TTIP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TTIP에 대한 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협상 초기부터 TTIP가 투자와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침체에 빠진 EU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와 같은 나라에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게르하르트 한트케 독일 무역서비스연맹 대표는 최근 독일 언론 〈도이체 벨레〉에 "유럽은 인도와 중국과 같은 다른 경제국에 뒤처질 수 있다"면서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가 경제적 기준을 써야 할 때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아시아가 쓴 기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에서는 TTIP 반대 단체들이 국민투표를 제안해 추진 중이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 자영농이 많은 환경에서 농업 개방 문제도 주요한 쟁점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EU집행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TTIP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럽에서는 현재까지 3백만 명 이상이 TTIP 협상 중단을 요구하면서 서명에 참여했다.

출처: 신문 참세상 2015. 10. 13 일자

메르코수르-EU FTA 협상 동향 (2015.10.19.)

TPP 타결 이후 메르코수르*-EU FTA 협상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15.10.19.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은 스웨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동 FTA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상 체결 의사 표시를 하였다.

*가입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12년 가입) 등 5개국

메르코수르와 EU는 1990년 중반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진통을 거듭, 최근 TPP 발효로 인한 브라질 측의 수출 감소 우려로 브라질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관세청 yes FTA

미국-EU TTIP* 협상 동향 (2015.10.19.)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양국 국내 여론의 반대와 난제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11차 협상이 '15.10.19.~'15.10.23. 기간 중 미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인 파생상품 거래 규제방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큰 가운데, 미국이 TPP 성과에 주력했던 과거에 비해 TPP 타결 이후 TTIP 협상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처: 관세청 yes FTA

대만, TPP 신규 가입 급선무 (2015.11.03.)

타결 선언 후, 대만 내에서는 TPP 신규 가입국에 조속히 합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대만은 종래 미-일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와 중국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모두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Cooperation, 이하 APEC)와 각종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참여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만은 6개국(파나마 · 과테말라 · 니카과라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중국(ECFA 상품 조기자유화 품목, EHP)과 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와 중국과의 협정(ECFA 후속 협정)은 체결 중이다.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발 리스크의 영향이 커져 TPP를 통한 대체시장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위안화 평가절하의 피해가 큰 국가로 한국과 대만을 지목하고 있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0%로(홍콩 포함) 아시아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이며, 대중 수출이 GDP 14% 수준이다. TPP에서 배제될 경우, 국제사회 내 고립을 가속화하는 가능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정치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TPP를 메가 FTA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로 보고 있다. 대만 각계 반응으로 살펴보는 TPP 신규 가입 필요성 및 해결과제이다.

출처: http://www.fta.go.kr/main/info/info/data/1/

中 푸젠성, 전자상거래 현황 (2015.11.30.)

2014년 푸젠성 전자상거래 규모는 4989억2600만 위안(약 798억2800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40.1% 증가하였다. 또한 연간 매출액의 500만 위안 이상 기업의 총 매출은 91억8900만 위안(역 14억6800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102.3% 늘었다.

중국 푸젠성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발전기획정책'을 수립했으며, 2018년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사회소비재 소매 총액의 20%를 차지해 총 2조 위안(32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푸저우시(福州市)와 샤먼시(厦门市)는 2011년에 정식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2014년에는 취안저우시(泉州市)도 정식 선정되었다.

푸젠성 중요 도시 전자상거래 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샤먼시(厦门市)의 경우 샤먼 전자상거래 산업분석 보고서(厦门市电子商务产业分析报告)에 따르면, 2014년 푸젠성의 해외 수출입 금액은 1조90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그 중 소매형 전자상거래 규모는 60억 위안(약 9억6,000만 달러)으로 2년 전보다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2B 거래규모는 약 500억(약 8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8년에 전자상거래 규모는 4,000억 위안(약 640억 달러)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샤먼시 공상국(工商局)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기업 수가 3만7,000개로 전년대비 73% 증가했으며, 그 중 B2B형 기업은 2,000개까지 증가했다. B2C형 기업은 1만 개로 중소기업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도된다. 2015년 샤먼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3,500억 위안까지 성장할 것이며, 인터넷 소매거래는 350억 위안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5만 개가 넘고, 관련 종사자는 1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안저우시(泉州市)의 경우 전상통계(电商数据)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에 정식으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선정된 취안저우시(泉州市)는 전년대비 33.7% 증가한 1,420억 위안 규모까지 성장했다. 그 중 소매액은 212억5,300만 위안이며, 전체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취안저우시(泉州市) 전자상거래 기업은 10만 개가 넘는데, 이는 도시 전체 기업의 70%에 해당된다. 그 중 연간 규모가 1억 위안이 넘는 전자상거래 브랜드 기업은 20개가 있으며, 2018년에는 100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취안저우시(泉州市) 전자상거래 규모는 1,420억 위안(약 227억2천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33.7% 증가하였다.

출처: 正统网, 厦门日报, 福州新闻网, 闽商杂志, 福建省快递行业协会, 福建省物流产业服务网, 厦门市电子商务协会 및 KOTRA 샤먼 무역관 자료 종합

TPP, 日 관세철폐율 95% (2015.11.09.)
- 일본 정부, 합의 전체 내용 공표, 농산품 즉시는 51% -

일본의 관세율(자유화율)은 품목 기준, 무역액 기준 95%에 달한다. 지금까지 EPA에서도 가장 높았던 대호주와 필리핀의 EPA는 품목 수 기준으로 88.4%으로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단, 일본 이외의 11개국은 품목 수, 무역액 99~100%으로 일본은 12개국 중 가장 낮다. 특히 농림수산품의 철폐율은 81%에 그쳐 일본 이외의 11개국 평균 98.5%보다 크게 못 미친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TPP 담당상은 20일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하면서 총평하고 있다. 쌀 등의 중요 5개 품목도 핵심 부분은 방어했다고 설명한다.
일본 정부는 2,328개 품목 농림수산품 가운데 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을 중요 5개 항목으로 지정하고 관세 철폐의 예외로 보호하는 성역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중요 5개 항목은 전체 586개 품목이나, 수입실적이 없는 케이스와 국내 생산자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약 30%에 해당하는 174개 품목은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야채는 주요 100개 품목 모두 관세가 철폐되었다. 주요 5개 항목 이외의 농림수산물에서 관세가 남아있는 것은 팥 등 기타 콩 종류, 곤약, 표고버섯, 톳, 미역 등 31개 품목에 한정한다.

공산품은 수입관세가 없으나 발표 시 95%의 품목에서 관세 철폐돼 최종적으로는 모든 품목에서 철폐하였다. 일본 정부는 농산품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 등의 영향을 평가한 후 11월 중 TPP 대책을 정리할 방침이다. 쌀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중요

5개 항목에 대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대책 이외에도 농지집약 등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수출품에 관련된 관세로는 철공업 제품(87%)이 협정 발효 후 철폐되었다. 협정 발효 후 30년째까지는 99.9%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였다. 미국은 승용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협정 발효에서부터 25년째에 철폐하였으며, 버스는 2.5%의 관세를 10년째, 트럭은 25%의 관세를 30년째에 제로로 하고 있다.

화학제품에는 최대 6.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즉시 철폐하며, 미국은 쇠고기와 쌀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도 최종 철폐하기로 하였다.

출처: http://www.globalwindow.org

중국의 FTZ, 무역상대국에 새로운 기회가 되다
- 지속 감소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확대되는 FTZ 진출 범위, FTZ, 한국 중소기업의 교두보로 자리잡을 전망 -

현재 중국 내에 설립된 FTZ는 광둥, 톈진, 푸젠, 상하이 등 4개 도시에 위치한다. 해당 도시들은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환보하이(环渤海) 등 동부 연해 발달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해당 4개 도시는 2개의 직할시(상하이, 톈진)와 2개의 경제특구 실험지역(광둥, 푸젠)으로 나누어지며 중국 3대 경제구역인 장강경제벨트, 주강삼각주경제권 및 징진지(京津翼, 베이징(北京)-톈진-허베이(河北)) 일체화 프로젝트 적용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하이 FTZ는 2013년 9월 설립됐으며, 2015년 4월 중국 내 FTZ는 광둥, 톈진, 푸젠까지 확장됐다. FTZ는 까다로운 설립 조건을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지연정치와 국

가경제 핵심전략 등 방면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최근 각 지방정부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도입으로 FTZ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난 5월 다롄(大连)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人民代表商务委员会) 주임 리징루이(里景瑞)는 세 번째 FTZ 설립 신청 성시는 총 20개였으나, 심사가 확정된 성시는 간수(甘肃), 허난(河南), 지린(吉林), 광시(广西) 등 9개라고 밝혔다.

그 중 유력한 3차 FTZ 후보(다섯 번째 FTZ 후보)로 간수성의 란저우(兰州)시가 각광받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국무원은 란저우 시의 FTZ 신청자료는 상무부에서 심사 중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외자 기업에 중국의 FTZ 확장과 중국 정부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추진은 외자 기업이 이용 가능한 시장 범위, 금융수단 등의 확대 및 증가를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된다. 또한 한국 기업에 중국 FTZ의 확장은 한국과 중국 FTZ 및 기타 지역의 더 활발한 교류 및 합작 추진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FTZ가 지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3년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후 190항까지 감소, 2014년에는 139항까지 감소하였다. 2015년 5월 다시금 122항까지 감소했다. 또한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FTZ에서 통일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한-중 FTA 발효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FTZ(자유무역지구)는 한-중 FTA 체결 후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발의한 중국 경제개혁-개방 정책 2.0의 핵심 사업이다. 일대일로는 중국 중서부, 중앙아시아, 유럽을 경제권역으로 하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시진핑의 구상이다. 이번호에서는 중국 4대 자유무역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중국 4대 자유무역구(FTZ) 소개

상하이 자유무역구(FTZ)

총 면적 : 120.72㎢

수용가능 기업 수 : 5만8천 개

구역 : 총 7개 구역

기존: 와이까오차오(外高橋)보세구, 물류원구, 양산보세항구, 푸동공항보세구

신규: 루자주이(陸家嘴)금융구, 진차오(金橋)개발구, 장장가오(張江高)과학기술

중점기능 및 특징

- 중국 제1의 물류와 금융 중심지로서 위안화 국제화의 전초기지
- 51개 금융지원정책, 자유무역계좌, 외환업무 간소화 등 개혁정책을 전면 추진해 기업활동 활성화 도모
- 제한금지 업종 이외의 분야 투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면 허용

톈진 자유무역구(FTZ)

총 면적 : 119.9㎢

구역 : 총 3개

톈진항, 톈진공항보세구, 빈하이(滨海)신구중심상업지구

대상지역 : 징진지, 동북아

중점산업 : 운수, 물류, 금융

중점기능 및 특징

-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개발계획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발전계획과 맞물려 중국 경제성장 구조 전환에 시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동북아와 맞닿아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한-중 FTA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인천항과 상하이항 간의 연계를 강화해 통관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

중국자유무역구(FTZ) 특징

1. 투자개방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4대 자유무역구(FTZ) 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진입 규제 완화)
- 네거티브 리스트 및 국무원 승인 보류 투자항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외국인 투자의 내국민 대우 실시

2. 무역관리감독

3. 금융혁신

행정 일체화 및 편의 제공

자료:http://ftzforum.hankyung.com/aboutftz/

광둥 자유무역구(FTZ)	푸젠 자유무역구(FTZ)
총 면적 : 116.2㎢	**총 면적 :** 118.04㎢
구역 : 총 3개 광둥 난샤(南沙)신구, 선전시 첸하이(前海)신구, 주하이시헝친(横琴)신구	**구역 :** 총 3개 샤먼시(厦门), 푸젠(福州)신구, 핑탄시(平潭)
대상지역 : 홍콩, 마카오, 아세안	**대상지역 :** 대만(양안)
중점산업 : 서비스업	**중점산업 :** 선진제조업, 해양 산업
중점기능 및 특징 광둥자유무역구 투자가 홍콩 · 마카오 · 아세안 지역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지역과의 경제 · 인문 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창구로 활용할 전략	**중점기능 및 특징** - 대만과 마주보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양안 간 무역(서비스 및 금융) 자유화와 협력 중점시범구로 육성 -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 선박통관, 검역시스템 일원화 및 수입품 직판장 운영을 준비함

제7회 국제원산지 포럼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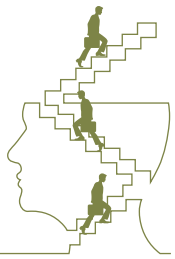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지난 12월 4일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에서 공동으로 후원하는 제7회 FTA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FTA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각각의 주제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균관대 오원석 교수의 사회로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민식 서울본부세관 국장, 정재완 한남대 교수 등이 TPP 타결의 의의와 대중소기업 영향,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이날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제7회 국제원산지 포럼내용을 소개한다.

Session Ⅰ TPP 타결의 의의와 대중소기업 영향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TPP 타결의 의의와 대중소기업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및 단일 원산지규정의 TPP 역내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KIEP(2013)의 TPP 거시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 참여할 경우 실질 GDP가 1.7%~1.8% 상승하는데 반해, 불참 시에는 0.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TPP 참여 시 무역수지가 연간 2억~3억 불 개선, 생산은 1조 원 증가하지만, 불참 시 무역수지는 연간 1억 불 이상 악화되며, 생산도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TPP의 對중소기업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2015)한 결과,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입, 생산과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금속, 전기전자, 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피해와 장기적으로는 피해 정도는 더 커지고 수혜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일부 업종에서 생산과 부가가치가 감소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섬유·의류, 음식료품, 운송장비를 제외한 업종에서 피해가 장기적으로는 기계를 제외한 전 산업이 호전되고 기계 산업 역시 피해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메가 FTA의 큰 장점인 원산지규정 단일화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그 효과는 단일화 이전 보다 훨씬 클 것이다. 무역협회(2015.6)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2.2%가 TPP 가입에 찬성, 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에 비해 찬성의 의견

이 높으며, 업종별로는 전자기기, 생활용품, 농수산물 분야의 찬성도가 높은 반면, 자동차 및 부품, 정밀·일반기계 분야는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2015.1)의 기업 간담회에서는, 정밀부품, 기자재를 제외한 IT 업체는 베트남·멕시코의 고관세 철폐와 동일 원산지규정 적용의 이점, 글로벌 CGV 참여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찬성하였다.

한편, 피해예상 품목으로 충전기기, 전자부품소재, 기계부품소재, 건설기계부품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계, 금속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수혜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기계, 금속이 수혜산업으로 전환되어 전 산업에 걸쳐 수출입, 생산과 부가가치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역내국에서 일본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과 가격변화에 민감한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되고, 수혜 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수혜 정도가 줄어들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TPP에 가입하여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을 누릴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호전되어 중소 제조업 전반의 수출입, 생산과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승환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은 세가지 논점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였다.

1 TPP 참여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실익이 예상되는 분석기법 제시 및 구체적인 사례 제시 필요

TPP 불참으로 금속, 전기 · 전자, 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부분과 장단기 예측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산지규정 단일화로 인한 중소기업 수혜 근거 검토 필요

또한, 원산지규정의 단일화로 인한 경제실익과 스파게티 볼 효과를 활용한 경제실익의 분석을 중소기업 활용 가능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TPP 회원국과 개별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FTA 활용 실익과 TPP 가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실익을 기체결 FTA 상대국 기준으로 분석이 요구된다. 추가로 일본과 멕시코의 개별 FTA 추진 또는 한-중-일, RCEP 등 광역 FTA 추진이 TPP 가입 실익과 비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3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의 발효와 TPP 가입으로 인한 비교 실익 분석 필요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일본산업과 경합도가 높은 국내산업의 피해가 일시적이지만, 산업경쟁력의 강화로 개선이 예상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TPP 참여의 목적은 일본산업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는데, 한-중 FTA 활용 등에 따른 경제 실익도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TPP 12개 회원국 내에서 조달된 부품이나 원료를 사용해서 최종공정을 거쳐 TPP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가능하며, 완전누적활용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베트남, 멕시코라고 설명하였다. 중소기업이 FTA를 통한 무역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점은 가격경쟁이 아닌 리치마켓을 타켓으로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부품조달처를 변경하거나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자인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여 전 세계 인구의 11%, GDP비중의 37.1%, 교역비중의 25.7%에 해당하는 거대 FTA협정인 TPP의 극적인 타결은 전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정비에 중대한 변화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TPP 협상에 초기부터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TPP의 탄생에 따른 영향과 향후 참여 필요성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TPP와 같은 Mega-FTA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원가절감이나 PSR충족의 편의를 활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완전누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누적의 경우 일반적인 양자누적과 달리 원산지검증을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와 정보의 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Session Ⅱ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전민식 서울세관 FTA 집행국 국장은 중소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한-중 FTA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으로 한-중 FTA 주요내용, 원산지 검증 현황, 원산지검증 주요 사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은 총 11개 협정, 49개 FTA와 발효중이며, 중국의 관점에서 한-중 FTA는 교역량 비중이 높은 국가와 체결한 최초 협정이며, 거대경제권과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가 갖는 의미는 중국 기체결 FTA국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구성을 담고 있으며, 대중 수출기업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검증현황은 FTA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검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협정 상대국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에 검증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검증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부분의 수출검증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FTA 전문지식 부족, 원산지 관리 시스템 부재, CEO의 관심부족 등으로 FTA 수출활용률의 경우 대기업이 78%, 중소기업이 64%로 FTA 활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혼합검증방식으로 중국해관의 간접검증(6개월)후 중국해관 동행하에 수출자 직접검증이 가능하며 앞으로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EU FTA와 한-미 FTA의 경우 각각 특수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한 경우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수입자에 의해 발행한 경우가 있었다.

전 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대기업보다 증가추세이고, 그동안 요청받은 원산지검증의 50% 이상이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의 준수 및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이라면서 "대중 FTA 활용 경험이 적은 수출기업은 선제적인 FTA 활용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민식 서울세관 FTA 집행국 국장의 주제발표에 토론자인 이영수 경북대 교수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 6조의 3)을 예로 들면서, 원산지확인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산지확인서 제공은 이를 요청받은 기업의 임의 선택사항으로 수출자가 중소기업이며, 수출자에게 재료를 공급한 자가 대기업일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확인서 등을 요청하여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고 향후 그러한 우려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서류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의 연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해주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 원산지확인서를 기업의 담당자 명의로 발행하는 문제, 원산지확인서를 기업의 담당자 명의로 발행하는 문제와 세관공무원의 FTA 활용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산지검증 대응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이 사후 대책보다 더 중요하며 중소기업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에서는 원산지관리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능력 보유자로 양성하여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며, 정부나 유관기관은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한편,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한-중 FTA 활용은 기체결된 FTA중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한-아세안 FTA와 비교할 수 있으나 한-아세안 FTA 활용이 낮아 한-중 FTA 활용이 저조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논거로는 한-중 FTA는 발효 즉시 인하되는 품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FTA 발효 후 중국의 관세, 비관세장벽 등에 대비해 관세당국이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중국산 물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 EU 등으로 우회 수출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미국, EU 등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FTA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말 기준 對중 수출 기업 중 기존의 FTA 활용을 경험하지 못한 기업이 76.2%라는 것은 對중 수출기업의 특징이 다국과의 거래가 아닌 수출선이 중국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 한-중 FTA가 우리 기업에게 기회로서 작용, FTA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FTA에 대한 활용경험이 없는 기업이 76.2%라는 것은 한-중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비용과 노력이 앞으로도 더욱 소요될 것이며, 그간의 FTA 이행 경험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더불어 내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관세청 등 집행기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Session Ⅲ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마지막으로 정재완 한남대학교 교수는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우선, PSR 규정은 협정체결국과 협상결과로 확정되어, 양당사국에서 통일규정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서두를 열었다.

협정관세율은 양 당사국이 다를 수 있으나 PSR규정은 동일하며, 기준 PSR 설정 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설명하였다. 고려할 요소는 해당품목의 교역상황, 국제경쟁력, 관세율, 원자재의 국산화율, PSR 통일성, PSR 엄격성 등이다. 특히, 해당 FTA 원산지협정의 일반기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PSR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역상황, 국제경쟁력, 관세율 또는 협정관세에 의한 특혜수준, 국산화율, 통일성, 엄격성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FTA의 PSR은 일차적으로 관세특혜 향유를 목적으로 한 무역굴절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부차적으로는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FTA에 의한 특혜적용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숨은 의도를 갖는다. 그러나 PSR은 온전히 자국의 정책의지만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FTA 체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확정되어, 양 협정당사국에서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협정당사국의 산업구조나 국제경쟁력, 교역상황, 산업정책 등이 유사한 경우 PSR의 효과도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양 협정당사국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FTA체결에서 PSR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와 검토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3단계결정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3개 주요 품목에 대한 PSR을 평가해 보았으나 향후 FTA별로, 또는 더 많은 품목별로 이와 같은 PSR의 기초평가 및 종합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부는 향후 새로운 FTA의 체결이나, 이미 체결된 FTA의 재협상 과정에서 보다 나은 PSR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장근호 홍익대학교 교수, 조미진 명지대학교 교수가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장근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실제 FTA협상을 할 때 두 나라의 관세율표 차이를 고려하여 협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재 산업이, 미국과 EU에 비해 불리함을 지적하였다.

장 교수는 기존에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원산지기준 연구에서 3단계 결정모형이라는 객관적이고 일관되며 통일된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6개 고려요인(교역상황, 국제경쟁력, 관세율, 원자재 국산화율, PSR의 통일성과 엄격성)을 좀 더 개발하여 명확히 한다면 FTA 협상과 원산지규정 연구에서 일종의 규범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연구에서 지적된대로 고가의 역내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등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자의적인 무역 보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미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해당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FTA를 대상으로 PSR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연구에서는 FTA별 PSR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거나 엄격성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최적 PSR 설정을 위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하였다.

수출품목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낮추고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높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6가지 고려 요소 가운데 '해당품목의 교역상황'에서 수출·수입품목을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FTA에 따라 수출이 될 수도 있고, 수입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2009년 1회에 이어 2015년 일곱 번째를 맞는 FTA전문가포럼은 주요 대학의 법학 · 무역 · 경영 등 전공 교수가 참가한다. 또한, 주요 경제단체, 산업별 주요 협회, FTA정책 관련 정부기관 등에서도 참여하여 주요 FTA 및 원산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다. 또한, 금번 발표내용은 국제원산지 FTA 원산지 아카데미(www.ftaedu.or.kr)에서 볼 수 있다.

FTA ANALYSIS

-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유아용품 FTA 수입동향과 시사점
- 한-호주 FTA 발효 1주년: 영연방 국가의 FTA 활용현황과 전망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유아용품 FTA 수입동향과 시사점

임병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0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❶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유아용품 시장의 소비트렌드는 '골든키즈(Golden Kids)'로 요약될 수 있다. 골든키즈란 한 가정에서 하나의 자녀만을 낳아 잘 기르자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육아형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①]은 2014년 기준 1.205%이며, 신생아 수는 435,400명이다. 이는 2013년 대비 0.2% 감소한 수치이며, 10년 전인 2004년의 출산율 1.154% 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②]

①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②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1년도 기준 1.70%.

이러한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유아용품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생산제품 보다는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유아용품의 수입은 경기불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③

눈에 띄는 것은 수입된 유아용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하여 상당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소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FTA의 발효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수입물품의 원산지, 고가의 프리미엄 이미지 등 기타 다른 이유가 급격한 유아용품 수입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유아용품의 FTA 협정별 및 품목별 수입동향을 분석하여 최근 유아용품의 수입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유아용품의 수입증가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유아용품이 어느 국가에서 수입되는지 또는 해당 국가가 FTA 체결국인 경우 실제 FTA 특혜협정을 받아 수입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입 유아용품을 품목별 및 협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❷ 분석대상

유아용품은 일반적으로 분유와 이유식 등의 먹는 것, 의류 등의 입는 것 그리고 장난감 등 놀이도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아용품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HS품목분류표 기준 6단위로 구분하였다. 유아용 의류나 유모차 등 구체적으로 유아용의 물품만이 분류되는 품목번호가 있기도 하지만, 유아용 의자(제9401호) 또는 유아용기저귀(제9619호) 등은 유아용만을 분류하지 않고 있다.

③ 관세청, '유아용품 수입동향', 2011. 5. 28.

〈유아용품의 범위〉

연번	품명		HS
1	유아용 조제식료품	- 육류의 것	1602.10
		- 분유	1901.10
		- 채소류의 것	2005.10
		- 과실류의 것	2007.10
2	유아용 화장품 등	- 베이비파우더 등	3304.91
		기타(어린이용)	3304.99-3000
		- 유아용 목용용 세정제	3401.30
3	유아용 의류	- 편물제의 것	6111
		- 직물제의 것	6209
4	유모차		8715.00
5	유아용 의자 등	- 유아용 의자	9401.71
		- 유아용 카시트	9401.80
6	유아용 완구 등		9503.00
7	유아용 기저귀 등		9619.00

다만 효과적인 동향파악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① 수입대상국은 모든 수입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 한정(일반수입 및 FTA 적용수입 모두 FTA 체결국으로 한정)

② 분석의 범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이며, 각 연도는 해당 연도의 상반기(1월~6월)를 기준으로 함(예 : '15년은 2015년 상반기를 의미)

③ FTA 특혜대상금액 = 관세가 즉시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물품으로서 기준세율이 0%인 물품은 제외한 물품의 수입금액

$$\text{FTA 활용률 (\%)} = \frac{\text{FTA 특혜수입금액}}{\text{FTA 특혜대상금액}(\neq\text{일반수입금액})^{*}}$$

*이에 따라 FTA 활용률이 100%인 품목이라도 일반수입금액이 FTA특혜수입금액보다 높을 수 있다.

02. 품목별 유아용품 수입동향

❶ 유아용 조제식료품

1) 물품개요

최근 신생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에 대한 소비패턴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아기들이 먹는 대표적인 조제식료품인 분유와 이유식은 그 종류와 특성이 많아 엄마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다. 최근에는 유기농(Organic)으로 만든 제품이 고가임에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용 조제식료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신생아가 섭취하는 분유와 젖을 떼면서 섭취하게 되는 이유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유(Milk Powder)는 우유 중의 대부분(약 80~90%)을 차지하는 수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갖가지 영양소를 첨가한 것으로서 건조상태의 우유를 말한다. 우유 그대로의 것인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와 유지방을 제거한 탈지분유(Skim Milk Powder)로 구분하며, 기타 부가적인 영양소를 넣은 가당분유, 혼합분유 등이 있다.

이유식은 모유나 분유만으로 아기가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을 수 없는 시기부터 섭취를 시작하는 음식이다. 보통 소화가 잘 되는 반고형 상태의 음식으로서 몇 가지 종류의 음식을 고르게 갈아 만든 것이다.

유아용 조제식료품의 품목분류상 번호는 다음과 같다.④

〈유아용 조제식료품의 종류〉

HS	품명	주요 품목
1602.1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 설육(屑肉)이나 피 - 균질화한 조제품	이유식(육류)
1901.10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 · 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조제분유
2005.1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균질화한 채소	이유식(채소)
2007.10	잼 · 과실젤리 · 마멀레이드(Marmalad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균질화한 조제품	이유식(과실)

④ 제1602.10호, 제2005.10호, 제2007.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유아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채소, 과실 등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 · 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채소, 과실 등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유아용 조제식료품의 최혜국대우세율(MFN)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최저 8%에서 제1602.10호(육류 이유식)와 제2007.10호(과실 이유식)은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FTA를 활용하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제1602.10호의 경우 여전히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용 조제식료품의 세율정보(2015년 상반기)〉

구분	기본 / MFN[5]	EU	미국	호주
1602.10	30	22.5	22	26
1901.10	8-36	0-22.9	0-21.6	0-30.4
2005.10	20	6.6	4	16
2007.10	30	10	6	26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분유 등 유아용 조제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0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목록통관[6]을 거쳐 수입된다. 그러나 조제분유는 목록통관 배제물품(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총수입 및 일반 수입동향

우리나라의 유아용 조제식료품 수입은 '15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13년에 총 1천 6백만 달러의 유아용 조제식료품이 수입되었으나 '15년에는 약 2천만 달러로 4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입증가는 유아용 조제식료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분유(제1901.10호)의 수입증가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

⑤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⑥ 목록통관이란 복잡한 수입신고서 대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성명, 연락처,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통관하는 것이다.

FTA 수입은 일반수입에 비하여 금액이 높지 않으나 수입증가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1백7십만 달러 수입되었던 유아용 조제식료품은 '14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15년에는 3백7십만 달러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조제분유 외에도 기타 이유식의 FTA 수입 역시 '15년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조제식료품 수입동향〉

[단위: USD]

구분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HS	일반	FTA	일반	FTA	일반	FTA
1602.10	-	-	10,687	-	4,505	-
1901.10	15,927,137	1,677,334	16,229,510	772,799	20,721,893	3,677,427
2005.10	92,167	11,338	40,161	12,006	103,832	28,072
2007.10	59,003	31,915	55,968	33,981	108,355	71,223
합계	16,078,307	1,720,587	16,336,326	818,786	20,938,585	3,776,722

* 터키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일반수입 및 FTA수입금액으로 함

● 유아용 조제식료품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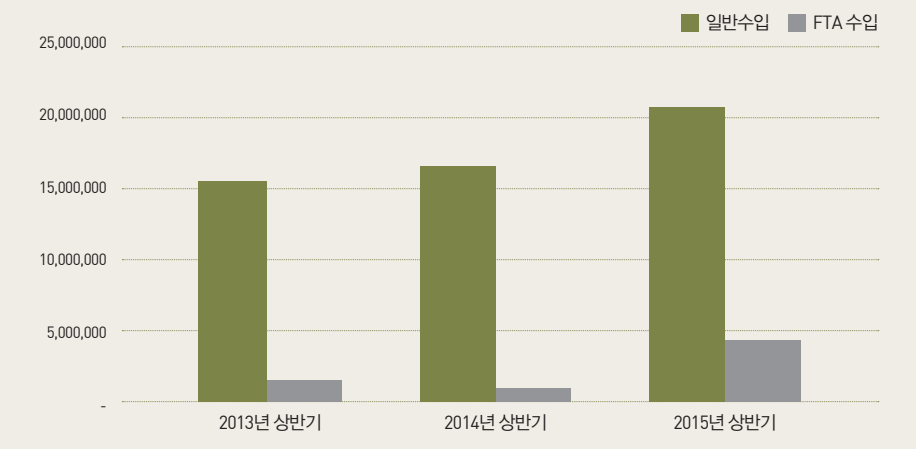

유아용 조제식료품 중에서는 제1901.10호의 조제분유가 사실상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5년 수입금액 2천9십만 달러 중에서 2천7십만 달러가 조제분유의 수입이며 나머지가 육류, 채소류, 과실류의 이유식 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유아용 조제식료품의 수입증감은 조제분유의 수입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협정별로는 조제식료품의 최대 수입국인 EU로부터의 수입이 단연 두드러졌다. '13년 EU로부터 수입된 유아용 조제식료품은 약 8백만 달러였으나 '15년에는 약 2배 수준인 1천8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EU 다음으로 많은 수입액을 나타낸 호주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유아용 조제식료품 협정별 일반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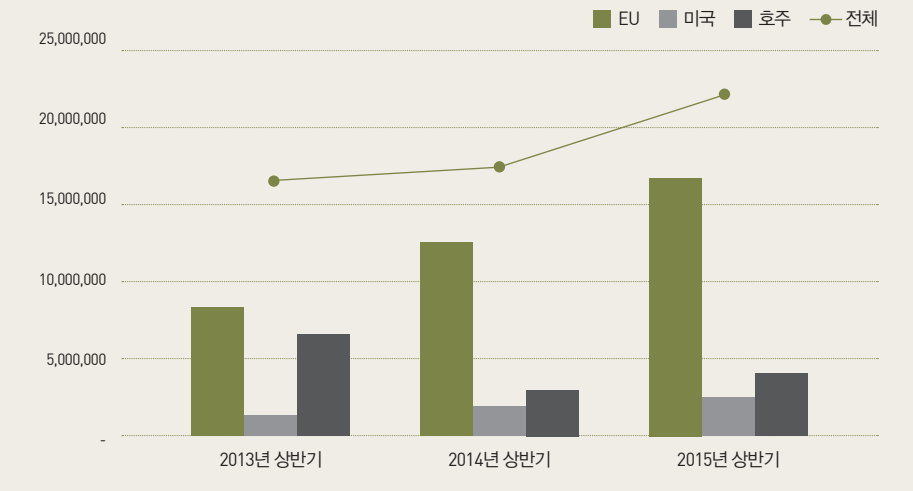

3) FTA 특혜수입 활용동향

유아용 조제식료품의 FTA 특혜수입은 '15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2014년 12월에 발효된 한-호주 FTA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다. '13년 FTA 특혜수입규모는 총 1백7십만 달러였으나, '15년에 들어서 3백7십만 달러로 증가하였으

며, 이 중 호주로부터의 특혜수입이 3백1십만 달러(비중 80.7%)이다. 반대로 EU와 미국의 FTA 특혜수입은 '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 유아용 조제식료품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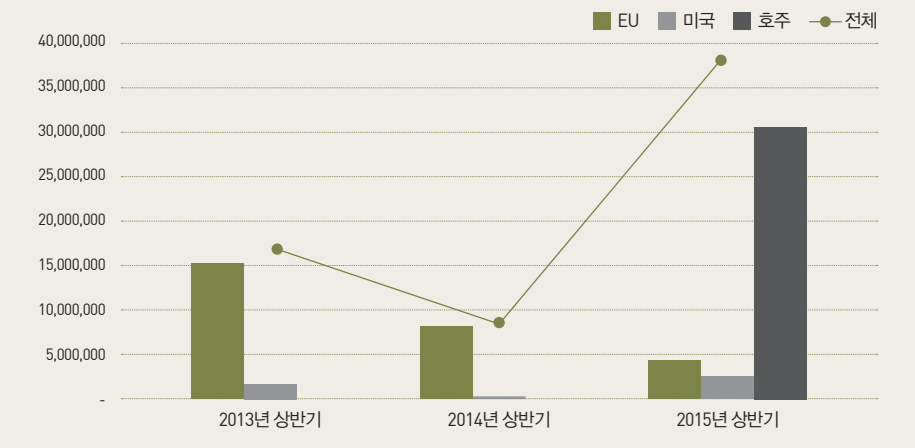

유아용 조제식료품 수입시 FTA 상대국의 실제 특혜활용률은 협정별로 다른데, '15년 기준 호주가 9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EU가 82%, 미국이 73%로 나타났다. 특히 EU가 '14년의 95%에서 '15년 82%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14년 20%에서 '15년 73%로 크게 특혜적용비율이 증가하였다. 호주는 '14년 12월에 발효되었으나 해당 월의 특혜적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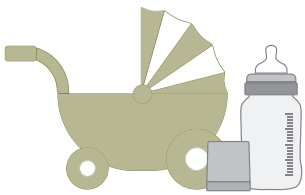

● 유아용 조제식료품 협정별 특혜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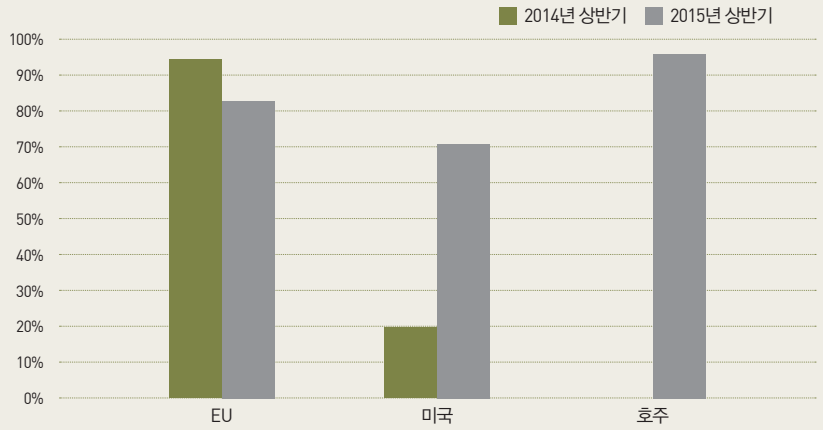

4) 소결

유아용 조제식료품의 수입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별로는 EU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FTA를 활용한 수입에 있어서는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발효되면서 '15년에 FTA 활용 수입금액이 모든 협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의 FTA 특혜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EU로부터의 유아용 조제식료품 수입은 FTA 특혜와는 관계가 적으며, 호주의 수입증가는 한-호주 FTA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❷ 유아용 화장품 · 세정제

1) 물품개요

국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유아용 화장품 및 세정제(이하 화장품 등)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증가와 더불어 아토피 등 어린이들의 각종 피부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고가이더라도 좋은 품질의 유아용 화장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아용 화장품은 피부가 민감한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화장품을 말한다. 유아용 화장품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성인 화장품에 비하여 첨가물질이 적지만, 유아 및 어린이가 가진 피부를 얼마나 잘 유지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좋은 제품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유아용 세정제 역시 유아 및 어린이의 피부보호와 가장 연관성이 있다. 자극이 적으면서 피부 세정기능이 좋은 제품이 선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러 씻어내지 않아도 피부 자극이 적은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아용 화장품 등의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베이비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로션 등 목욕이나 세면 후 몸에 바르는 제품은 제3304호에 분류한다. 목욕 시 피부의 이물질을 씻어내는 유아 및 어린이용 세정제는 제3401.30호에 포함된다. 제3401호의 제품은 소매포장된 것에 한한다.

제3304.99호에는 어린이용 제품(제3304.99-3000호)과 기타(제3304.99-9000호) 제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용 제품으로 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무자극' 등을 장점으로 오히려 어린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도 있어, 성인용과 어린이용 화장품의 구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유아용 화장품 등의 종류〉

HS	품명	주요 품목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91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베이비파우더
3304.99	- 기타	베이비오일, 로션 등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목욕용 어린이 세정제

유아용 화장품 등에 적용 가능한 세율은 3가지 물품 모두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세율은 FTA 협정을 신청한다면 대부분 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유아용 화장품 등의 세율정보(2015년 상반기)〉

구분	기본/MFN⑦	EU	미국	캐나다	아세안
3304.91	6.5	0	0	4.3-5.2	0
3304.99	6.5	0-2.6	0-4.8	5.2	0
3401.30	6.5	0	0	0	0

2) 총수입 및 일반 수입동향

우리나라 유아용 화장품의 수입은 '13년에 비하여 '15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수입금액 3억1천만 달러에서 '14년에는 3억6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가 '15년 소폭 하락하여 3억4천만 달러의 수입금액을 보였다.

⑦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FTA를 활용한 수입금액 역시 일반수입과 유사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13년에는 1억7천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나 '14년 상반기 2억 달러, '15년에는 1억9천만 달러로 일반수입동향과 유사한 동향을 보였다.

〈유아용 화장품 등 수입 동향〉

[단위: USD]

구분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HS	일반	FTA	일반	FTA	일반	FTA
3304.91	5,699,029	2,880,960	6,989,305	2,663,194	6,122,120	2,262,281
3304.99	290,931,108	159,914,763	339,310,997	189,834,605	319,910,043	178,669,646
3401.30	16,983,734	13,674,155	19,903,616	13,302,861	21,085,678	15,677,937
합계	310,928,244	176,469,878	366,203,918	205,800,660	347,117,841	196,609,864

※ 터키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일반수입 및 FTA 수입금액으로 함

● 유아용 화장품 등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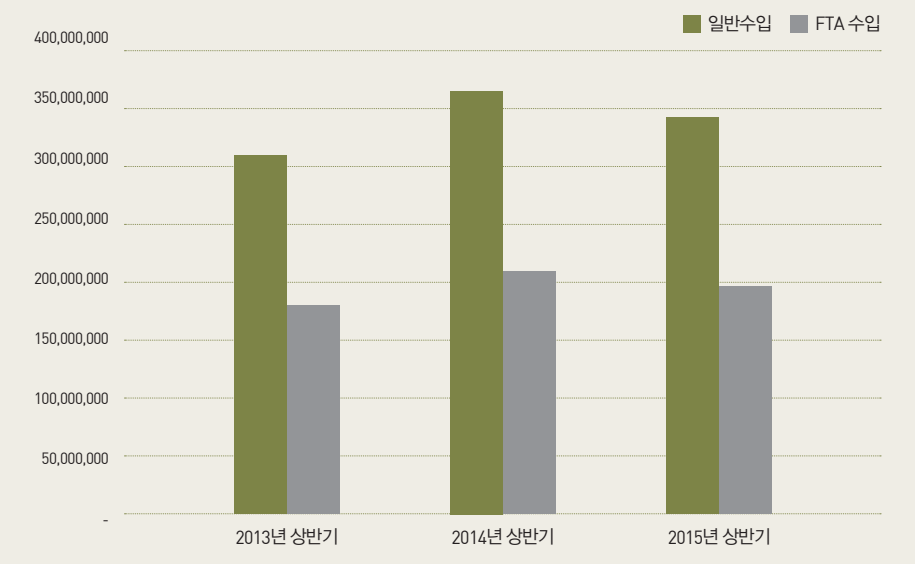

품목별로 살펴보면, 유아용 화장품 등의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말형태의 것을 제외한 크림이나 액상의 유아용 화장품(제3304.99호)으로서 '15년 기준 총수입 3억4천만 달러 중에서 3억1천만 달러를 차지(비중 92.2%)하고 있다. 이어 유아용 세정제가 2천만 달러, 분말형태의 화장품이 6백만 달러 순이다.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유아용 화장품 중 주요 수입국은 EU와 미국, 캐나다, 아세안이다. 이중 최대 수입국은 EU로서 '15년 기준 1억7천3백만 달러를 EU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이 1억4천3백만 달러로 뒤를 이었고, 3위와 4위인 캐나다와 아세안은 각각 1천만 달러, 7백만 달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용 화장품 등 협정별 일반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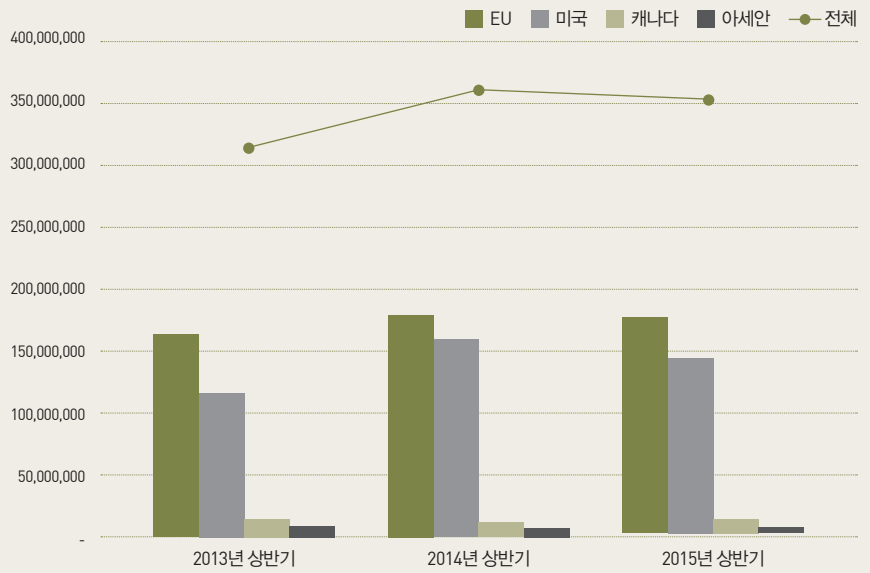

3) FTA 특혜수입 활용동향

'13년 FTA 특혜수입 총 규모는 1억7천6백만 달러에서 '15년 1억9천6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유아용 화장용품 등의 FTA 특혜수입은 일반수입동향과 유사하나, 협정별로 살펴보면 캐나다 FTA 특혜수입의 증가가 눈에 띈다. 2015년 1월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의 영향으로 '15년에 캐나다로부터 FTA 특혜적용을 받아 처음으로 수입되었다.

다만 '13년 1위 및 2위의 수입국이었던 EU와 미국의 수입금액이 소폭 증가한 반면, '15년 캐나다 특혜수입은 6백만 달러로서 EU와 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 유아용 화장품 등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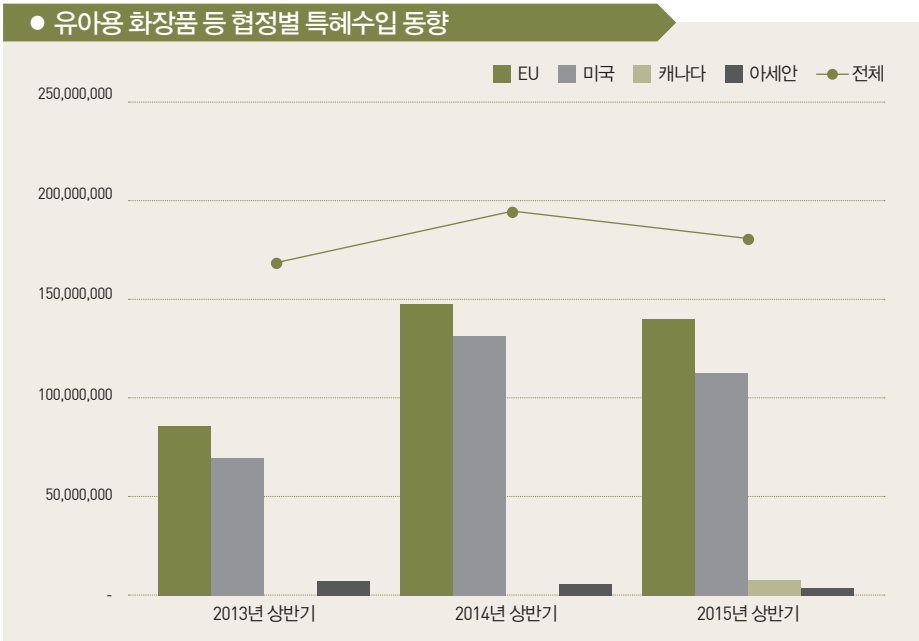

유아용 화장품 등의 FTA 특혜수입이 증가한 반면, 특혜활용률은 '14년에 비하여 '15년에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14년 FTA 특혜활용률 82%를 나타낸 아세안의 경우 '15년에는 74% 활용하였으며, 미국은 68%에서 62%로, EU는 62%에서 61%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5년 1월 발효된 캐나다의 경우에만 최초 FTA 활용률이 58%로 나타났다.

● 유아용 화장품 등 협정별 특혜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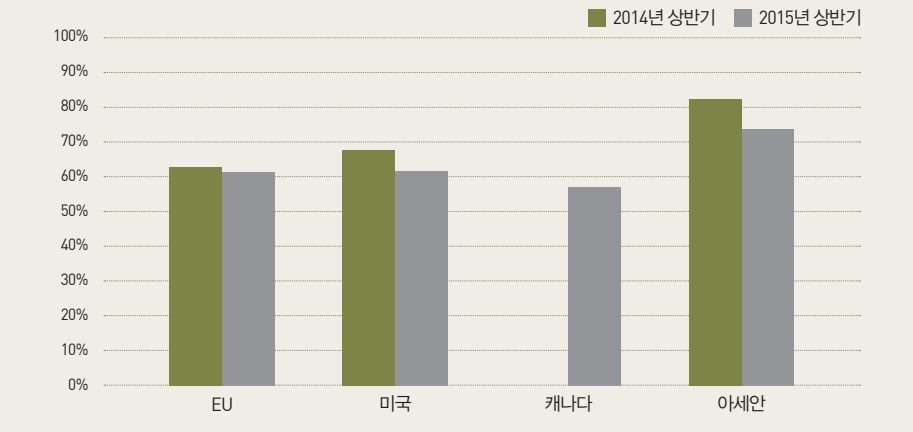

4) 소결

우리나라의 유아용 화장품 등 '15년 수입금액은 전반적으로 '13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협정별로는 EU와 미국이 일반수입과 FTA 특혜 활용수입 모두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만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높지 않으나 FTA 활용률이 70~80% 수준을 보이는 등 높은 특혜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❸ 유아용 의류

1) 물품개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늦은 결혼 및 고령출산의 증가의 결과, 30~40대 여성들이 유아의류 시장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유럽산 특정 브랜드의 유아용 의류를 구매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EU에서 수입된 유아용 의류의 국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유아용 의류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즉 '해외직구'의 가장 큰 거래대상 품목이다. 국내 수입브랜드 의류 중에서 고가의 유아용 의류는 해외 직구를 통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로 알려진 미국의 대대적인 연말 할인행사도 유아용 의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용 의류는 약 2~3살짜리 어린이들이 주로 입는 의류로서 유아용 의류에는 신생아 의류부터 아기용 내복, 셔츠, 외투와 양말, 모자 등 다양한 상품을 포함한다.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상 크게 편물제의 유아용 의류(제6111호)와 기타(직물제 포함) 의류(제6209호)로 구분된다. 관세율표상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란 신장 86센티미터[⑧]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을 말한다. 유아용 의류는 면으로 만든 것, 합성섬유로 만든 것,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구분한다.

〈유아용 의류의 종류〉

HS	품명	주요 품목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어린이 니트 등 편물의류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유아용 턱받이, 장갑, 신발 및 직물의류

유아용 의류에 적용되는 세율은 8%이며, FTA를 활용한다면 아세안, 미국, 인도, EU와의 FTA에서는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아용 의류의 세율정보(2015년 상반기)〉

구분	기본 / MFN[⑨]	아세안	미국	인도	EU
6111	8	0	0	0	0
6209	8	0	0	0	0

⑧ 24개월 미만 유아의 평균키는 남아 86㎝, 여아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⑨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2) 총수입 및 일반 수입동향

국내 유아용 의류의 수입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총 7백만 달러였던 수입금액이 '15년에는 5백8십만 달러로 1백만 달러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FTA 수입감소는 일반수입 감소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FTA 수입 역시 '13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한 상태이나 '14년보다는 약 4십만 달러 증가하여 '15년 유아용 의류는 3백3십만 달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의류는 편물제 의류(제6111호)와 기타 의류(제6209호)로 구분되는데, 편물제 의류수입금액이 기타 의류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15년 기준 편물제 의류 수입이 4백만 달러를 초과한 반면, 기타 의류(직물제 의류 등)는 1백7십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의류 수입동향〉

[단위: USD]

구분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HS	일반	FTA	일반	FTA	일반	FTA
6111	4,427,426	2,968,338	4,051,119	2,488,703	4,108,436	2,578,328
6209	2,682,676	765,308	2,902,024	461,567	1,755,309	770,937
합계	7,110,102	3,733,646	6,953,143	2,950,270	5,863,745	3,349,265

* 터키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일반수입 및 FTA 수입금액으로 함

● 유아용 의류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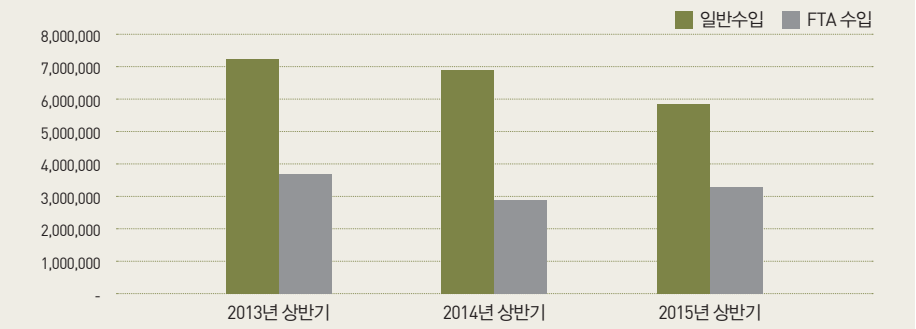

일반수입과 마찬가지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유아용 의류수입도 '13년 이후 감소세에 있으며,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최대 수입국인 아세안 수입의 감소에 있다. 아세안은 '13년 4백9십만 달러 수입하여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15년에도 수입액은 3백6십만 달러로 감소세에 있으나 여전한 최대 수입국이다. 이어 '15년 기준 미국이 3십7만 달러, 인도가 80만 달러, EU가 6십9만 달러로 나타났으나 아세안 수입금액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유아용 의류 협정별 일반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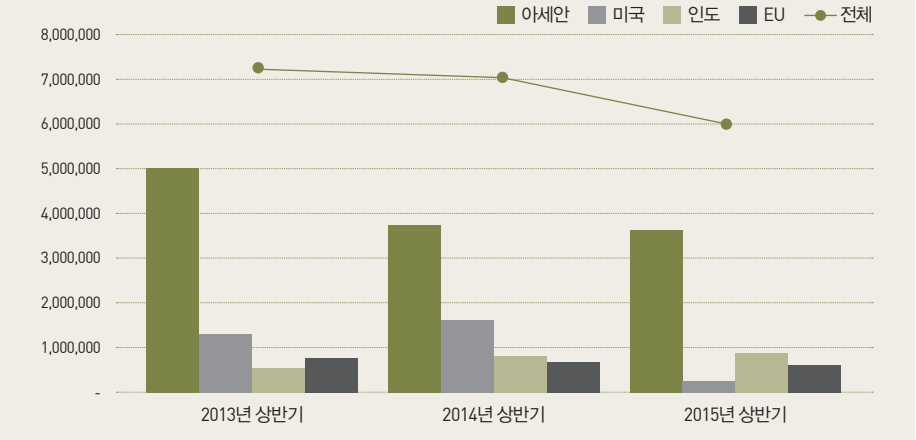

3) FTA 특혜수입 활용동향

일반수입의 경우 유아용 의류 최대 수입국인 아세안을 제외하고는 미국, 인도, EU 순이었으나, FTA 특혜수입의 경우 반대로 EU, 인도, 미국순으로 수입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여전히 유아용 의류의 최대 수입국으로서 '14년과 '15년에는 '13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3개국은 모두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EU의 경우 '13년 2십3만 달러 수입에서 '15년 3십4만 달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용 의류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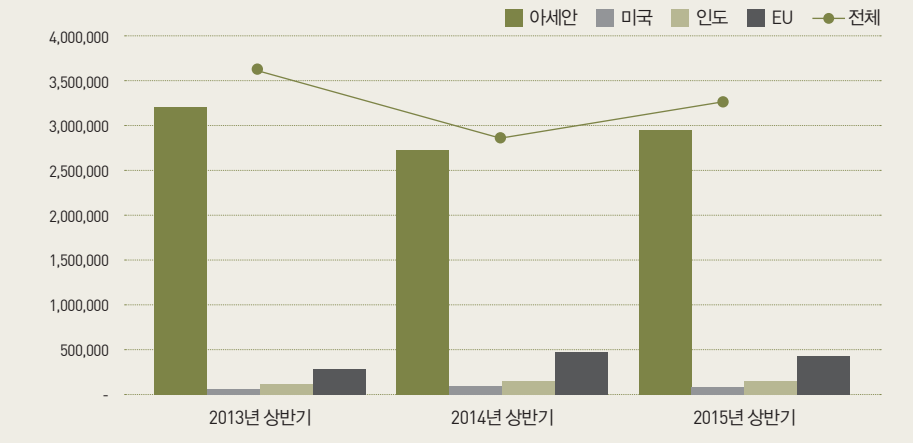

'15년도의 유아용 의류의 FTA 특혜활용률은 모든 협정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특혜활용률을 보인 아세안의 경우 '14년도의 64%에서 '15년도에는 71%로 7% 증가하였으며, EU의 경우 '14년도의 50%에서 '15년도 51%로 소폭 증가하였다. 활용률이 낮은 협정인 미국과 인도의 상승폭이 높았는데, 미국이 '14년도 13%에서 '15년도 26%로 약 두배 증가하였으며, 인도는 '14년도 10%에서 '15년도 15%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용 의류 협정별 특혜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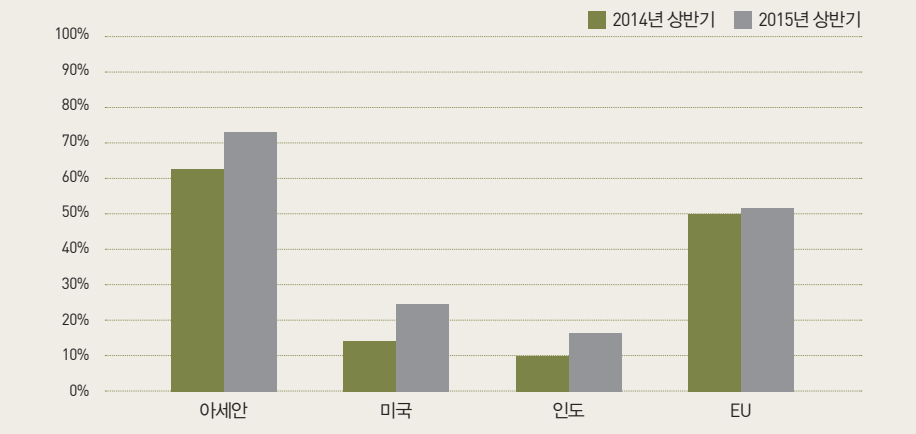

4) 소결

우리나라의 유아용 의류 수입은 일반수입과 FTA 특혜수입 모두 감소하고 있다. 협정별로는 아세안이 일반수입과 FTA 특혜수입 모두에 있어서 최대 수입국이며, 미국과 인도 EU가 작은 수입금액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특혜수입에 있어서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액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수입금액과는 달리 FTA 활용률은 모든 협정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❹ 유모차

1) 물품개요

유모차는 주로 아기를 눕히거나 앉히거나 하여 이동시킬 수 있는 유아용품으로서 육아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모차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유모차는 크게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으로 구분되어 출시되고 있다. 디럭스형은 신생아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유모차로서 일반적으로 고가이다. 유모차의 무게만 15㎏까지 나가는 것이

있으며 프레임이 굵고 단단하고, 바퀴도 크고 쿠션도 두껍다. 고가의 유럽산 유모차들은 대부분 디럭스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휴대용 유모차는 무엇보다 휴대성이 강조된 것으로서 보통 5㎏ 미만의 접이식이 많으며 1살 이후의 어린이를 태우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절충형은 디럭스형과 휴대형의 중간 수준이다.

최근 수입유모차 가격의 거품논란이 이슈가 된 바 있다. 일부 유럽산 유모차의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것은 기본이고, 고가의 제품은 200만 원이 넘는 유모차도 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가 유모차의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품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수입유모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1년 유모차 수입은 2백4십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5천8백만 달러의 수입을 나타내었다. 2013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4년에는 4천7백만 달러 수입하였으며, 올해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유모차 수입동향

유모차는 관세율표 제8715.00호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다. 유모차뿐만 아니라 유모차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분품 역시 제8715.00호에 함께 분류된다.

〈유모차의 품목번호〉

HS	품명	주요 품목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유모차, 유모차 바퀴, 차양막, 커버 등

유모차에 적용가능한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은 5%이며, FTA를 활용하는 경우 EU, 미국, 아세안, 호주에서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모차의 세율정보(2015년 상반기)〉

구분	기본 / MFN⑩	EU	미국	아세안	호주
8715.00	5	0	0	0	0

2) 총수입 및 일반 수입동향

FTA 체약국으로부터의 유모차 일반수입은 '13년 7백5십만 달러였으나 '15년에는 5백5십만 달러로 약 2백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수입의 감소폭은 일반수입보다 작았으나 '13년에 비하면 특혜수입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약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대 유모차 수입국은 중국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유모차 총수입이 4천7백만 달러였는데, 이 중 71.5%인 3천4백만 달러가 중국에서 수입된 금액이다. 이어 네델란드⑪가 4백8십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이 1백2십만 달러로 나타났다.

⑩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⑪ 유럽에서 수출된 물품이 네델란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이다.

〈유아용 유모차 수입동향〉

[단위: USD]

구분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HS	일반	FTA	일반	FTA	일반	FTA
8715.00	7,564,666	3,165,822	7,063,254	3,903,695	5,515,559	2,799,802

* 터키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일반수입 및 FTA 수입금액으로 함

● 유아용 유모차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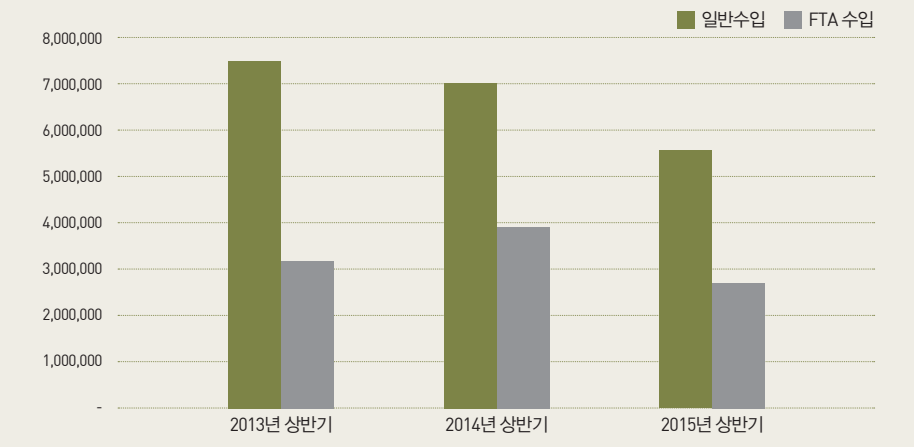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유모차 수입은 감소세에 있으며, 이는 EU 수입금액의 감소의 영향이 크다. '13년 유모차 수입액이 7백5십만 달러였으나, '15년에는 5백5십만 달러로 약 2백만 달러 수입이 감소하였다.

협정별로 살펴보면 EU가 '13년 6백1십만 달러, '15년 5백만 달러로 약 1백1십만 달러 FTA 특혜수입이 감소하였다. 유모차 수입 2위인 미국의 경우 '13년에는 1백4십만 달러에서 '15년에는 3십4만 달러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3위국인 아세안과 4위 호주의 수입액은 EU와 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유아용 유모차 협정별 일반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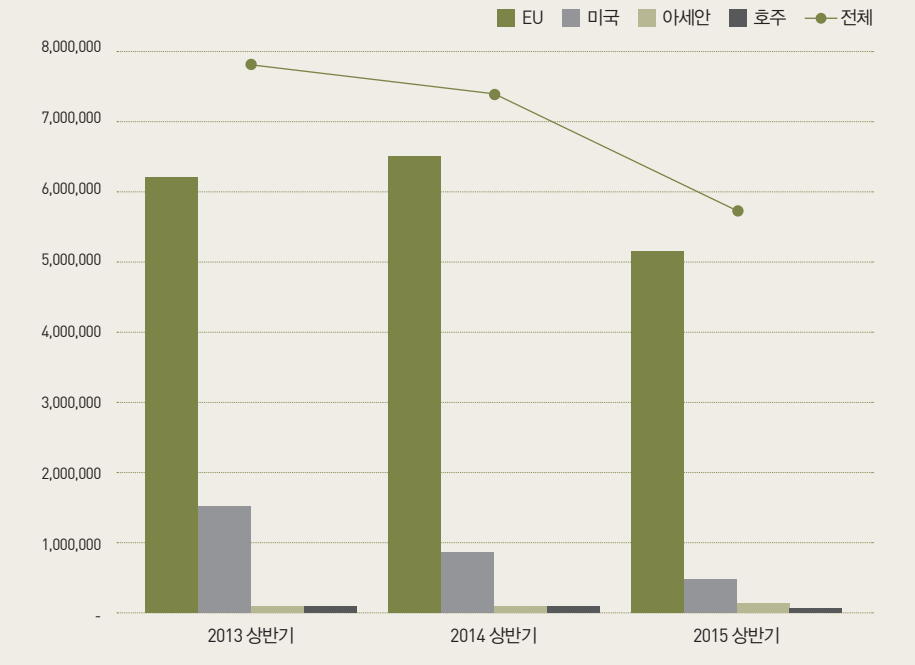

3) FTA 특혜수입 활용동향

우리나라 유모차의 FTA 특혜적용 수입은 사실상 EU 특혜수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EU의 비중이 크다. EU를 제외한 기타 협정의 FTA 특혜수입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3년 기준 FTA 특혜수입 3백1십만 달러 중에서 미국수입금액 1,244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한-EU FTA 특혜수입을 적용받아 수입되었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15년에 소폭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FTA 특혜수입 2백7십9만 달러 중에서 2백7십1만 달러가 한-EU FTA를 활용한 특혜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이긴 하나 미국의 특혜수입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 유아용 유모차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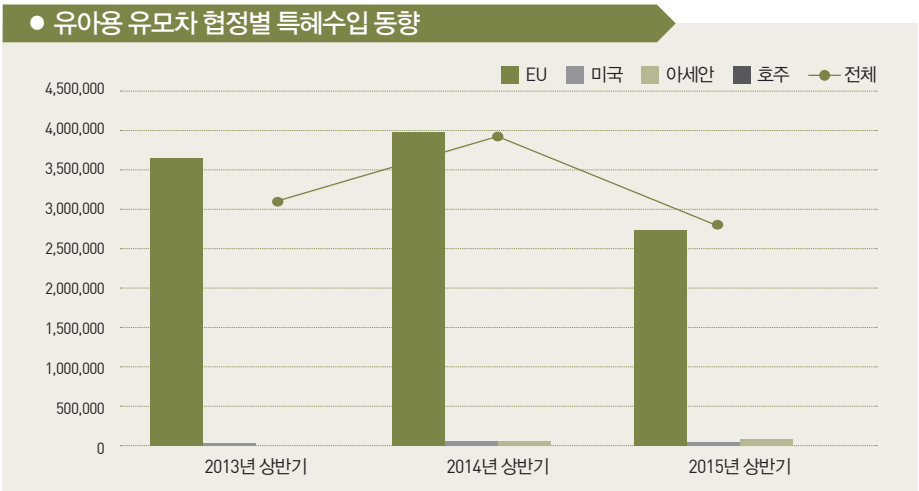

일반수입과 FTA 특혜수입규모가 높은 EU의 FTA 활용률은 '15년 53%로 나타났다. EU에 비하여 수입규모는 미미하지만 FTA 활용률은 100%로 나타난 아세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기타 국가인 미국과 호주의 경우, FTA 특혜수입 규모도 작지만 활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용 유모차 협정별 특혜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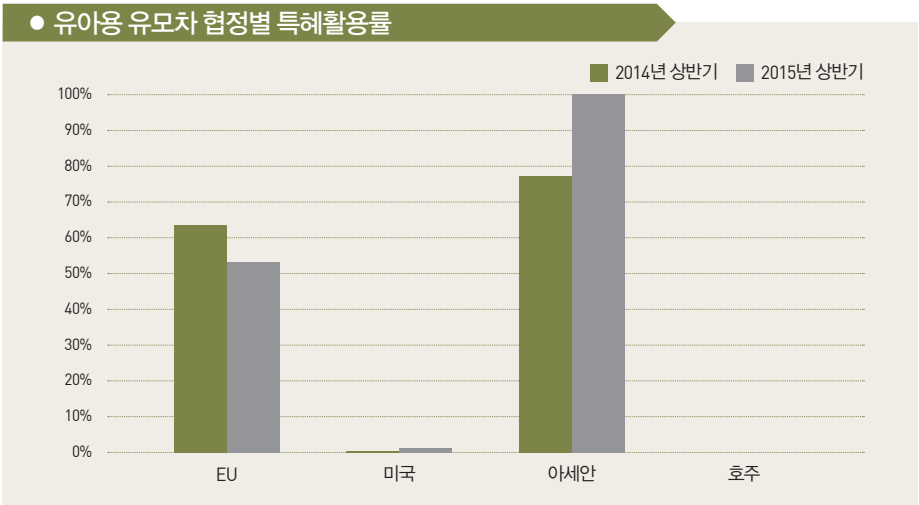

4) 소결

우리나라의 유모차 수입은 과거 200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일반수입과 FTA 특혜수입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U수입도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FTA 특혜적용 수입에서는 일반수입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유모차 수입감소세를 FTA 특혜수입이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의 경우 수입금액도 작으며 증가율도 미미한 수준이다. FTA 활용률은 EU가 50% 이상이며 아세안은 100%에 가까운 FTA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❺ 유아용 의자

1) 물품개요

유아용 의자는 유아 및 어린이가 앉아서 놀거나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말한다. 유아용 의자에는 유아용 흔들의자 또는 놀이의자(제9401.71-9000호), 유아용 카시트(제9401.80-9000호),[⑫] 유아용 보행기(제9403.70-1000호) 등이 포함된다.

유아용 흔들의자 또는 놀이의자는 주로 유아 및 어린이가 앉아서 놀거나 부모가 아이들을 재울 때, 또는 식사할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의자이다.

⑫ 유아용 카시트 중 일부모델의 경우, 유모차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있다. 유모차는 제8715호에 분류되므로, 이러한 물품을 유모차로 분류할지 또는 카시트로 분류할지에 대해서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아용 카시트는 유아 및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 몸에 꼭 맞도록 해주는 유아용 의자로서 최근 화제가 되는 유아용품 중 하나이다. 예능프로그램에서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자주 촬영되면서 국내 특정브랜드의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2006년 '어린이 안전장치 시착 의무화'규정에 따라 어린이를 태울 때 카시트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유아용 카시트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다른 유아용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제조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대한 안전테스트를 통과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아용 보행기는 걸음마를 아직 떼지 못한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유아용 의자의 종류〉

HS	품명	주요 품목
9401.7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유아용 흔들의자
9401.80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그 밖의 의자	유아용 카시트
9403.70-1000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 보행기	보행기

유아용 의자의 경우 최혜국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EU, 미국, 호주, 아세안에서 수입된 유아용 의자 등에 대해서 FTA 특혜협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일부 수입자들은 이를 일종의 '안전장치' 기능을 위한 특혜세율적용신청으로 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용 의자의 세율정보(2015년 상반기)〉

구분	기본 / MFN[13]	EU	미국	호주	아세안
9401.71	0	0	0	0	0
9401.80	0	0	0	0	0
9403.70-1000	0	0	0	0	0

2) 총수입 및 일반 수입동향

우리나라가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유아용 의자용품은 '15년 1천7백만 달러로서 2013년 상반기 1천4백만 달러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FTA수입 역시 2013년 상반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2014년 상반기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유아용 카시트가 포함되는 제9401.80호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흔들의자가 포함되는 제9401.71호가 뒤를 이었다. 보행기가 포함되는 제9403.70호는 비중은 가장 작았으나 '13년에 비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⑬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유아용 의자 수입 동향〉

[단위: USD]

구분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HS	일반	FTA	일반	FTA	일반	FTA
9401.71	2,233,031	157,364	1,853,294	381,703	2,569,565	680,470
9401.80	11,328,088	2,418,925	12,307,080	2,832,337	13,233,192	2,433,090
9403.70	499,078	97,773	1,462,005	561,841	1,571,126	470,021
합계	14,060,197	2,674,062	15,622,379	3,775,881	17,373,883	3,583,581

* 터키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일반수입 및 FTA 수입금액으로 함

● 유아용 의자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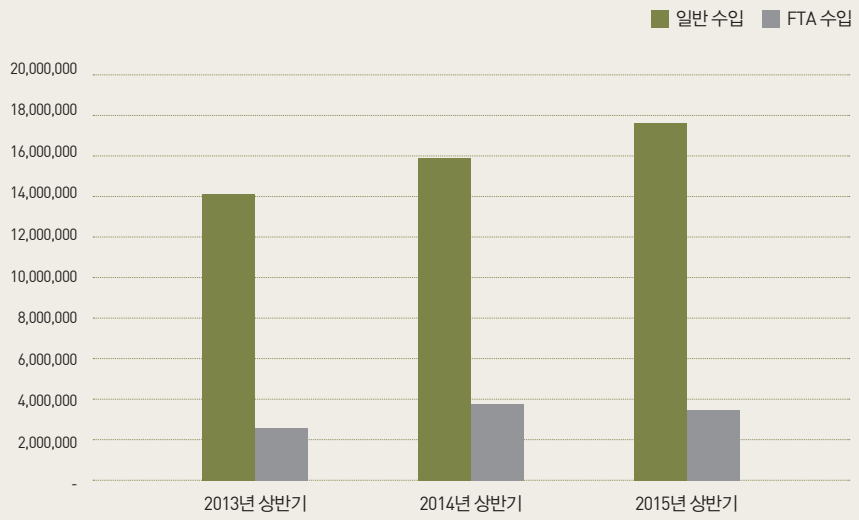

유아용 의자용품의 FTA상대국 수입은 최근 3년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별로 살펴보면 EU가 최대 수입국이며, 이어 미국, 호주, 아세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에는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14년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과 달리, EU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14년 기준 EU로부터 수입한 유아용 의자용품은 7백5십만 달러였으나, '15년에는 9백3십만 달러로 약 1백8십만 달러 증가하였다.

● 유아용 의자 협정별 일반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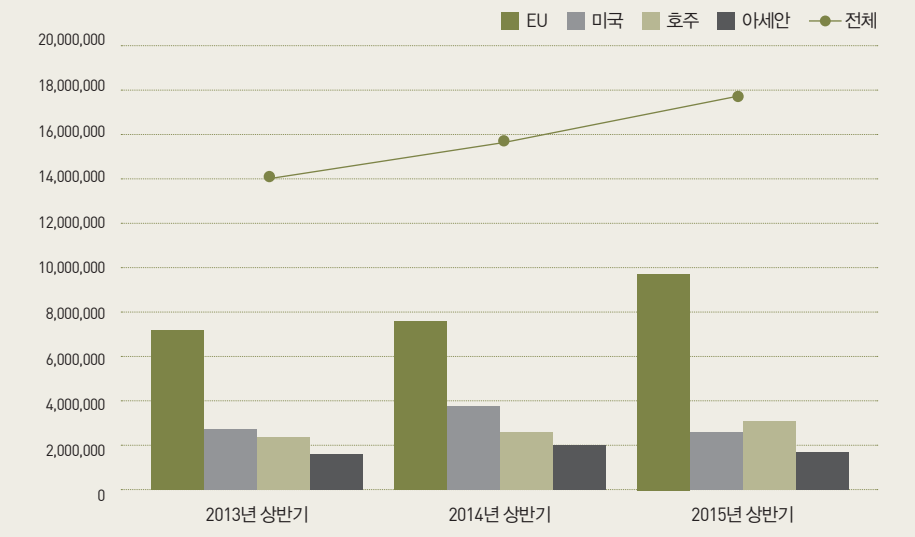

3) FTA 특혜수입 활용동향

유아용 의자용품의 FTA 특혜수입은 '14년에 비하여 '15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협정별로는 EU가 여전히 최대 특혜수입국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3년 제2의 특혜수입국이었던 아세안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으로부터의 특혜수입은 '13년 1십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5년에는 4십6만 달러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일반수입에서 제3위의 수입국이었던 호주의 경우, '15년에 특혜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아용 의자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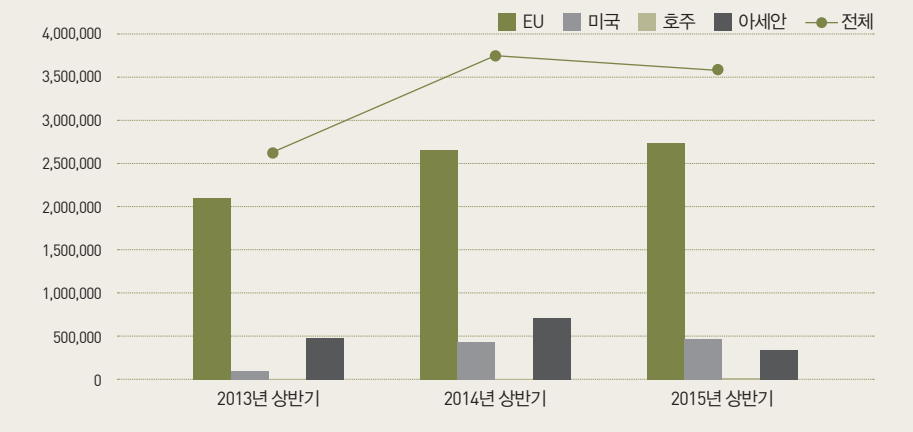

FTA 특혜적용률은 협정에 따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대 수입국인 EU와 수입액은 미미하지만 미국과 아세안의 경우 '14년도와 '15년도 모두 100%에 근접하는 FTA 활용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호주는 FTA 수입금액이 없어 FTA 활용률이 0%로 나타났다.

● 유아용 의자 협정별 특혜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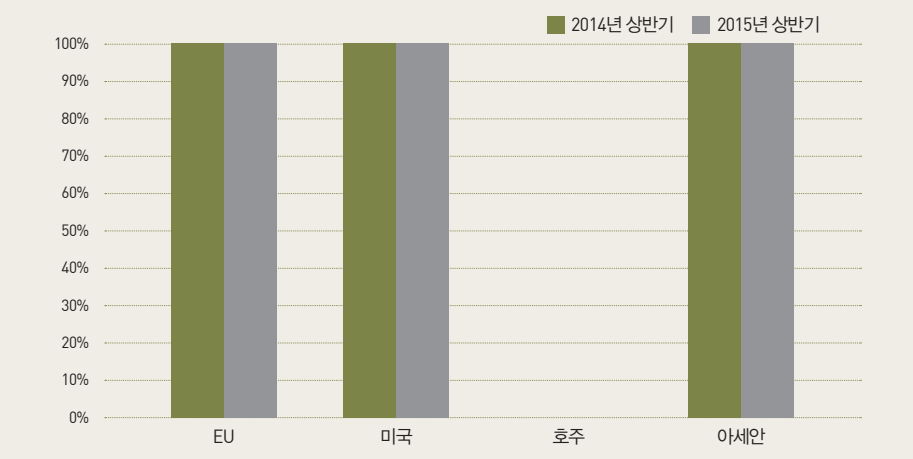

4) 소결

유아용 흔들의자, 카시트, 보행기 등을 포함하는 유아용 의자용품의 수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협정별로는 EU가 최대 수입국이며 이어 미국, 호주, 아세안 순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수입에 있어서도 EU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동시에 증가세에 있는 반면, 기타 국가로부터의 특혜수입은 정체이거나 감소세에 있다. 유아용 의자용품은 최혜국대우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❻ 유아용 완구 등

1) 물품개요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서도 유아 및 어린이 완구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채널에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변신자동차로봇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을 연출할 정도로 중국산 완구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503호에는 주로 유아나 어린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을 포함한다. 특히 동 호(Heading)는 소호(Sub-Heading)가 제9503.00호로 단일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방식보다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품목분류 체계를 두도록 하였다.

〈유아용 장난감의 종류〉

HS	품명	주요 품목
9503.00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1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완구(예: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인형용 차	어린이 세발자전거
2	사람 모형의 인형	인형 및 부속품
3	그 밖의 완구 ·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다)와 각종 퍼즐	조립용 키트, 완구, 장난감 악기, 퍼즐 등

유아용 완구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것은 0~8%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미국, 아세안, 호주와 체결한 FTA를 활용한다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아용 완구 등의 세율정보(2015 상반기)〉

구분	기본/MFN⑭	EU	미국	아세안	호주
9503.00	0-8	0	0	0	0

유아용 완구 등의 종류별는 크게 자전거 등 바퀴가 달린 완구(제9503.00-1호), 사람 모양의 인형(제9503.00-2호), 기타 키트완구 등(제9503.00-3호)로 구분할 수 있다. '14년을 기준으로 기타 키트완구 등의 비중이 91%로 가장 높으며, 이어 바퀴가 달린 완구가 7%, 사람 모양의 인형이 나머지 2%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용 장난감 종류별 수입비중(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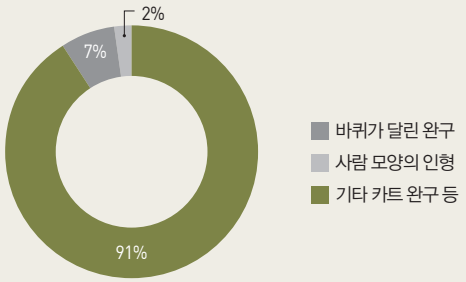

⑭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2) 총수입 및 일반 수입동향

'15년 FTA 국가로부터의 유아용 완구의 수입금액은 '13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크게 나타났다. '13년 상반기 총 5천9백만 달러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15년 상반기 총 7천7백만 달러 수입, 1천8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FTA 특혜를 적용받은 수입금액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15년에는 '13년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완구 등 수입동향〉

[단위: USD]

구분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HS	일반	FTA	일반	FTA	일반	FTA
950300	59,892,289	11,961,483	75,373,728	17,139,503	77,697,706	21,329,663

* 터키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일반수입 및 FTA 수입금액으로 함

● 유아용 완구 등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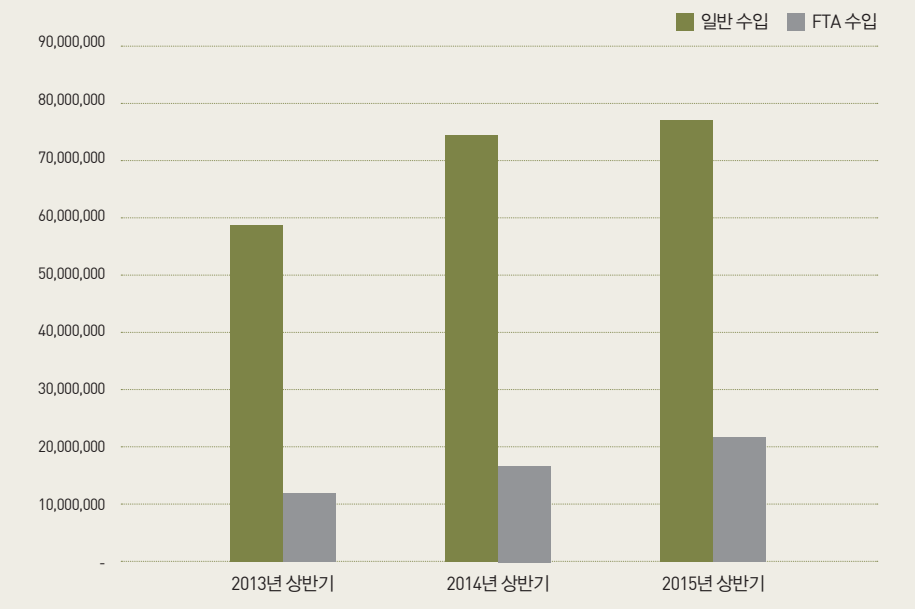

유아용 완구 수입이 FTA 상대국으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입국인 EU와 아세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3년 기준 EU는 3천7백만 달러, 아세안은 9백만 달러였으나, '15년에는 EU가 4천6백만 달러, 아세안이 2천3백만 달러로 양국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아세안은 '13년 미국에 이은 제3위 수입국이었으나 '15에는 미국 수입을 앞질러 EU에 이은 제2의 유아용 완구 수입국이 되었다. 4위 수입국인 EFTA 역시 '15년 기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유아용 완구 등 협정별 일반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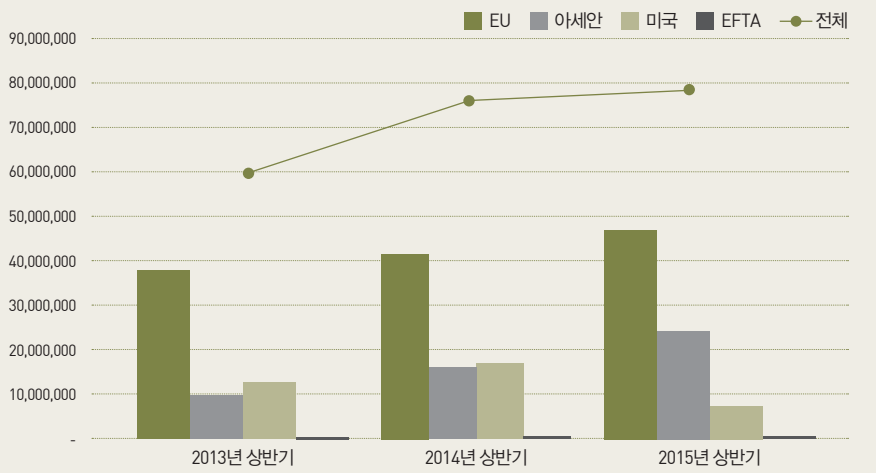

3) FTA 특혜수입 활용동향

유아용 완구 등 일반수입의 최대수입국이 EU인 것과 달리, FTA 특혜수입은 아세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부터 최대 FTA 특혜수입국이었던 아세안은 총 7백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여 '15년에는 1천6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수입 총 증가분의 대부분은 아세안 특혜수입 증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EU와 미국은 특혜수입 규모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EFTA에서의 수입이 미미한 수준이나 '1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유아용 완구 등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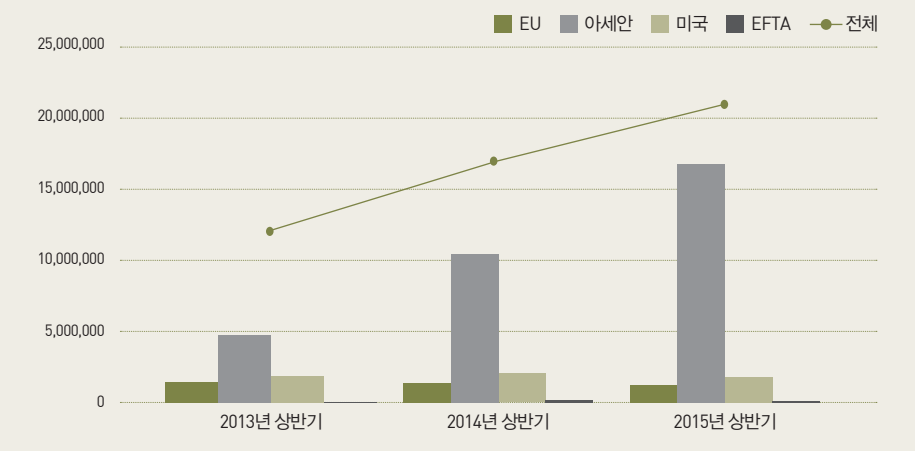

유아용 완구의 FTA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협정별로 최저 60%에서 최대 9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혜협정 중 E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은 '14년에 비하여 '15년에 FTA 활용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FTA는 '15년 기준 FTA 활용률이 96%로 대부분의 수입물품을 특혜협정을 적용하여 수입하였다. 일반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EU는 활용률이 65%, 아세안은 81%, 미국은 71%로 나타났다.

● 유아용 완구 등 협정별 특혜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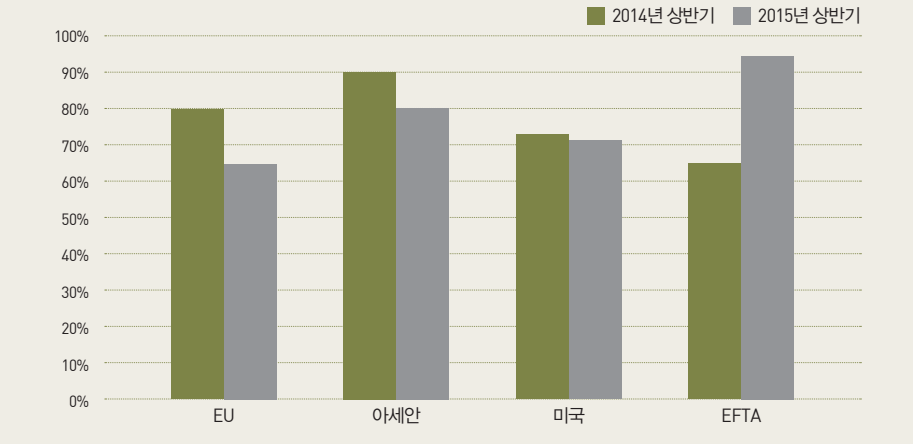

4) 소결

유아용 완구 등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가 FTA 활용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FTA 특혜수입증가는 높지 않으며, 일반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별로 살펴보면 아세안의 FTA 특혜수입 증가율이 높으며, 활용률도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아세안 FTA가 특혜세율을 활용한 주요 협정임을 알 수 있다.

❼ 유아용 기저귀

1) 물품개요

유아용 기저귀는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의 팬티형 기저귀를 말한다. 유아용 기저귀 역시 다른 유아용품과 마찬가지로 국내 출산율 저하의 영향을 받아 판매량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기저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나마 시장규모가 줄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업체들이 단가가 높은 일회용 팬티형 기저귀를 출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기저귀는 크게 팬티형, 부착형, 물놀이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팬티형 기저귀는 착용이 쉬워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러한 경향은 유아용품 시장이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제9619호는 HS 2012년에 신설된 호(Heading)로서, 기존에 재질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하나의 호로 통합하였다. 제9619호는 재질별로 제지용, 방직용 섬유용, 기타 등의 소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아용 기저귀는 기타의 기저귀가 분류되는 제9619.00-9000호에 분류된다.[15]

〈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번호〉

HS	품명	주요 품목
9619.00	위생 타월(패드) ·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 · 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위생타올, 탐폰, 냅킨, 수유패드, 기저귀

유아용기저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 최혜국대우세율은 0~13%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미국, EU, 아세안, 캐나다와의 협정을 활용하면 0%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아용 기저귀의 세율정보(2015년 상반기)〉

구분	기본 / MFN[16]	미국	EU	아세안	캐나다
9619.00	0-13	0	0	0	0

⑮ 최근의 일회용 기저귀는 펄프뿐만 아니라 고분자 흡수체(Super Absorbent Material)와 같은 플라스틱류를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 기타의 기저귀로 분류한다. (관세평가분류원 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⑯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2) 총수입 및 일반 수입동향

유아용 기저귀 등이 포함되는 제9619호의 수입은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3년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제9619호의 수입은 약 1천1백만 달러였으나, '15년에는 1천7백만 달러로 약 6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반면 FTA 특혜를 적용받은 수입은 금액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특혜수입금액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3년 8십4만 달러에서 '15년 상반기 4십2만 달러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유아용 기저귀 수입동향〉

[단위: USD]

구분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HS	일반	FTA	일반	FTA	일반	FTA
961900	11,634,710	845,877	18,095,666	770,033	17,913,185	427,242

※ 터키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일반수입 및 FTA 수입금액으로 함

● 유아용 기저귀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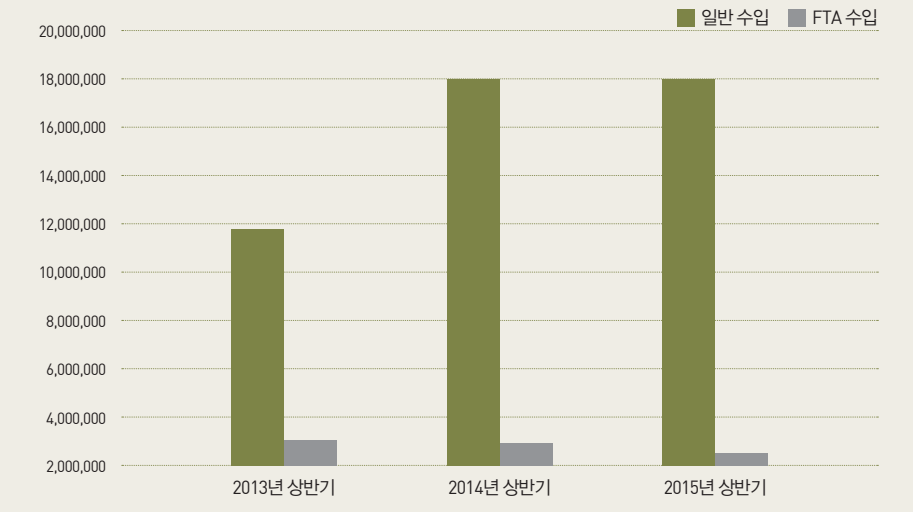

협정별로 살펴보면 유아용 기저귀 등 제9619호의 물품 수입은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감소,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14년까지만 해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과 EU는 '15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아세안 수입은 증가하여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15년 기준 최대 수입국은 아세안으로서 상반기에만 약 7백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이어 미국이 5백만 달러, EU가 4백8십만 달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용 기저귀 협정별 일반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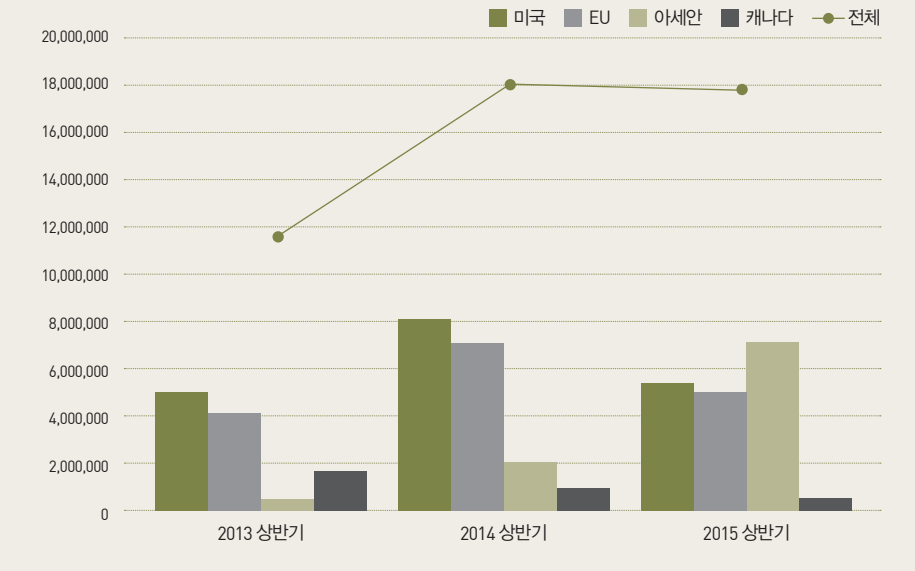

3) FTA 특혜수입 활용동향

유아용 기저귀 등 제9619호의 일반수입이 '1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15년 FTA 특혜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의 특혜수입감소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13년 미국의 특혜수입은 8십만 달러로서 대부분의 FTA 특혜수입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5년 특혜수입규모는 3십7만 달러에 그쳤다.

특혜수입이 감소한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EU와 아세안도 마찬가지다. EU의 경우 '13년 4만 달러 수준의 FTA 특혜수입이 존재하였으나, '15년에는 1만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아세안 역시 '14년 6만 달러에서 '15년 3만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5년 1월 발효된 캐나다의 경우, FTA 대상수입이 약 6십1만 달러였으나 실제 특혜적용을 받아 수입된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용 기저귀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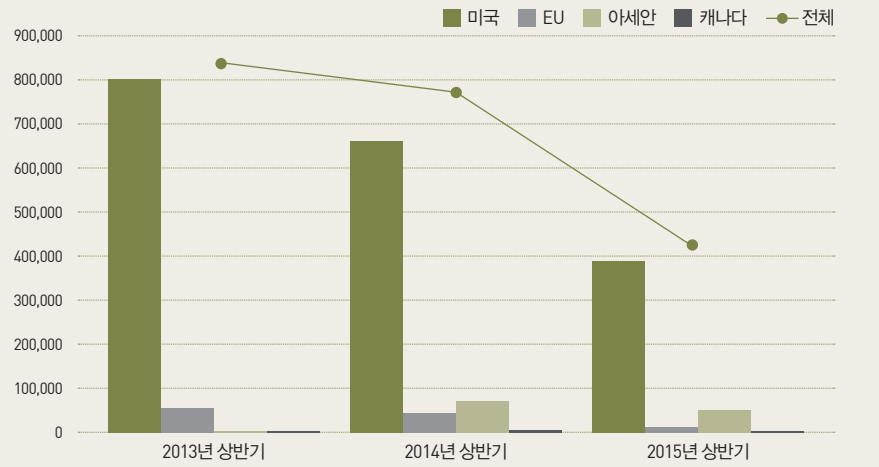

유아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FTA 활용률은 아세안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미국과 EU는 하락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14년 99%, '15년 100%로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특혜협정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으나, 미국과 EU는 '15년 기준 각각 82%와 41%의 활용률을 나타내었다. 캐나다는 2015년 1월 발효되었으나 수입된 물품은 FTA 특혜를 받지 않고 수입되어 활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아용 기저귀 협정별 특혜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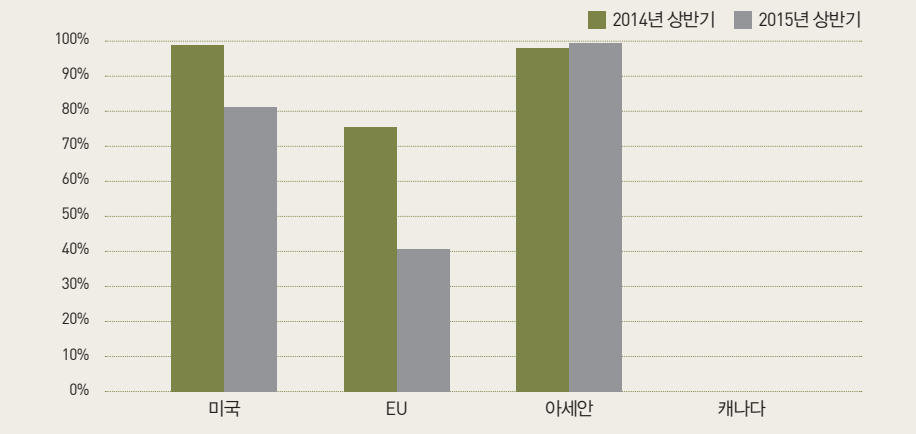

4) 소결

유아용 기저귀의 수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세는 FTA 협정 활용과는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도 일반수입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이나 FTA 특혜수입은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최대 수입국이었던 미국으로부터의 특혜수입 하락에 원인이 있다. 미국의 특혜수입이 하락하였지만 EU와 아세안, 캐나다로부터의 일반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기저귀 수입규모는 '14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03. 유아용품 FTA 활용 수입과 시사점

❶ 유아용품 수입 총괄

앞에서 유아용품을 총 7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 물품의 일반수입 및 FTA 수입 동향을 협정별로 살펴보았다. 일반수입의 경우 '13년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구체적으로는 조제식료품, 화장품, 의자 등, 완구, 기저귀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아용 의류, 유모차는 '13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USD]

연번	품명	2013년	2014년	2015년
1	유아용 조제식료품	16,078,307	16,336,326	20,938,585
2	유아용 화장품 등	310,928,244	366,203,918	347,117,841
3	유아용 의류	7,110,102	6,953,143	5,863,745
4	유모차	7,564,666	7,063,254	5,515,559
5	유아용 의자 등	14,060,197	15,622,379	17,373,883
6	유아용 완구 등	59,892,289	75,373,728	77,697,706
7	유아용 기저귀 등	11,634,710	18,095,666	17,913,185
합계		427,268,515	505,648,414	492,420,504

FTA 수입의 경우에도 일반수입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15년 수입은 '13년보다 증가하였으나, '14년보다는 소폭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일반수입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데,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조제식료품, 화장품, 의자 등, 완구 등이며, 감소한 품목은 유아용 기저귀가 유일하다.

[단위: USD]

연번	품명	2013년	2014년	2015년
1	유아용 조제식료품	1,720,587	818,786	3,776,722
2	유아용 화장품 등	176,469,878	205,800,660	196,609,864
3	유아용 의류	3,733,646	2,950,270	3,349,265
4	유모차	3,165,822	3,903,695	2,799,802
5	유아용 의자 등	2,674,062	3,775,881	3,583,581
6	유아용 완구 등	11,961,483	17,139,503	21,329,663
7	유아용 기저귀 등	845,877	770,033	427,242
합계		200,571,355	235,158,828	231,876,139

❷ 유아용품 수입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실적은 2012년 8천억 원에서 2014년 1조6천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해외직구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해외직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유아용품의 경우 해외직구 주요 거래대상으로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구매 및 파급력이 매우 큰 물품이다. 해외직구를 통하여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직구라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 통관방법이 달라지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국내 해외직구 이용자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 및 확인 후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유통업자, 제조업체에도 유아용품의 수입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가별로는 대부분 EU ·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의 비중이 크다. 유아용 의류 등 섬유제품은 아세안 비중이 크지만, 그 외 유아용 유모차, 장난감, 화장품 등은 국가이미지와 직결되어 선진국 선호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EU 및 한-미 FTA 활용과도 연관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활용하여 유아용품 수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올해 발효되는 한-중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 중국 유아용품 시장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아용 장난감, 의류 등 중국 경쟁력에 밀리는 품목보다는 유아용 화장품, 식료품, 유모차 등 보다 고급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이 유리할 것이다. 유아용품에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더불어 한-중 FTA를 활용한다면, 이는 중국의 유아용품 수출시장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호주 FTA 발효 1주년: 영연방 국가의 FTA 활용현황과 전망

권민경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분석범위 및 정의]

한-호주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영연방 국가의 FTA 이행 초기단계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연방 국가와의 FTA 교역에 기초자료로써 도움이 되고자 한다.

FTA 활용 현황 분석기간은 각 협정의 발효시기와 자료입수가능 시점을 고려하여 한-호주 FTA는 2015.1.~2015.11, 한-캐나다 FTA는 2015.1.~2015.6로 하였다.

분석통계는 무역협회와 관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통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총수출입 : 한국과 상대국의 해당기간의 모든 수출입실적을 의미
* FTA 대상 수출입 : FTA 특혜의 대상인 품목의 실적
* FTA 활용률 : FTA 대상품목이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한 경우를 의미

01. 영연방 국가와의 교역 동향

❶ 연연방 3국 총교역 동향

1)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총수입	증감률	총수입	증감률	총수입	증감률
2013년	20,785	-9.6	4,717	-10.1	1,395	4.2
2014년	20,413	-1.8	5,443	15.4	1,526	9.4
2015년①	13,916	-19.9	3,480	-27.3	1,055	-17.7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년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은 4,401억 달러, 수입액은 3,673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7.7%, 16.6% 감소하였다.

① 2015년 수출입 실적은 무역협회 통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10월 말까지 누계이다.

영연방 3개국의 최근 3년간 수입규모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영연방 국가 중에서 호주는 한국의 12위 수출대상국이자 6위 수입대상국으로 교역규모가 가장 크다.

2013년 이후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는 전년대비 19.9%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로 부터의 수입규모도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캐나다의 감소폭이 약 27%로 매우 큰 수준이다.

2)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총수입	증감률	총수입	증감률	총수입	증감률
2013년	9,563	3.4	5,203	7.8	1,491	1.7
2014년	10,283	7.5	4,917	-5.5	1,730	16.1
2015년	9,276	7.3	3,996	-2.4	1,050	-31.2

자료: 한국무역협회

영연방 국가로의 수출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교역규모가 가장 큰 호주의 경우 매년 수출금액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한-호주 FTA가 발효한 2015년 캐나다와 뉴질랜드로의 수출규모는 감소하였으나 호주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하여 교역규모가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3년, 2014년 모두 수출금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큰 폭(31.2%)으로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對뉴질랜드 주요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액이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라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액에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❷ 영연방 3국과의 주요 교역 품목

1) 수입

(단위:백만 달러, %)

구분	호주		
	품명	2015년	비중
1	유연탄	3,645	26.2
2	철광	2,884	20.7
3	가축육류	969	7.0
4	원유	838	6.0
5	천연가스	668	4.8
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620	4.4
7	동광	581	4.2
8	무연탄	373	2.7
9	기타 금속광물	361	2.6
10	당류	336	2.4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對호주 주요 수입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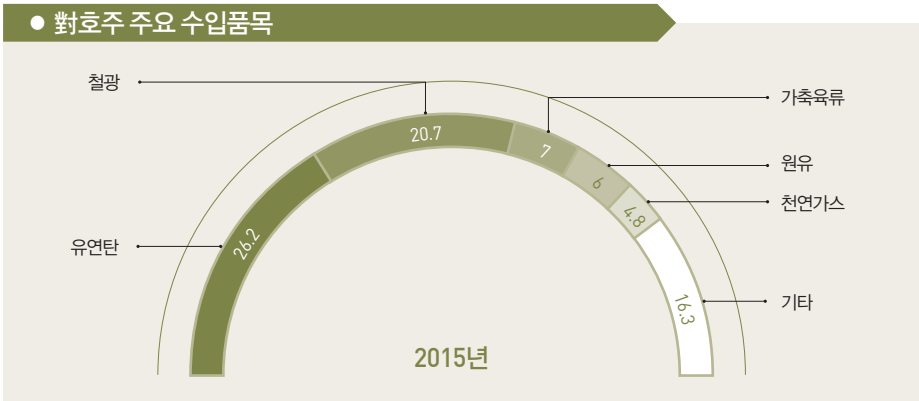

호주와의 주요 교역 품목은 유연탄(26.2%), 철광(20.7%), 가축육류(7%), 원유(6%), 천연가스(4.8%) 등이다. 호주의 주요산업인 광산물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비중 역시 높은 편이다.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캐나다		
	품명	2015년	비중
1	유연탄	784	22.5
2	동광	469	13.5
3	펄프	183	5.3
4	칼륨비료	136	3.9
5	우라늄	129	3.7
6	철광	121	3.5
7	원목	114	3.3
8	가축육류	91	2.6
9	기타 기계류	69	2.0
10	제재목	62	1.8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對캐나다 주요 수입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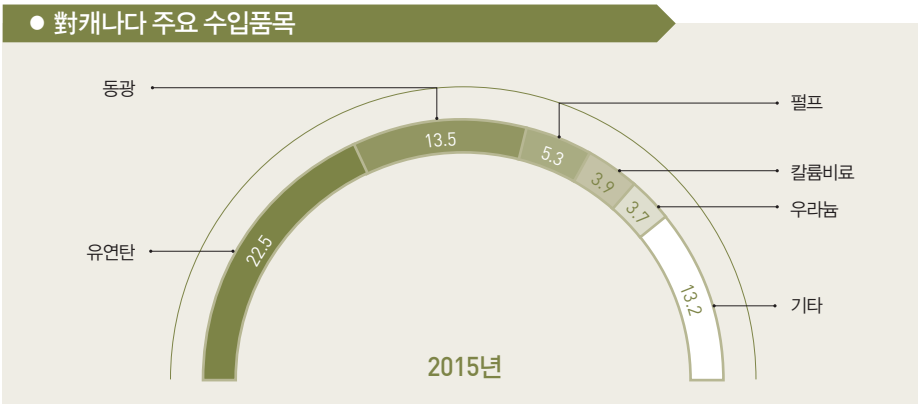

캐나다와의 주요 교역 품목은 유연탄(22.5%), 동광(13.5%), 펄프(5.35), 칼륨비료(3.9%), 우라늄(3.7%) 등이다. 캐나다로부터의 주요수입 품목은 주로 캐나다의 주요 1차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유연탄은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품목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발전하면서 연료 수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뉴질랜드		
	품명	2015년	비중
1	원목	237	22.5
2	기타 석유화학 제품	187	17.8
3	낙농품	119	11.3
4	가축육류	91	8.7
5	펄프	51	4.9
6	과실류	45	4.3
7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5	3.3
8	제재목	28	2.7
9	단백질류	26	2.5
10	원유	25	2.4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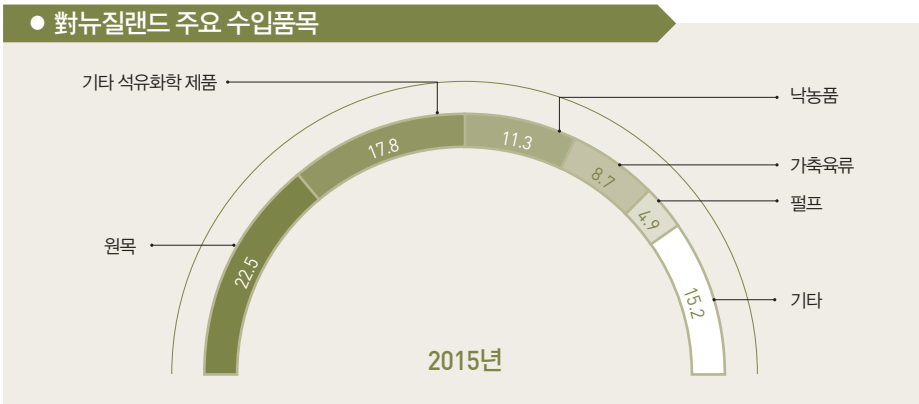

뉴질랜드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원목(22.5%), 기타 석유화학제품(17.8%), 낙농품(11.3%), 가축육류(8.7%) 등이다.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품목은 1차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주로 메탄올로 다국적 메탄올 생산기업의 법인 상호간 교역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출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호주		
	품명	2015년	비중
1	경유	1,555	16.8
2	승용차	1,373	14.8
3	휘발유	1,155	12.4
4	해양구조물	1,144	12.3
5	철구조물	864	9.3
6	제트유 및 등유	589	6.4
7	자동차부품	164	1.8
8	화물자동차	110	1.2
9	합성수지	105	1.1
10	선박	94	1.0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對호주 주요 수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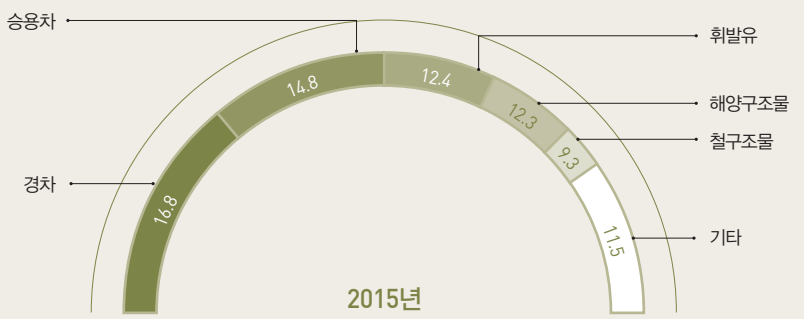

2015년 對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경유(16.8%), 승용차(14.8%), 휘발유(12.4%), 해양구조물(12.3%), 철구조물(9.3%) 등이다.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정제한 후 경유 및 휘발유를 다시 수출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의 수출비중도 높게 나타나는데 호주 시장 내 한국산 자동차 브랜드(현대, 기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캐나다		
	품명	2015년	비중
1	승용차	1,797	45.0
2	무선전화기	274	6.9
3	자동차부품	191	4.8
4	철구조물	142	3.5
5	타이어	83	2.1
6	기타 정밀화학원료	70	1.8
7	합성수지	59	1.5
8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52	1.3
9	펌프	52	1.3
10	냉장고	50	1.3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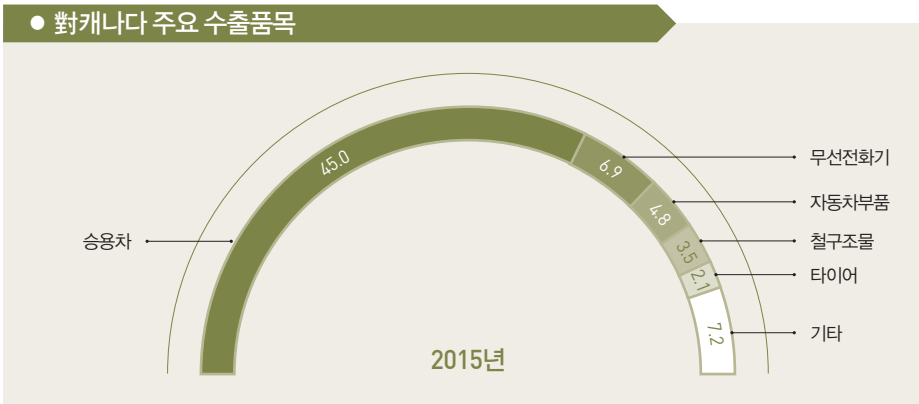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캐나다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승용차(45%), 무선전화기(6.9%), 자동차부품(4.8%), 철구조물(3.5%), 타이어(2.1%) 등이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주요품목은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현지의 완성차 제조시설에 공급되는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뉴질랜드		
	품명	2015년	비중
1	휘발유	229	21.8
2	승용차	209	19.9
3	경유	107	10.2
4	합성수지	41	3.9
5	철도차량	31	2.9
6	건설중장비	30	2.9
7	화물자동차	28	2.7
8	동조가공품	21	2.0
9	기타 어류	18	1.7
10	축전지	16	1.6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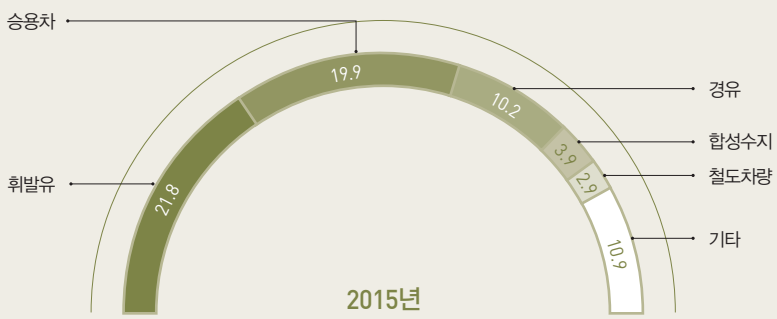

2015년 뉴질랜드로 수출한 주요 품목은 휘발유(21.8%), 승용차(19.9%), 경유(10.2%), 합성수지(3.9%), 철도차량(2.9%) 등이다. 對뉴질랜드 수출의 특징은 휘발유, 경유,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의 비중이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편 2015년 철도차량의 수출은 뉴질랜드 수도인 웰링턴의 통근용 철도차량을 국내기업이 공급하게 되면서 신규 편입되었다.

❸ 영연방 3국 FTA 양허현황

구분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국		호주		한국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A	B	A	B	A	B	A	B	A	B	A	B
즉시철폐	75.2	72.4	90.9	86.3	81.9	87	76.4	64.1	76.5	48.3	85.7	92
10년 내	94.3	94.6	100	100	97.5	98.4	97.5	98.7	93.9	78.3	100	100
그 외	4.3	5.3	-	-	0.7	1.2	0.3	1.3	4.3	20.1	-	-
현행관세 및 양허제외	1.4	0.2	-	-	1.8	0.5	2.2	-	1.8	1.6	-	-

* A: 품목 수 비중, B: 수입액 비중 **그 외 유형에는 10년 초과, 부분감축, 계절관세가 포함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상세설명자료

우리나라와 호주는 2014년 12월 12일 FTA가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약 75%, 호주는 약 91%의 품목을 발효즉시 관세 철폐하였고 10년 내에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양허하였다.

캐나다와의 FTA는 2015년 1월 1일 발효하여 발효즉시 한국은 약 82%, 캐나다는 약 76%의 품목을 관세 철폐하였다. 향후 10년 내 양국은 97.5%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 전면 철폐를 약속하였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하여 우리나라는 76.5%, 뉴질랜드는 85.7%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입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양허 개방수준이 48.3%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뉴질랜드로부터의 주요 농수산품목에 대한 국내 보호를 위하여 관세 철폐의 기간을 다소 늦춘 것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10년 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고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약 94%의 품목을 완전개방하기로 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10년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쌀과 같은 일부 양허제외 품목을 두어 양허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다.

02. 한-호주 FTA 교역 및 활용 동향

❶ 한-호주 FTA 교역 동향[②]

1) 총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수입	20,785	20,413	13,930
총수출	9,563	10,283	9,278
무역수지	-11,222	-10,131	-4,652

● 총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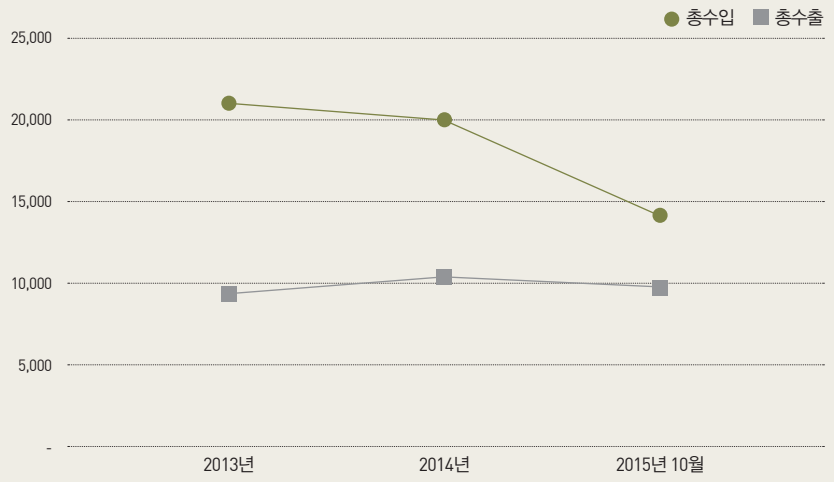

2015년 對호주 수출은 92.7억달러, 수입은 139억달러이다. 전년대비 2015년의 수입액이 큰폭 감소하면서 최근 3년간 對호주 교역의 무역수지 적자폭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② 2015년의 수출입 실적은 2015년 10월까지의 누계이다.

2) 산업별 교역 동향

a. 수입

(단위 : 천 달러, %)

산업(MTI 1)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광산물	16,284,600	16,100,098	10,113,535	-59.2
기계류	316,277	237,785	452,251	47.4
농림수산물	2,397,478	2,536,149	2,096,609	-21
생활용품	19,558	13,207	9,654	-36.8
섬유류	7,857	7,868	5,968	-31.8
잡제품	2,941	3,306	2,645	-25
전자전기 제품	110,328	110,503	59,283	-86.4
철강금속 제품	1,214,292	1,070,928	879,876	-21.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	13,811	9,699	16,505	41.2
화학공업 제품	417,475	323,477	293,192	-10.3
합계	**20,784,616**	**20,413,019**	**13,929,518**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1단위)

● 산업별 수입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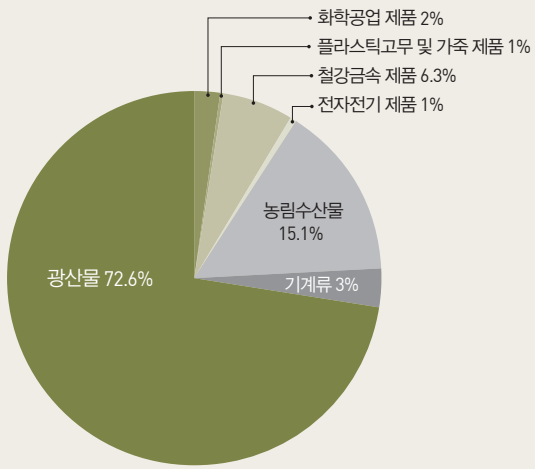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광산물(72.6%), 농림수산물(15.1%), 철강금속 제품(6.3%)으로 광산물과 농림수산물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절대적이다. 광산물과 농림수산물은 호주의 주요산업으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연탄이 광산물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발전용과 철강제련용으로 사용된다. 원자재가격의 하락과 2013년 이후 철강경기의 위축으로 수입이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2015년 산업별 교역의 특징은 전년대비 수입금액의 감소폭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물의 수입감소가 50% 이상에 달한다. 다만 전 산업에 걸쳐 모든 산업군의 수입이 감소된 반면 기계류의 경우 유일하게 전년대비 약 47% 수입이 증가하였다.

b. 수출

(단위: 천 달러, %)

산업(MTI 1)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광산물	3,631,944	4,267,737	3,403,079	-25.4
기계류	2,805,257	2,775,943	3,215,916	13.7
농림수산물	108,990	119,111	132,147	9.9
생활용품	54,206	41,305	33,276	-24.1
섬유류	93,018	94,598	67,787	-39.6
잡제품	16,996	13,181	15,507	15
전자전기 제품	849,525	699,845	502,734	-39.2
철강금속 제품	1,158,907	1,389,451	1,252,225	-1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	221,393	216,781	156,570	-38.5
화학공업 제품	622,853	664,561	498,426	-33.3
합계	**9,563,090**	**10,282,512**	**9,277,666**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1단위)

● 산업별 수출비용(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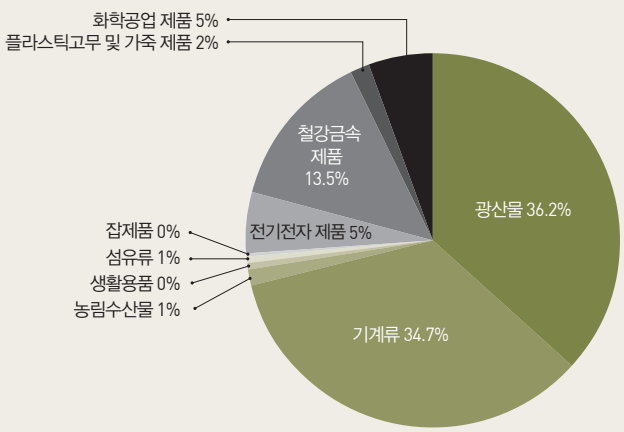

호주로 수출하는 주요산업은 광산물(36.7%), 기계류(34.7%), 철강금속 제품(13.5%) 순으로 나타난다. 호주는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인건비 등의 고비용을 이유로 자체 정제를 하기보다는 원유를 수출하고 경유 및 휘발유를 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 및 휘발유와 같은 광산물의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자동차 및 관련부품이 속한 기계류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계류는 전년대비 약 14% 수출 증가율을 보여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❷ 한-호주 FTA 활용 동향[3]

1) 산업별 FTA 활용

a. 수입

(단위 : 천 달러, %)

산업(MTI 1)	총수입	FTA 특혜대상 비중	FTA 활용률
광산물	10,735,931	18.1	22.4
기계류	431,252	22.4	42.2
농림수산물	2,202,096	93.3	92.6
생활용품	4,168	53.2	43.4
섬유류	96,599	5.5	65.7
잡제품	58,568	96	43.9
전자전기 제품	66,257	52.4	13.1
철강금속 제품	968,132	78.7	66.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	19,108	97.5	78.7
화학공업 제품	316,193	88.7	92.1
총합계	**14,898,305**	**35.2**	**60.8**

자료: 관세청

③ 2015년 1월~11월까지의 관세청 FTA 활용통계를 바탕으로 하였다.

● 산업별 FTA 특혜대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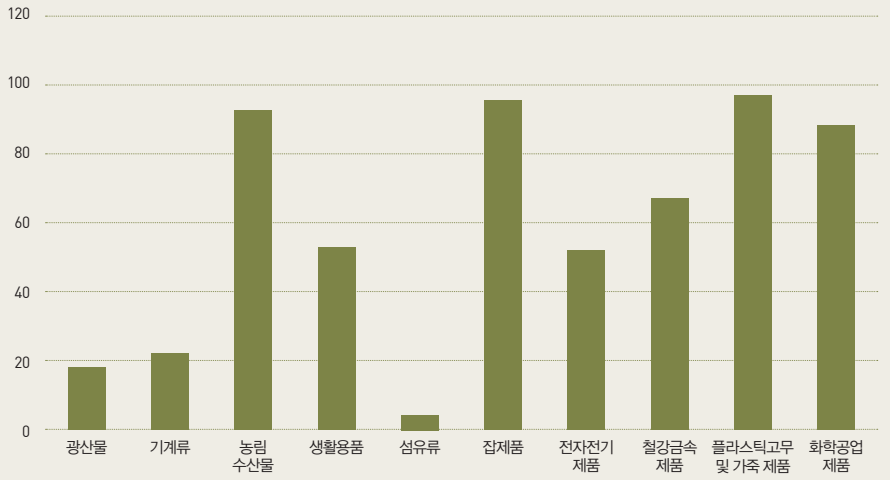

2015년 11월까지 호주로부터의 수입실적은 약 149억 달러로 이 중 FTA 특혜대상 품목의 수입은 약 35%를 차지하고, FTA 활용률은 약 61%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물(9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97.5%), 잡제품(96%), 화학공업 제품(88.7%), 철강금속 제품(78.7%)의 FTA 특혜대상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산업의 수입품목이 FTA 양허개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광산물(18.1%), 기계류(22.4%), 섬유류(5.5%)의 경우 FTA 특혜대상 비중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들 산업군의 경우 2015년 기준 관세 철폐 수준이 미미한 것을 뜻한다.

對호주 산업별 수입에 있어 FTA 활용률이 높은 산업은 농림수산물(92.6%), 화학공업제품(92.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78.7%)로 나타났다. 반면 광산물의 경우 수입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 대상비중과 FTA 활용률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이점이 있다. 또한 전자전기 제품의 FTA 활용률도 13%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이다.

b. 수출

(단위 : 천 달러, %)

산업(MTI 1)	총수출	FTA 특혜대상 비중	FTA 활용률
광산물	3,726,133	0	68.8
기계류	3,378,884	60	85.9
농림수산물	144,064	46.2	57.0
생활용품	34,716	92.3	53.1
섬유류	71,565	76.5	62.5
잡제품	11,353	52.1	56.1
전자전기 제품	524,859	55.2	51.5
철강금속 제품	1,404,816	91.9	45.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	168,702	89.4	67.4
화학공업 제품	532,050	40.1	67.1
총합계	**9,997,142**	**41.3**	**68.2**

자료: 관세청

● 산업별 FTA 특혜대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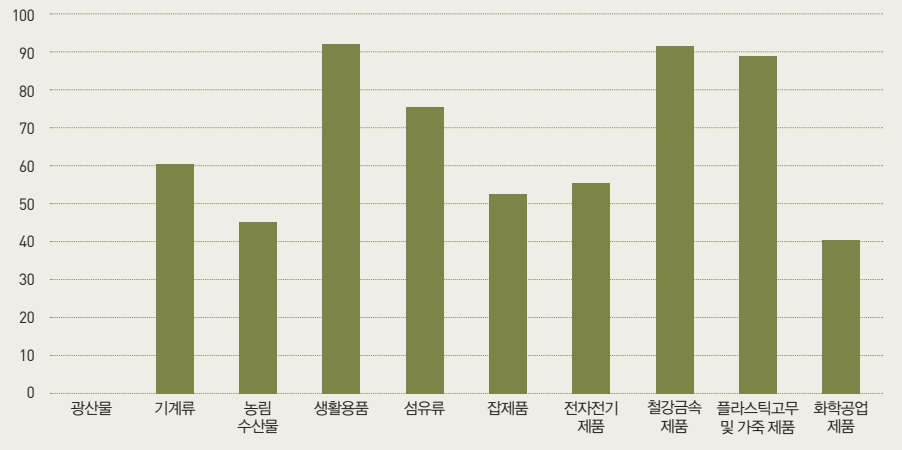

2015년 11월 말 기준 對호주 총수출실적은 약 100억 달러로 FTA 특혜 대상 품목의 비중은 약 41%이고 FTA 활용률은 68%로 나타났다. 수출수입 모두 FTA 활용률이 6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생활용품(92.3%), 철강금속 제품(91.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89.4%)의 FTA 특혜대상 품목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광산물의 경우 총수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출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요 수출품목인 경유, 휘발유 등의 대부분이 이미 무관세로 FTA를 활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포함된 기계류의 경우 수출실적 2위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활용률이 약 8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기업들이 기존의 FTA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호주 FTA 활용의 준비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품목별 FTA 활용

주요 수출입 상위 품목을 기준으로 FTA 활용현황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총수출입 실적 내림차순으로 선별하였다.

a. 수입 상위 30대 품목

• FTA GOOD

2015년 11월 말 기준 총수입실적 상위 30대 품목 중에서 FTA 활용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총 20개이다.

(단위 : 천 달러, %)

구분	품명(MTI 3단위)	총수입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	석탄	4,337,386	0	90.8
2	육류	1,070,338	99.9	99.1
3	알루미늄	693,780	89.6	73.7
4	곡실류	441,856	95.5	73.2

구분	품명(MTI 3단위)	총수입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5	기호식품	422,948	98.1	96.7
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08,833	0.2	62.8
7	정밀화학원료	190,165	94.7	99
8	니켈 제품	70,159	31.9	63.2
9	식물성물질	63,640	32.1	95.5
10	기타 비금속광물	61,864	96.2	97.5
11	동 제품	57,537	16.5	51.2
12	염료 및 안료	54,954	100	92.6
13	축산가공품	54,623	66.7	95.1
14	농산가공품	35,256	87.6	92.3
15	석유 제품	30,445	100	54.1
16	목재류	30,162	30.9	85.9
17	철도차량 및 부품	26,767	76	99.1
18	기타 비철금속 제품	26,620	100	77.3
19	고령토	24,854	100	77.8
20	귀금속장식품	22,081	100	57.4

자료: 관세청

육류, 정밀화학원료, 기타 비금속광물, 철도차량 및 부품, 축산가공품 등은 FTA 활용률이 95% 이상으로 사실상 수입품목 대부분이 FTA 특혜관세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육류의 경우 총수입 실적대비 FTA 특혜대상의 비중이 99.9%, FTA 활용률이 99.1%로 사실상 호주로부터 2015년 수입된 모든 육류는 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수입실적 1위인 석탄의 경우 FTA 대상비중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석탄이 무관세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상위 품목 중에는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0.2%), 동 제품(16.5%), 목재류(30.9%)와 같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의 비중이 낮은 경우에도 FTA 활용률은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FTA 활용경험과 지원환경이 개선되면서 한-호주 FTA가 발효 1년차에 불과하지만 전반적인 FTA 활용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FTA BAD

(단위 : 천 달러, %)

구분	품명(MTI 3단위)	총수입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	기타 금속광물	4,259,108	-	48
2	천연가스	903,819	100	23
3	LPG	668,267	100	7
4	금은 및 백금	264,436	94	34
5	알루미늄광	118,454	-	-
6	연제품	72,817	100	7
7	천연섬유사	71,346	-	-
8	동광	28,271	-	-
9	종자류	27,422	1	43
10	의료위생용품	27,035	96	46

자료: 관세청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상위 30대 품목 가운데 FTA 활용률이 50% 미만인 품목은 총 10개로 나타난다. 특히 활용수준이 낮은 품목은 LPG(7%), 연제품(7%), 천연가스(23%) 등으로 모두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FTA 대상비중은 100%에 달하는 특징

이 있다. 즉 이들 수입품목은 모두 FTA를 활용하여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FTA 활용이 극히 저조한 품목으로 구체적 원인진단을 통해 기업지원 및 정보제공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 수출상위 30대 품목

2015년 11월 말 기준 수출상위 30대 품목의 FTA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FTA 활용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17개, 미만인 품목은 13개로 나타난다.

수입과 비교할 때 수입상위 품목의 약 ⅔가 FTA 활용률이 높은 수준이었던 것에 반하여 수출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수출품목의 FTA 활용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FTA GOOD

(단위 : 천 달러, %)

구분	품명(MTI 3단위)	총수출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	자동차	1,645,862	99.6	94.5
2	자동차부품	167,230	100	56.6
3	합성수지	114,295	61.2	70.7
4	정밀화학원료	99,190	5.9	72.6
5	동 제품	92,036	86.2	72.9
6	알루미늄	90,979	99.9	70.2
7	플라스틱 제품	89,061	85.3	51.5
8	철강판	81,870	35.4	60.7
9	고무 제품	79,511	93.9	83.6
10	냉장고	53,499	100	85.8
11	섬유 및 화학기계	51,622	99.9	67.8

구분	품명(MTI 3단위)	총수출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2	가정용회전기기	46,190	94.5	94.3
13	기타 석유화학 제품	41,092	19.9	64.8
14	농산가공품	34,497	98.1	60.1
15	형강	31,184	100	89.6
16	비누치약및화장품	29,079	100	68.5
17	조명기기	24,382	99	57

자료: 관세청

우리나라가 호주로 수출하는 1위 품목은 자동차, 2위 품목은 자동차 부품으로 자동차의 수출규모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모두 FTA 특혜대상으로 나타나지만 자동차의 FTA 활용률은 9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자동차 부품의 FTA 활용률은 56.6%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차의 FTA 활용률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부품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향후 자동차의 원산지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의 FTA 활용 저조원인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에 기인하는 것인지 기타 그 외의 문제인지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수출상위 품목 가운데 정밀화학원료, 철강판, 기타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FTA 특혜대상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는 기존 무관세 품목이거나, 단계철폐 품목 또는 양허제외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만 수입에서와 마찬가지로 FTA 특혜대상 비중이 낮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품목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 **FTA BAD**

(단위 : 천 달러, %)

구분	품명(MTI 3단위)	총수출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	석유 제품	3,711,565	0	0
2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1,267,277	2	0.4
3	레일 및 철구조물	995,610	100	39.4
4	종이 제품	135,076	22.7	49.7
5	건전지 및 축전지	86,107	4.2	39.1
6	건설광산기계	78,948	31.8	42.3
7	기호식품	76,470	23.8	41.5
8	영상기기	71,702	78	3.3
9	무선통신기기	56,167	33.6	34.2
10	원동기 및 펌프	48,478	66.1	44.3
11	전선	47,810	95.8	40.4
12	컴퓨터	34,895	0.1	0
13	철강관 및 철강선	31,490	60.4	45.2

자료: 관세청

수출상위 30대 품목 가운데 활용률이 저조한 품목은 총 13개이다. 이중 수출규모가 가장 큰 석유 제품과 선박해양 구조물 등의 경우 호주의 수입관세가 무관세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FTA 활용이 의미가 없다.

반면 레일 및 철구조물과 전선의 경우 수출규모의 90% 이상이 FTA 특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이 40% 내외로 저조한 편이다.

이처럼 FTA를 활용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들의 경우 기업의 FTA 활용환경,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 같은 FTA 활용이 저조한 원인의 파악과 FTA 활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03. 한-캐나다 FTA 교역 및 활용 동향

❶ 한-캐나다 FTA 교역 동향[④]

1) 총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총수입	총수출	무역수지
2013년	4,717	5,203	486
2014년	5,446	4,917	-526
2015년(10월)	3,480	3,996	515

2015년 對캐나다 수출은 약 40억 달러, 수입은 34.8억 달러이다. 전년대비 2015년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4년의 무역수지 적자가 올해 흑자로 전환되었다. 캐나다와의 최근 3년간 교역에서 수출은 2014년 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FTA 이행 첫 해로 활발한 교역 증가 및 무역창출 효과를 급진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교역현황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④ 2015년 수출입 실적은 10월까지의 누계이다.

2) 산업별 교역 동향

a. 수입

(단위: 천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	증감률
광산물	21,015	2,644,242	1,553,140	-70.3
기계류	473,993	492,817	272,384	-80.9
농림수산물	738,795	831,303	591,821	-40.5
생활용품	9,468	5,567	8,830	37.0
섬유류	30,136	38,204	21,146	-80.7
잡제품	1,970,746	17,414	13,584	-28.2
전자전기 제품	273,913	328,122	251,771	-30.3
철강금속 제품	408,403	362,318	172,496	-110.0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	79,887	65,971	90,728	27.3
화학공업 제품	710,973	656,632	504,553	-30.1
합계	**4,717,331**	**5,442,591**	**3,480,454**	

● 산업별 수입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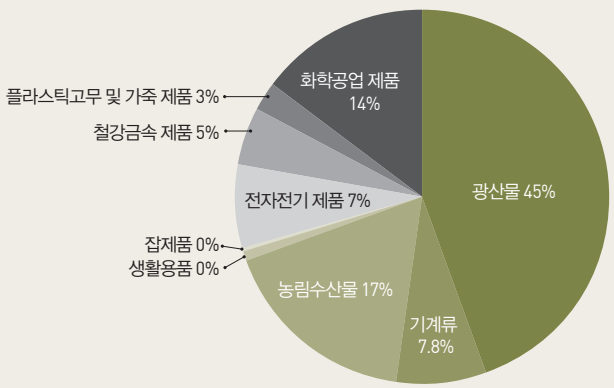

캐나다산 수입에 있어 수입비중이 큰 산업은 광산물(45%), 농림수산물(17%), 화학공업 제품(14.5%), 기계류(7.8%) 순으로 나타난다. 2015년의 경우 수입비중 1위인 광산물과 철강 제품의 수입 감소율이 70%, 110%로 나타나면서 수입규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과 국내 철강경기 악화가 맞물리면서 호주와 마찬가지로 주요 수입국인 캐나다로부터의 수입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전 산업에 걸쳐 전년대비 수입감소가 일반적인 반면 생활용품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의 경우 수입증가가 소폭 이루어졌다.

b. 수출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	증감률
광산물	20,641	19,295	2,760	-599.1
기계류	2,972,492	2,939,440	2,390,762	-22.9
농림수산물	73,071	81,973	64,971	-26.2
생활용품	39,131	35,195	25,165	-39.9
섬유류	108,857	102,769	84,576	-21.5
잡제품	3,640	32,949	17,440	-88.9
전자전기 제품	1,065,034	674,388	536,998	-25.6
철강금속 제품	461,736	521,051	428,516	-21.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	197,382	206,213	182,785	-12.8
화학공업 제품	260,871	303,356	261,699	-15.9
합계	**5,202,855**	**4,916,629**	**3,992,671**	**-23.1**

● 산업별 수출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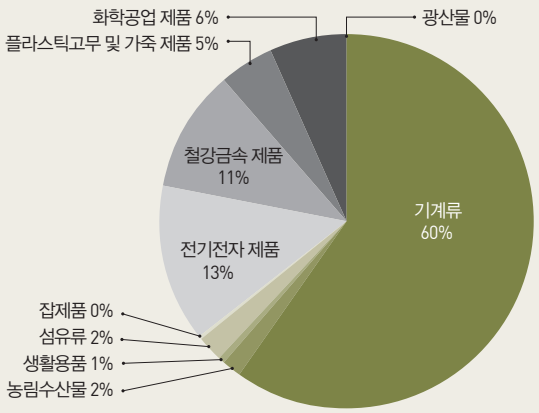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주요 수출산업은 기계류와 전자전기 제품, 철강금속 제품으로 이들 산업은 전년대비 약 20% 내외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에 광산물, 생활용품, 잡제품의 경우 수출감소율이 각각 599%,40%, 89%로 크게 나타난다.

수출증감율을 바탕으로 유사한 산업군을 살펴보면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감소는 다소 적은 반면에 중요도가 낮은 산업군의 수출감소폭은 큰 것으로 분석된다.

❷ 한-캐나다 FTA 활용 동향[5]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상반기의 FTA 활용현황을 산업별 · 품목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⑤ 한-캐나다 FTA의 산업별, 품목별 FTA 활용 동향은 관세청의 2015년 1월~6월 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 산업별 FTA 활용

a. 수입

(단위 : 천 달러, %)

산업(MTI 1)	총수입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광산물	963,457	1.1	37.4
기계류	188,024	87.2	24.4
농림수산물	371,840	78.4	82.6
생활용품	6,230	88.6	58.7
섬유류	8,127	94	79.2
잡제품	9,482	1.6	7.9
전자전기 제품	139,565	77.2	27.1
철강금속 제품	101,495	55.9	62.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4,160	38.7	68.6
화학공업 제품	303,750	26	52.4
총합계	**2,146,133**	**34.7**	**55.7**

● 산업별 FTA 특혜대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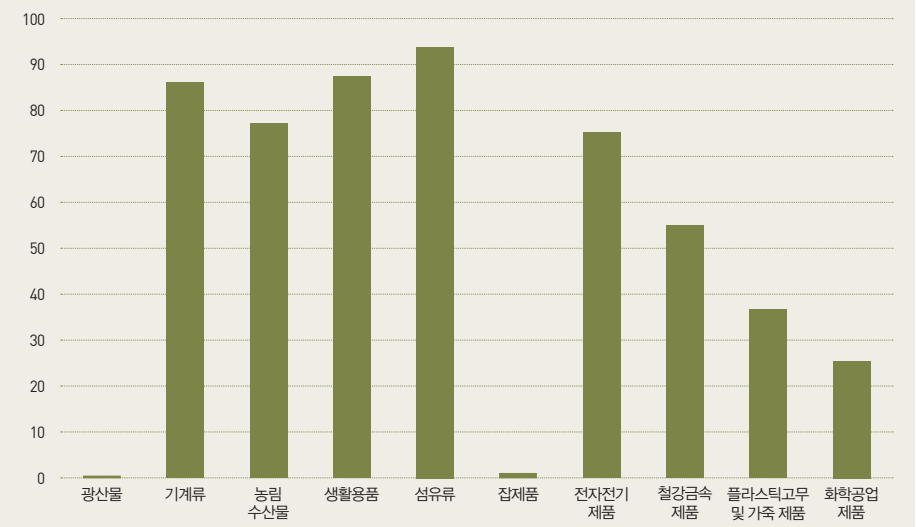

2015년 11월 기준 산업별 FTA 대상품목의 비중은 섬유류(94%), 기계류(87.2%), 생활용품(88.6%), 농림수산물(78.4%), 전자전기 제품(77.2%)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경우 수입시 양허개방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광산물(1.1%), 잡제품(1.6%), 화학공업 제품(26%)의 경우 기존 무관세, 양허제외 등의 이유로 수입시 양허개방도 낮은 산업에 해당한다.

수입비중이 가장 큰 광산물의 경우 기존 무관세로 FTA 활용의 여지가 매우 낮은 반면, 기계류와 전자전기 제품의 경우 FTA 활용가능 품목이 80% 내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평균 25% 내외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다.

캐나다의 주력산업은 1차산업으로 기계류와 전자전기 제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 생산자 및 수출자가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한국산 부품으로 수입 전환하여 제품을 완성한다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활용률이 저조한 산업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FTA 정보와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b. 수출

(단위 : 천 달러, %)

산업(MTI 1)	총수출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광산물	1,709	7.9	61.4
기계류	1,559,461	85.7	74.9
농림수산물	36,620	76.6	55.8
생활용품	14,094	36.4	55.8
섬유류	49,700	23.2	44.9
잡제품	9,631	31.7	35.7

산업(MTI 1)	총수출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전자전기 제품	286,516	15.2	72.3
철강금속 제품	213,811	5.5	69.2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	108,303	76	83.0
화학공업 제품	158,917	8.5	65.0
총합계	**2,438,763**	**63**	**74.4**

● 산업별 FTA 특혜대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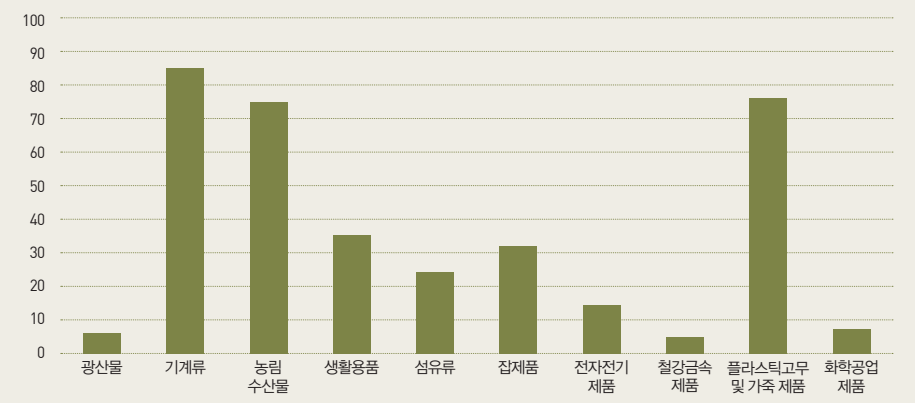

캐나다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들의 산업별 양허 개방도를 살펴보면 기계류(85.7%), 농림수산물(76.6%),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76%)의 FTA 활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산업의 경우 양허개방도가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다.

특히 기존 무관세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광산물, 철강금속 제품, 화학공업 제품의 경우 FTA 특혜대상 비중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FTA 활용가능 여지가 거의 없는 산업군으로 나타난다.

對캐나다 수출품의 평균 FTA 활용률은 74.4%로 낮지 않은 수준으로 섬유류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50% 이상의 활용률을 시현하고 있다.

2) 품목별 FTA 활용

a. 수입상위 30대 품목

• FTA GOOD

2015년 상반기 對캐나다 수입상위 30대 품목 중에서 FTA 활용률이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하는 품목은 총 12개이다.

수입 1위를 기록한 석탄의 경우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목재류와 식물성물질, 육류 등은 FTA 대상비중도 높고 FTA 활용률도 매우 높게 나타나 적극적으로 FTA 활용이 이뤄지는 품목에 해당한다.

(단위: 천달러,%)

구분	품목명(MTI 3)	총수입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	석탄	575,175	0.3	78.5
2	목재류	127,453	45.4	81.7
3	식물성물질	92,686	93.4	92.0
4	육류	59,779	100.0	96.9
5	니켈 제품	33,933	70.4	75.0
6	기호식품	25,110	96.7	67.3
7	계측제어분석기	23,951	81.1	83.0
8	갑각류	19,329	100.0	97.8
9	합성고무	14,533	100.0	100.0
10	모피	14,209	100.0	79.1
11	컴퓨터	13,090	3.0	51.9
12	강반 제품 및 기타철강 제품	11,448	97.9	99.9

• **FTA BAD**

2015년 상반기 기준 수입상위 30대 품목 중 18개의 품목이 FTA 활용률 50% 미만으로 FTA 활용수준이 낮은 것으로 타나난다. 특히 이들 품목의 경우 일부는 무관세 품목으로 특혜관세대우 활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외 정지기기, 자동차 부부품, 화장품, 정밀 화학원료 등은 수입실적 대부분이 FTA 활용이 가능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특히 정지기기(2.6%), 자동차 부품(12%)의 활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자동차 부품의 경우 교차누적을 특별히 한-캐나다 협정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기준을 통해 원산지 상품의 가능성 높여야 할 것이다.

(단위 : 천 달러, %)

구분	품목명(MTI 3)	총수입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	동광	193,534	0	-
2	제지원료	104,008	0	-
3	우라늄	97,458	0	-
4	칼륨비료	97,316	0	-
5	철광	66,611	0	-
6	정지기기	47,342	99.6	2.6
7	기타 기계류	44,638	100	8.5
8	항공기 및 부품	39,724	82.3	44.1
9	가죽	32,335	0	-
10	곡실류	29,173	97.9	44.2
11	알루미늄	20,866	55.1	8.2

구분	품목명(MTI 3)	총수입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2	아연광	19,714	0	-
13	농약 및 의약품	18,580	70.9	23.1
14	자동차부품	17,524	99.8	12
15	비누치약 및 화장품	14,852	98.8	44.2
16	정밀화학원료	12,138	96.9	44.7
17	동 제품	10,100	0.7	3.4
18	기초유분	9,991	0	-

b. 수출상위 30대 품목

• FTA GOOD

2015년 상반기 對캐나다 수출상위 30대 품목 중에서 FTA 활용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총 13개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 자동차, 자동차부품, 고무제품, 농산가공품, 냉장고의 경우 수출 품목 대부분이 FTA 특혜관세를 향유할 수 있는 품목이다.

특히 고무제품과 냉장고의 경우 FTA 활용률이 90%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캐나다로 수출된 대부분의 고무제품과 냉장고는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수출상위 품목 가운데 항공기부품, 원동기 및 펌프, 주단조품의 경우 특혜대상비중이 5% 미만으로 FTA 활용가능성이 거의 없다.

(단위: 천 달러, %)

구분	품목명(MTI 3)	총수출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	자동차	1,221,487	100	75.7
2	자동차부품	106,143	98.5	66.1
3	고무 제품	59,298	90.9	96.1
4	플라스틱 제품	48,329	58.7	58.3
5	항공기 및 부품	46,202	0.2	59.8
6	섬유 및 화학기계	39,940	22.1	78.7
7	원동기 및 펌프	33,939	0.1	100
8	냉장고	26,527	97	93.8
9	주단조품	15,384	3.1	54.5
10	알루미늄	15,302	53.2	65.5
1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4,064	3	68
12	가정용회전기기	13,617	37.9	63.6
13	농산가공품	12,891	97.1	50.2

• FTA BAD

(단위 : 천 달러, %)

구분	품목명(MTI 3)	총수출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1	무선통신기기	144,068	3	12.2
2	철강판	59,969	0	-
3	레일 및 철구조물	47,090	0	-
4	합성수지	41,922	0	-
5	기계요소	40,223	0.1	0
6	정밀화학원료	40,004	0	-

구분	품목명(MTI 3)	총수출	FTA 특혜대상비중	FTA 활용률
7	형강	30,661	0	-
8	철강관 및 철강선	28,905	0	-
9	정지기기	26,690	0	-
10	건설광산기계	16,918	0	-
11	종이제품	16,633	0.1	0
12	합성고무	14,338	0	-
13	편직물	13,884	0	-
14	컴퓨터	13,048	1.9	2.9
15	금형	12,873	0	-
16	회전기기	12,863	0	-
17	건전지 및 축전지	12,463	28.2	38.3

2015년 상반기 캐나다로 수출한 수출상위 30대 품목 가운데 FTA 활용률이 50% 미만인 품목은 총 17개이다.

특징적인 점은 17개 품목 모두 FTA 특혜를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캐나다로 수출하는 수출상위 30대 품목의 절반 이상이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의 의미가 없는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캐나다측 무관세를 이용한 수출전략 외에 시장개방을 통해 FTA 관세 철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신규 수출품목의 발굴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04. 연연방 수출유망품목의 FTA 활용현황과 시사점

호주와 캐나다 FTA 발효로 인해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품목들이 실제 FTA 활용 성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❶ 대(對)호주 수출유망품목의 FTA 활용[⑥]

호주측 양허안과 한국산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수출유망품목의 2015년 수출실적과 FTA 활용률을 도출하였다.

FTA 수출유망 품목 중에서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품목은 튜빙(100%), 철강재 탑(100%), 정제동의 파이프(100%), 증류기(100%), 기타 도자제품(99%), 진공 청소기(95%), 승객차량용 튜브(86%), 프로필렌 공중합체(80%)로 나타난다.

반면 FTA 활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품목도 존재하는데 발표성 스티렌중합체, 나일론 바닥깔개, 세로용접 철강재 판의 경우 호주로 수출하는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품목의 경우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위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발, 기타 철강 파이프, 동 스트립, 타워 크레인과 같은 품목은 FTA 수출 유망품목으로 기대되었으나 2015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품목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한-호주 FTA 활용을 통한 신규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FTA 정보에 취약하고 활용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출유망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지원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⑥ 수출유망품목의 양허안 및 한국산 점유율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對호주 수출유망품목의 FTA 활용현황〉

(단위 : 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국산 점유율	양허유형	총수출	FTA 활용률
730890	철강재 구조물	1	즉시	995,114,139	39.4
854460	기타 전기도체 (천볼트초과)	3.1	즉시	22,457,386	36.6
390311	발표성 스티렌 중합체	20.8	5년 균등	10,409,538	-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9.2	3년 균등	9,468,352	80.1
841990	기계 플랜트 부품	1.2	즉시	6,766,302	16.6
940540	기타 전기램프, 조명기구	0.7	즉시	6,181,486	56.9
830710	철강재 플렉시블 튜빙	2.8	즉시	3,625,582	79.9
850811	1,500와트 이하 진공청소기	4.8	즉시	3,052,717	95.5
850760	리튬이온	1.2	즉시	2,418,307	48.3
841989	수동 전기기계식 공구	40.9	즉시	1,953,926	77.4
940510	전기식 조명기구	0.4	즉시	1,935,514	15.8
741210	정제동의피팅, 파이프 등	4.1	즉시	1,651,187	100
721710	도금, 비도포철강선	3.2	즉시	1,529,810	8.5
590700	기타 침투, 도포방직용직물	20	즉시	1,470,657	74.7
841950	열교환기	71.6	즉시 / 5년 균등	1,434,646	49.1
690919	기타 도자제품	7.6	즉시	1,341,613	99.5
391739	승객차량용튜브, 파이프 등	2.7	5년 균등	1,291,967	86
740710	정제동의봉, 프로파일	1	즉시	1,282,724	36.1
841430	냉장 설비용 압축기	2	3년 균등	1,094,730	34.5
570320	나일론 바닥깔개	1.5	4년차부터(5년 균등)	1,047,626	-
841490	공기, 가스펌프, 컴프레서	0.1	즉시	878,581	40.1

HS코드	품목명	한국산 점유율	양허유형	총수출	FTA 활용률
121221	해조류(김)	15.3	즉시	877,685	43.8
190490	씨리얼	1.9	즉시	820,388	44
841370	기타 원심펌프	37.8	즉시	733,319	64.8
420232	가죽제지갑, 케이스 등	9	즉시	550,124	40
730531	세로용 접철강재 관	74.3	5년 균등	521,084	-
848120	유압전송용 밸브	2.3	5년 균등	513,058	34.2
730793	바트용접한 연결구	9.2	즉시	459,281	72.4
848130	체크밸브	4.7	3년 균등	345,303	38
940560	조명용 사인	1.1	즉시	296,931	23.5
420231	가죽 / 콤포지션레더포켓	1	즉시	278,610	2
842139	기체용여과기 / 청정기	44.2	즉시	251,897	55.9
730429	유정용 기타 케이싱, 튜빙 등	0.1	즉시	194,752	100
843139	8425~8430호 기계부품	0.1	즉시	176,754	22
848140	안전밸브	0.7	5년 균등	105,841	23.3
391731	연질의관, 파이프, 호스	1.2	즉시 / 5년 균등	100,217	25.6
711790	기타 모조 장식용품	0.9	즉시	77,733	0
560819	기타 망지, 어망	3.4	즉시	71,855	0
902910	승객 차량용 속도계 등	3.1	5년 균등	45,992	44.8
850300	전기모터, 발전기 부품	1.6	5년 균등	42,570	73.3
340119	기타 비누	8.3	즉시	24,506	0.6
730820	철강재탑, 격자주	15.9	즉시	15,525	100
841940	증류기 / 정류기	98.1	즉시	4,875	100
761410	철강심 알루미늄 제품	2.9	즉시	300	0

HS코드	품목명	한국산 점유율	양허유형	총수출	FTA 활용률
730539	기타 철강 파이프	81.5	5년 균등	-	-
640220	신발(갑피끈플럭삽입식)	0.2	5년 균등	-	-
842620	타워 크레인	2.9	즉시	-	-
740940	동, 니켈합금판, 쉬트, 스트립	61.5	즉시	-	-

❷ 대(對)캐나다 수출유망품목의 FTA 활용

캐나다의 경우 FTA를 통한 수출유망품목 중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품목은 츄잉껌(100%), 낚시대(100%), 도자기제품(100%), 버스 타이어100%), 게(99.6%), 매니큐어(98%), 폴리에틸렌(95%), 곡물가루(94%) 다랑어(92%), 버섯(89%)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출 규모에 비하여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들이 다수 존재한다. 파스타(48%), 무알콜 음료(42.65), 플라스틱 도포장갑(44%),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33%), 염화비질중합체 제품(52%), 기타 기계(9%)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품목들의 경우 수출규모가 큰 만큼 FTA 활용으로 인한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FTA 기대효과가 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이를 통한 무역창출효과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특정품목 수입의존도, 한국산 점유율, 양허유형 등을 고려하여 수출유망품목으로 제시된 살충제, 기탁석재, 수력터빈 부품, 자동차용 와이어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수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FTA를 통한 신규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들의 경우 연차별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수출되지 않고 특혜관세 수준이 미미하더라도 향후 FTA를 통한 전략적 수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산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對캐나다 수출유망품목의 FTA 활용현황〉

(단위 : 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국산 점유율	양허유형	총수출	FTA 활용률
401120	버스 / 화물차용 타이어	3	5년 균등	9,866,015	100
391810	염화비닐 중합체 제품	6.8	3년 균등	7,986,993	52.4
392321	에틸렌 중합체 가방	3.3	즉시 / 3년 균등	7,302,568	84
732690	철강 제품	0.2	즉시 / 3년 균등	5,316,446	66.2
401699	기타 고무 제품	0.6	즉시 / 3년 균등	3,770,751	44.6
681099	시멘트 / 콘크리트 제품	5.6	즉시	3,095,086	61.2
611610	플라스틱 / 고무도포 장갑	6.7	3년 균등	2,728,427	44.8
210390	소스 및 양념	0.8	5년 균등	2,525,850	55.9
730729	스테인레스 강관	5.8	즉시 / 5년 균등	2,519,444	-
220290	무알콜음료	1.2	즉시 / 3년 균등 / 5년 균등 / 양허 제외	2,187,316	42.6
847989	기타기계	0.8	즉시	2,001,032	8.9
070959	버섯	37.5	3년 균등	1,753,378	89.1
761010	알루미늄 창과 문	2.7	5년 균등	1,374,531	68.3
190219	파스타	2	즉시 / 3년 균등 / 5년 균등	1,365,116	48
940560	조명용 사인 및 네임플레이트	1.5	5년 균등	1,279,939	49.5

HS코드	품목명	한국산 점유율	양허유형	총수출	FTA 활용률
830260	금속자동문장치	4.7	즉시 / 3년 균등	901,106	5.2
210500	아이스크림 / 빙과류	17.8	5년 균등 / 양허제외	839,889	3
820900	공구	3.3	즉시	665,716	-
340211	음이온성유기계면활성제	1.4	즉시	598,480	69.1
420232	플라스틱시트 가방	1.7	3년 균등	577,493	45.4
611596	스타킹	3.3	3년 균등	562,417	65.8
690919	도자기제품	0.7	즉시	520,835	100
160414	다랑어 / 가다랑어	0.3	3년 균등	441,050	92.1
850940	믹서기	3.8	즉시 / 3년 균등	396,052	-
850870	진공 청소기 부품	2.3	즉시	390,509	76.4
940540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0.1	즉시 / 5년 균등	361,854	33.5
392390	플라스틱 포장용기	0.4	즉시 / 3년 균등	348,717	55.5
841869	기타냉장 / 냉동고	0.8	즉시 / 3년 균등	347,341	12
841840	900 ℓ 이하냉장 / 냉동고	3.2	즉시 / 3년 균등	345,020	-
330420	눈 화장용 제품	1.3	3년 균등	292,610	61.7
950730	낚시용 릴	6.7	3년 균등	264,986	85.7
210310	간장	3.2	즉시	252,227	70.1
590700	기타 직물	3.2	즉시 / 3년 균등	217,344	-
611030	인조섬유 스웨터	0.1	3년 균등	210,926	42.8
160419	기타 어류	0.8	3년 균등	209,338	30.4
960329	면도용 / 헤어 브러쉬	5.6	즉시	196,794	42.2
852351	반도체 저장장치	11	즉시 / 3년 균등	176,657	-
853710	1,000볼트 이하 전자기기	0.8	즉시	152,332	-

HS코드	품목명	한국산 점유율	양허유형	총수출	FTA 활용률
160510	게	3.9	3년균등	141,506	99.6
950710	낚싯대	4.1	즉시 / 3년 균등	133,767	100
900311	안경 / 고글	0.9	즉시	129,062	-
830300	금속 금고	2.2	5년 균등	116,385	80.7
560749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끈	4.2	즉시 / 3년 균등	107,330	90.1
854411	구리절연 전선	2.1	즉시 / 3년 균등	105,418	-
330430	매니큐어 / 페디큐어 제품	0.9	3년 균등	100,159	98.2
841370	기타 원심펌프	0.1	즉시	91,750	-
853921	텅스텐할로겐의 필라멘트 램프	1.3	5년 균등	91,154	24.8
200899	과일 및 과일 제품	6.2	즉시 / 3년 균등	72,776	62.2
960330	회화용 / 화장용 브러쉬	3.1	즉시 / 3년 균등	58,573	30.6
420292	플라스틱시트가방	1.2	즉시 / 3년 균등	43,392	84.9
401519	고무장갑	0.3	즉시 / 3년 균등	43,257	63.5
170410	츄잉껌	0.9	3년 균등	16,284	100
110290	곡물가루	0.5	3년 균등 / 5년 균등	7,033	93.7
420291	기타 가죽가방	2.3	즉시 / 3년 균등	2,640	-
150420	어류 유지 및 분획물	0.3	3년 균등	2,560	0
420299	기타 가방	0.7	즉시 / 3년 균등	633	45
851240	자동차 · 자전거용와이퍼	1.3	3년 균등	-	-
380891	살충제	0.5	즉시	-	-
680229	기타 석재	4.9	즉시	-	-
841090	수력터빈 부품	2.2	즉시	-	-

❸ 시사점

한-호주 FTA 1주년을 맞이하여 영연방 국가와의 FTA 활용현황을 점검하였다. 영연방 국가와 우리나라는 교역규모가 적은 편이고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 무관세 품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FTA 역시 가장 최근에 맺어진 것으로 아직 활발한 FTA 활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 3년간의 교역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호주와의 교역은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TA 활용의 기대가 다소 있지만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수출입 모두 감소추세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경우 수입활용률 61%, 수출활용률 68%, 캐나다의 경우 수입활용률 56%, 수출활용률 74%로 양호한 수준의 FTA 활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입활용률보다 한국산 물품이 상대국에서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아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수출활용률이 높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처럼 발효 1년차에 FTA 활용수준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와 FTA를 맺고, 한-미 FTA 및 한-EU FTA 이후 본격적인 FTA 이행환경이 정착되면서 후속 협정의 활용에 기업들의 경험과 전략이 녹아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 문화적 유사성과 더불어 교역구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영연방 국가들로부터 1차산업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주로 수입하고 자동차 및 기계, 전자전기 제품, 석유화학 제품들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띄고 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유사한 경우가 다수이고, 캐나다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들은 영연방 국가들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유사한 점, 교역구조가 유사한 점 등을 참고하여 FTA 활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연방국가 수출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품목이 자동차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호주와 캐나다 모두 수출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 FTA 활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는 완성차로서 대기업 위주의 FTA 활용이 이뤄지는 반면, 중소기업 위주의 FTA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여전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FTA 이행 초기단계를 벗어나 정착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FTA 무역의 완성도가 높아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FTA EXPERT

FTA EXPERT① 전문가 기고

메가 FTA 전망 및 활용방안

FTA EXPERT② 전문가 기고

메가 FTA 부상과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

FTA EXPERT③ 전문가 기고

메가 FTA 동향과 전망

메가 FTA 전망 및 활용방안

김한성 교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20세기 들어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전세계 통상의 새로운 질서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전의 자유무역협정이 주로 정치 · 외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개도국 간의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유무역협정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존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개방에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까지 활발하게 FTA 체결에 참여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양자 혹은 다자간 체결된 FTA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WTO 통보 건수를 기준으로 1990년 이전까지 100여 개에 불과했던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은 2000년에는 300여 개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총 612개의 RTA가 보고되었고 이 중 406개의 RTA가 발효되어 있다.[①]

1990년대 이후 FTA의 확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냉전 종식과 함께 지역 내의 역내 경제협력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여 역내국과의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또한 WTO DDA 협상이 타결 예정기간을 넘겨 장기화되면서 FTA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① WTO 웹사이트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2015년 11월 23일 검색.

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경쟁국의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ASEAN과 중국, 한국, 일본이 연이어 FTA를 체결한 점이나, 중-호주 FTA 협상 개시 후, 일-호주 FTA와 한-호주 FTA가 연달아 협상개시가 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FTA 확산이 신흥개도국 간의 혹은 개도국-선진국 간의 FTA가 주를 이루었다면, Mega-FTA라 불리는 거대 경제권 간의 FTA 추진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과 EU가 추진하고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EU와 일본 간의 FTA,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에 추진되는 한-중-일 FTA, ASEAN과 주변 6개국 간에 추진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이 Mega-FTA로 거론된다.

● 전세계 메가 FTA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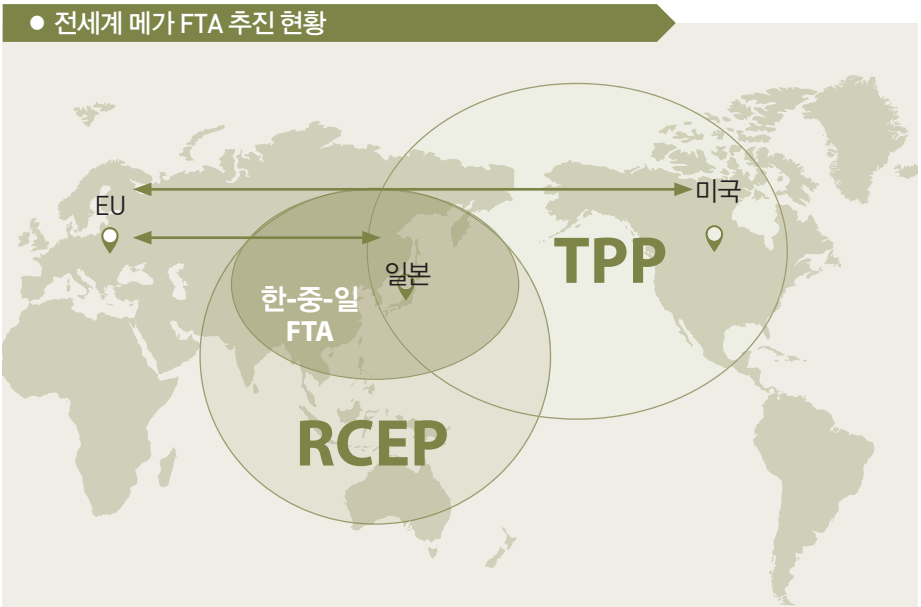

이미 타결된 TPP를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대경제권 간의 FTA가 타결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EU 간의 TTIP는 전세계 GDP의 46.2%와 전세계 무역의 41.9%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동 FTA의 타결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 경제블럭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도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0%의 인구를 포함하고 전세계 GDP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7%와 29.0%에 이르는 통상협정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RCEP과 한-중-일 FTA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TPP에도 '관심'을 표명한 상태로 국내적으로 TPP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주요 지역무역협정 비교〉

구분		EU	NAFTA	TTIP	EU-일	TPP	RCEP	한-중-일
인구	규모(억 명)	5.1	4.7	8.2	6.3	8.5	34.2	15.3
	對세계비중(%)	7.1	6.6	11.5	8.9	11.9	48.0	21.5
GDP	규모(조 달러)	17.4	19.9	34.2	22.3	29.0	21.3	15.3
	對세계비중(%)	23.5	26.9	46.2	30.1	39.2	28.7	20.7
무역	규모(조 달러)	11.6	5.6	15.5	13.2	10.6	10.7	6.8
	對세계비중(%)	31.5	15.2	41.9	35.6	28.7	29.0	18.4

자료: UNCTAD

메가 FTA의 등장 배경

메가 FTA의 등장은 관련 국가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 · 외교적 이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소위 4대 경제권이라 불리는 미국, 중국, EU, 일본 중, 미국과 EU는 전통적으로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거대경제권 간의 FTA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경

제적 요인보다는 주로 정치 · 외교적 요인이 FTA 추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일본은 자국 농축수산품에 대한 민감성을 이유로 자유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중국도 선진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제조업 선진국과의 FTA를 꺼려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2006년 EU는 신통상정책인 '글로벌 유럽'을 수립하면서 제2세대 FTA라 불리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 EU의 FTA 상대국은 주로 저개발국이나 과거 식민지국가를 위주로 자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일방적 개방에 가까운 FTA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6년 제2세대 FTA에서는 EU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한국과 한-EU FTA를 시작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에 따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TPP는 미국의 수출확대라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시장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정치 · 외교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역내에서 자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역내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RCEP을 추진하고 있다. RCEP은 ASEAN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통상협정으로, 중국은 최근까지도 일본이 제안한 ASEAN+6 형태의 경제통합방식보다는 ASEAN과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ASEAN+3 방식으로의 경제통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TPP를 앞세운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 정부는 ASEAN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RCEP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였고 동아시아 역내의 통상협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가 FTA 협상동향

이러한 주요국들을 둘러싼 정치 ·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는 이전에는 추진된 선례가 없었던 Mega-FTA가 발현되는 계기가 되었고, TPP가 지난 2015년 10월4일 타결되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 총 12개국이 참여한 TPP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부터 베트남, 페루 등 신흥개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정도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면서 타결 가능성과 협상 수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협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합의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각국의 비준과정을 거쳐 발효에 들어갈 예정인데, 동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이 목표했던 바와 같이 명실 공히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가 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와 미국간의 FTA인 TTIP는 2013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협상이 완료되었다. 당초 201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신속한 협상타결 의지를 보였으나,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인 2017년 1월까지도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의 또 다른 Mega FTA인 EU · 일본 FTA는 2012년 11월 EU 이사회가 협상을 승인하면서 추진되어, 2013년 4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5년 9월까지 총 12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동 협상에서 EU는 일본의 관세보다는 일본시장 특유의 시장구조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여부를 FTA 협상의 유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2015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협상 서명 후 비준까지 약 1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17년 정도에 협정이 발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추진되는 RCEP은 2012년 11월 개시선언을 하면서 2015년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2013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까지 총 10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일차 목표로 삼았던 2015년 타결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발전 스펙트럼과 농업강

국에서 제조업 강국까지 상이한 산업구조,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은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협상은 목표시한을 넘기고 있으나 참여국들이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TPP 타결에 자극 받은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등은 향후 동 협상의 타결 전망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메가 FTA 시대에 대한 대응방향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FTA는 우리나라 통상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었고, 현재 총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2015년 타결된 한-중 FTA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5대 교역대상국/지역 중,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타결된 FTA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0%에 달한다. FTA 후발참여국으로 출발하여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동아시아 FTA 허브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Mega-FTA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EU 간에 협의되고 있는 TTIP와 EU · 일본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발효된 한-미 FTA와 한-EU FTA로 미국이나 EU 시장에 대한 수출 감소는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특혜관세에 따른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미국과 EU 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 5대 교역대상/국가 중에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시장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타결된 FTA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일본의 비농산품 MFN 관세가 1.2%로 미국(2.0%)이나 EU(2.2%)보다도 낮고 선진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에 다자간에 진행되는 Mega-FTA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 축(linchpin)의 역할'을 한다는 통상전략 하에 지역통합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나 TPP 불참은 이러한 우리나라 통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물론 TPP 참여 12개국 중, 이미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TPP로 파급된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제생산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낙오된다는 것은 향후 커다란 불이익이 되어 다가올 수 있으며, 역내 통합과정에서 일본에 'linchpin'의 역할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TPP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TPP를 단순한 또 하나의 FTA가 아닌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이며 경제통합의 과정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RCEP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통상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GDP 대비 수출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1~12년 기간 중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53.0%에 달해 민간소비(24.6%), 정부소비 13.4%), 투자(9.0%)의 성장기여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과는 달리 수출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도는 1995년 76.3%에서 2010년에는 59.6%로 19.7% 포인트나 하락하였고, 수출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8.3명을 기록하면서 2000년에 비해 절반 이상 하락하였다. FTA가 우리나라 수출의 양적 팽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으나 질적인 측면까지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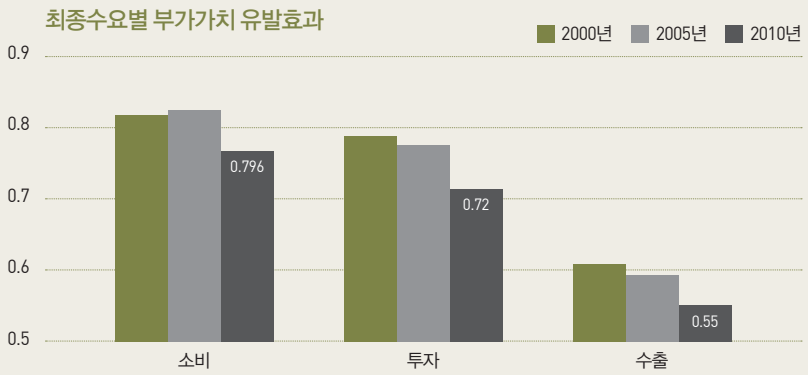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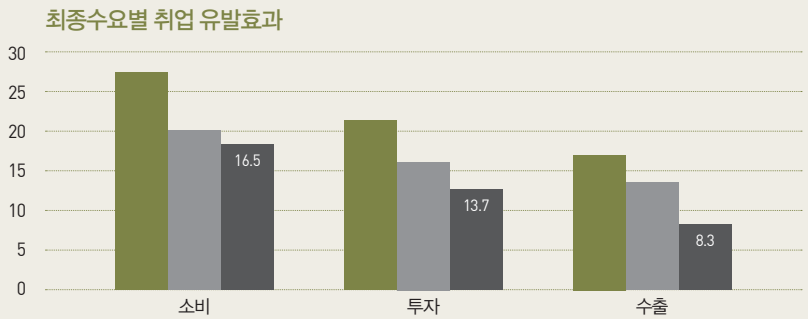

자료: 이시욱 (2014), KDI

Mega-FTA의 추진과 함께 국제통상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간 자본이동의 확대와 국제생산분화의 심화, 국제소비시장에서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의 격화 등은 향후 통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고려하면서 단순히 무역의 양적인 팽창이 우선되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상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Mega-FTA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메가 FTA 부상과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

김지선 수석연구원 / 포스코경영연구원

지난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다. TPP가 발효되면 세계 인구의 약 11%, GDP의 약 37%, 교역의 약 27%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한다.

다자간통상체제를 주도해 온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최근 들어 주요국을 아우르는 메가 FTA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아태지역 12개국의 TPP를 비롯,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등 다수의 메가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질서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의 축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 하에서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 통합 논의가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TPP 외에 중국 주도로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원 21개국을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에 대한 사전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메가 FTA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주요국들을 포함하고 있어 타결 시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의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일명 도하라운드) 협상이 지난 2001년 개시 이후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 FTA의 부상은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진행 중인 주요 메가 FTA 현황〉

구분	TPP	RCEP	한중일 FTA	FTAAP
추진배경	아태지역 경제통합 위한 플랫폼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위상 제고	안정적 정치경제 협력 체제 구축	APEC 국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참가국	12개국: 미국,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캐나다, 일본, 페루,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TPP 참여 고려 중	16개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10개국)	3개국: 한국, 중국, 일본	21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타이페이, 미국, 베트남
경제적 위상 (對세계, '13)	GDP 37% 인구 11% 수출입 27%	GDP 28% 인구 48% 수출입 31%	GDP 20% 인구 22% 수출입 20%	GDP 56% 인구 39% 수출입 49%
협상전망	'15.10월 초 타결 선언	2013년 5월 이후 10차례 협상 진행 ('15.10월 기준)	2012년 이후 각 8차례 수석대표 / 실무협상 진행	공동 연구 중
(예상) 개방수준	高	中 또는 低	中 또는 低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데이터베이스 등 정리

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

지난 10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TPP 12개국 통상장관회의('15.9.30~10.5)에서 마지막 쟁점사항이었던 자동차, 지재권, 유제품 분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서 TPP 협상 타결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지난 11월 초 공개된 TPP 협정문에 따르면 관세의 경우 품목 수 기준 전체 약 95~100%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공산품의 경우 회원국 12개국 중 호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참가국에서 최장 30년에 걸쳐 100% 품목에서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복수국간 FTA의 경우 국가 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양자간 FTA 대비 시장개방수준이 낮은 편인데, TPP의 경우 상품 분야를 비롯한 포괄적인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이끌어내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TPP는 전통적으로 FTA에서 다루었던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의 부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역할 등 차세대 이슈를 망라하며 '21세기형 FTA'를 표방하고 있다.

〈TPP 국가별 양허 현황(품목 수 기준)〉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전체	100%	95%	99%	100%	99%	100%
공산품	100%	100%	100%	99.8%	99.6%	100%

구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전체	100%	100%	99%	100%	100%	100%
공산품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5.11)

TPP에서 주목할 부분은 TPP 관세 혜택 여부를 판가름할 원산지 기준으로 역내 생산 혹은 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누적"기준이란 체약국이 원산지인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판정을 받은 재료에 대해서도 그 재료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나 공정을

최종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원산지 기준 도입으로 TPP 역내 국가 간 원부자재 공급과 투자가 촉진되어 역내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FTA 우선 타결 등을 이유로 TPP 원년 멤버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후 개별 참여국과 예비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로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국회 비준 절차 진행 중) TPP 미참여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FTA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누려온 관세 혜택 등의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다수 품목에서 수출경합도가 높은 편으로 일본의 TPP 가입으로 일본산 제품 가격경쟁력의 제고와 이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TPP 누적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기존에 한국에서 공급받던 소재와 부품이 역내 국가 조달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TPP 참가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미국 등 TPP 참여국과의 정치 · 외교적 관계, 對 TPP 교역규모(전체 교역의 약 34%, 2014년 기준) 등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TPP 참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참여할 경우 우리 측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협정문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더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TPP 가입을 염두에 두었다면 협상에 일찍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실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는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TPP는 세계 GDP의 36%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거대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TPP 협상 타결 직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TPP를 통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사한 바 있는데, 아태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TPP 참여 여부에 따른 우리나라 기대영향〉

구분	기대영향	
	긍정적	부정적
TPP 참여시	- 일본, 멕시코 등 FTA 미체결국과의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확대 및 교역 환경 개선 - 시장개방수준이 낮았던 기체결 FTA 효과 개선 - 역내 공급망 강화로 수출 및 생산 확대 - 누적원산지 기준 적용으로 TPP 미가입 국가 수출 물량 참가국 전환 효과 및 원산지기준 충족 용이 - 역내 투자 및 현지 생산환경 개선	- 국내 시장개방으로 부품, 자동차 등 일본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 우려 - 농수산물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에서의 수입 증가 우려 - TPP와 기존 FTA 중 유리한 FTA 활용이 가능하나 FTA 간 비교 등 부담 존재
TPP 불참시	- 국내 시장 추가 개방 부담 無	- TPP 참여국 대비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TPP 내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중간재 수입선을 한국에서 일본 등 다른 TPP 참여국으로 전환할 가능성 존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POSRI 등

RCEP, 아시아 지역의 세계 경제 위상 제고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SEAN 및 이들과 FTA를 체결한 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통한 통합 경제체제 구축을 모색 중에 있다. 2013년 5월 이후 현재(2015년 10월 기준)까지 총 10차례의 RCEP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RCEP은 상품,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국가별 예외 인정,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간 FTA나 TPP 대비 시장개방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RCEP 협상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한 바, RCEP 체결에 따른 추가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RCEP을 통해 역내 안정적 교역과 투자 기반 강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된 원산지규정 적용이 합의될 경우 기존에 다른 참가국들과 체결한 FTA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협정문 내 각 챕터별 포함해야 할 요소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동일 품목에 대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의 통일,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수준 등에서 선·개도국 간 의견 차이가 있어 현재까지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RCEP 16개국 정상들이 'RCEP 정상공동선언문'을 채택, RCEP 협상을 201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RCEP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 협상개요〉

구분	주요내용
개요	- '12.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RCEP 협상 개시 선언. '13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현재('15.10월 기준)까지 10차례 협상 완료
참가국	-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국
협상동향	- **[상품]** 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시장자유화 협상의 기반이 되는 기본지침 논의. 현재 1차 양허안의 수준 합의 -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 및 협정문 포함 요소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 진행 - **[규범/협력]** 5개 작업반(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및 4개 소작업반(원산지, 통관, SPS*, STRACAP**) 작업반 설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STRACAP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규격,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체계
주요이슈	-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의 정합성 유지 및 연계 - 동일한 품목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기준 통일 문제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분석내용 (2012년)** - **[실질 GDP]** 발효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8~0.68%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 - **[후생]** 발효 시 우리나라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POSRI 등

한-중-일 FTA, 안정적 정치 · 경제 협력체제 구축

한-중-일 3국은 안정적 경제, 정치적 협력 관계의 제도적 토대는 물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2012년 3국 간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 후 현재(2015년 10월 기준)까지 각 8차례의 수석대표 협상과 실무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한-중-일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협정 대상 및 범위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3국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정치 · 경제에서의 위상,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는 물론 GDP와 후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일 FTA 타결 시 중장기(10년)적으로 실질 GDP는 최대 약 1.5%, 후생은 약 163.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11월 1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한-중-일 3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 3국을 포함한 RCEP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협상 타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메가 FTA 부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이러한 메가 FTA 확대는 우리나라 통상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발표, 기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TPP와 RCEP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논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통상정책 전략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TPP 타결을 기점으로 다수의 메가 FTA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TPP의 경우, 현재 정부는 추후 가입을 염두에 두고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연 'TPP 전략포럼' 발족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일본, 멕시코 등 FTA 미체결국과의 FTA 체결 효과, 기체결 FTA의 업그레이드, 역내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기는 하나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도 상존한다.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된 국가들이더라도 TPP 개방수준이 기존 FTA 보다 높을 경우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한데 농수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의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우위에 있는 기계, 부품, 자동차 품목들의 국내 수입 증가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PP 후발 참여 시 가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여건들과 우리나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와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논의를 보다 강화하고 농축수산업 등 민감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메가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전략방향 수립이 중요하다.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 뿐 만 아니라 TPP, 그리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 한-중-일 FTA, FTAAP 등 메가 FTA 간 역학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협상전략은 물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메가 FTA 체결로 역내 분업구조의 개편과 공급망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들은 이들 FTA 체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누적 원산지기준 적용 등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현지 생산체제에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예를 들면 TPP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혹은 해외 제조업체

들의 경우 TPP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TPP 참여국에서의 마케팅 기반 사전 확보 노력과 역내 투자 및 생산거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FTA 체결에 따라 원산지 증명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철저한 원산지 증명 관리와 관련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20년 간 세계통상질서를 관장해 온 WTO의 다자간무역협상인 DDA가 2001년 협상 시작 이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다자간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12월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앞으로의 DDA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인데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 FTA가 WTO 다자간무역체제에 보완적 역할을 할지 혹은 부담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메가 FTA가 한동안 세계 통상질서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메가 FTA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통합 움직임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역량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TPP 협정문 설명자료 ' 2015.1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Trade Brief No. 54, 2015.11.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 및 전망", Trade Brief No. 81, 2014.12.30
김지선, '무역수지 2억~3억 달러 개선 기대, 파급영향 커 전략 균형 필요', 포스코경영연구원 친디아플러스 2015년 10월호
김지선, 유승록 '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 '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2015.10
김지선, 유승록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2015.2
KOTRA,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5-003, 2015.01.02
산업통상자원부 외,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포럼 발표자료), 2013.08.30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2014
Jeffrey J. Schott, 'Korea and the TPP: The Inevitable Partnership',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5.8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World Bank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데이터베이스 (http://wits.worldbank.org/)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웹사이트 (www.ustr.gov)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ww.piie.com)

③ 전문가 기고

메가 FTA 동향과 전망

김영귀 팀장, **강민지** 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10월 5일,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 경제규모의 37.1%와 교역의 25.8%를 차지하는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TPP와 같이 다수의 국가 또는 거대 경제권간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메가 FTA라 부른다. 최근 타결된 TPP를 포함하여 미국과 EU간 협상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과 아세안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 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이 대표적인 메가 FTA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메가 FTA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메가 FTA의 등장배경

메가 FTA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진행 중인 다자협상의 지연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좀처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다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교역국들 간의 양자 FTA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을 채택하다 보니 이를 이해하고 인증 및 검증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나타나면서 두서너 개 국가끼리 하던 종전의 FTA가 아니라 적어도 십 수개 이상의 국가가 모여서 거대 FTA를 형성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통상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2001년 시작된 DDA협상 의제에서는 빠져 있고 양자 FTA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무역이슈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신통상규범 제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가 모여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메가 FTA의 등장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운송 · 통신 수단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GVC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상(Conception)단계에서 생산(Production),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가치창출이 여러 국가를 거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무역장벽은 중간재 조달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 걸쳐 있는 가치사슬 구조는 양자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충분한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FTA 논의가 필요해졌다. 더불어, GVC의 발달로 교역이나 투자장벽의 완화뿐 아니라 가치사슬에 참여 중인 국가들의 투명성 제고도 중요한 무역의제가 되었다.

메가 FTA의 동향

사실 아직까지 메가 FTA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TPP, RCEP 및 아시아 · 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메가 FTA로 분류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며, 관점에 따라서는 TTIP, 한-중-일 FTA,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표 1〉 주요 메가 FTA의 참여국과 경제현황

Mega FTA	국토면적 (천 ㎢)	인구 (백만명)	명목 GDP (십억달러)	대세계교역 (십억달러)
TPP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12개국)	31,163.2	799.0 〈11.4〉	27,718.9 〈37.1〉	9,489.4 〈25.8〉
RCEP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	25,094.8	3,421.4 〈48.7〉	21,646.9 〈29.0〉	10,671.9 〈29.0〉
FTAAP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21개국)	60,136.3	2,805.3 〈39.9〉	42,897.4 〈57.4〉	17,531.3 〈47.6〉
TTIP EU 28개국, 미국 (29개국)	13,384.0	822.1 〈11.7〉	34,280.2 〈45.8〉	15,479.3 〈42.1〉
한중일 FTA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9,850.2	1,538.3 〈21.9〉	15,672.1 〈21.0〉	6,779.6 〈18.4〉
E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5개국)	19,499.8	179.3 〈2.6〉	2,418.0 〈3.2〉	1,057.2 〈2.9〉
PA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개국)	5,128.0	218.7 〈3.1〉	2,168.3 〈2.9〉	1,193.0 〈3.2〉

주1: 〈 〉 안은 대세계 비중(%) 자료: IMF, UNCTAD (2013년 기준), KITA에서 재인용

TPP는 2010년 1차 협상 개시 이후 약 5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9월말 애틀랜타 각료회의에서 연장을 거듭한 끝에 2015년 10월 5일에 타결되었다. TPP는 원서명국 모두가 국내 법적 절차를 마친 뒤 60일이 지나면 발효될 예정이다. 만약 2년이 지나도록 협정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에는 TPP 참여국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을 완료한 때부터 60일 후에 비준 완료 국가들에 대해서만 발효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략 2017년 전후로 TP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세안과 아태지역 6개국(한-중-일-인-호-뉴)이 협상하고 있는 RCEP은 지난 201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 선언 후 지금까지 10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가 열렸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탄력을 받아 2016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정상선언문에 담겼으나, 개도국에 대한 예외와 인도의 보호주의로 인해 TPP 수준의 높은 시장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TAAP는 지난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FTAAP 논의를 통합한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탔고, 2015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이행을 위한 공동연구를 내년 말에 열릴 정상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미국과 EU 간 FTA인 TTIP는 TPP 종료 이후 그 진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EEA 및 PA도 확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메가 FTA의 특징

메가 FTA는 공통적으로 참여국들의 기존 FTA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양자간 · 다자간의 복잡한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타결되면 경제규모 및 교역량에 있어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양자 FTA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역내 공급사슬구조가 강화되면서 메가 FTA에 속한 국가들은 원산지 공급망에 포함되어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수출증대 등의 이익을 누릴 것이나 이에 속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무역감소, 투자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의 특성상 누적원산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기준은 그 형태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누적(Bilateral Accumulation)은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부품이나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해당 부품이나 재료를 자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는 양자누적을 채택하고 있다.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은 서로 다른 3국(FTA 대상국이 아닌 국가도 포함) 이상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누적기준이다. 예를 들어, 한-캐나다 FTA에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된 미국산 재료에 대해서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 및 공정 모두를 누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사누적이 국경 통과 시 제품의 원산지가 확정되어 있는데 반해, 완전누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완전누적은 Chase-up 방식으로 생산 단계 별로 포함된 재료와 수행공정의 역내산 비율이 합쳐져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는바 역내산 원산지판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TPP는 완전누적을 도입하여 역내 공급망(Regional Supply Chain)을 강화하고 역내 분업을 활성화하여 역내국의 무역 및 투자 촉진을 꾀하고 있다.

다른 특징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메가 FTA는 기존 WTO 다자 간 체제하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새로운 무역 이슈를 다룬다는 점이다. 최근에 협정문이 공개된 TPP의 경우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시장 접근과 관련된 기존 이슈뿐 아니라, 차세대 신규 무역이슈로 등장한 전자상거래, ICT와 같은

디지털 경제, 녹색기술 등과 관련된 첨단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자 간 체제 하에서는 각국의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환경, 노동 등의 무역이슈를 포함하는 등 신통상규범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표 2〉 TPP 포함 내용

제 1장 최초조항과 일반 정의	제16장 경쟁정책
제 2장 상품 무역	제17장 국영기업(SOE)과 지정독점
제 3장 섬유 및 의류	제18장 지식재산권
제 4장 원산지규정	제19장 노동
제 5장 관세 행정과 무역원활화	제20장 환경
제 6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제21장 협력 및 역량 강화
제 7장 기술무역장벽(TBT)	제22장 경쟁 및 사업 촉진
제 8장 무역구제	제23장 개발
제 9장 투자	제24장 중소기업
제10장 국경간 서비스	제25장 규제 정합성
제11장 금융서비스	제26장 투명성과 반부패
제12장 사업인력의 일시입국	제27장 행정 및 제도 관련 규정
제13장 통신	제28장 분쟁해결
제14장 전자상거래	제29장 예외
제15장 정부조달	제30장 최종조항

TTIP에서도 국제경제법의 규범설정력(Rule-Setting Power)을 가진 미국과 EU가 합의를 거쳐 신통상규범을 마련한다면 향후 세계 통상질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RCEP은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에 대한 개도국 배려원칙에 따라 TPP보다 신통상규범과 관련된 성과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과 경제개발을 연계하는 다자적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 FTA의 전망

한쪽에서 메가 FTA 논의가 본격화되면 역외국 입장에서는 무역전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단적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메가 FTA를 탄생시키게 된다.

이렇게 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해 메가 FTA는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TPP가 타결되면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되기 위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가치사슬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도미노처럼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여러 메가 FTA의 통합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단일한 세계무역질서를 단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메가 FTA의 확산은 WTO 체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메가 FTA의 체결로 혜택을 입고 있는 국가는 다자적인 무역자유화 협상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며, 이미 익숙해진 지역내 통상규범이 다자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해 수정되어야 할 경우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WTO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타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메가 FTA와 WTO 협상 간의 관계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메가 FTA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까지 양자 FTA 위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한국도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가 FTA에 대비한 통상정책 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국과 메가 FTA

그 동안 한국은 주로 양자 FTA를 통해 통상환경을 개선해 왔으나, 대외개방도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를 제시하는 메가 FTA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우선 최근 타결된 TPP의 경우, 그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따져 보고 국내 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TPP 참여국 중에서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TPP의 가입은 TPP 12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도 양자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기존 FTA의 이행에 대한 검토 작업 및 비시장개방 품목에 대한 FTA 업그레이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TPP에 새로이 추가된 수산보조금, 국영기업(SOE), 환율 등의 규정과의 합치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TPP 참여 12개국

RCEP의 경우 한국 정부는 상품, 서비스 등 시장접근 협상 및 분과별 협상을 가속화해 2016년에는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특히 RCEP의 경우 중국, 일본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틀을 잘 구축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메가 FTA의 활용

우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메가 FTA를 활용할 수 있다. TPP는 무역협정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규정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이 FTA 이익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완전누적을 통해 가치사슬에 편입됨으로써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생산흐름이 다 파악되는 Chase-up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므로 원산지 전산화 등을 통한 원산지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메가 FTA를 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발달하면서 메가 FTA의 파급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생산단계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메가 FTA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혁신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새로운 통상규범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중소기업들이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와 품목분류

융합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융합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오수교 관세사 KPMG 세정관세법인 고문

최근 국가나 기업의 신성장동력은 제품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상품가치와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융합(融合)이란 사전적 정의로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융합제품은 동종제품을 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종제품을 합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 컨버전스(convergence) 또는 퓨전(fusion)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융합제품은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융합제품의 품목분류 방법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1. 서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을 합하여 하나의 물품으로 된 융합제품이 관세율표에서 일견(一見) 둘 이상의 품목번호(Heading No로 이하 '호'라 한다)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원칙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이 통칙은 세 가지 분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특별한 원칙을 정한 경우란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와 시계가 결합된 물품' 및 '헤드폰과 마이크로폰이 결합한 물품'이 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해당 물품은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및 헤드폰으로 분류하도록 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2〉의 시계 · 온도계와 지구의가 결합된 물품 및 시계와 나침반이 결합된 물품은 특별한 원칙이 없으므로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통칙 제3호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사물을 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그림 3〉의 사례를 통하여 이 통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중앙의 그림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환경에 따라 매력적인 젊은 여성 또는 나이든 노파로 달리 볼 수 있다.①
그런데 좌측 그림에서 적색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을 귀와 턱이라고 간주할 때 매력적인 여성으로 다가온다. 반면에 반대로 우측 그림에서 적색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을 눈과 코라고 하면 이때는 나이든 노파가 된다.
즉,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거나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도 어떤 원칙과 조건을 부여하면 합의에 도달하거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융합제품의 분류규정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

1.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와 시계	2. 헤드폰과 마이크로폰

① 이 그림을 소개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박사는 그 책에서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림 2〉 융복합물품으로 통칙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1. 시계 · 온도계와 지구의	2. 시계와 나침반

〈그림 3〉 일견 하나의 사물이 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매력적인 젊은 여성	아가씨와 할머니	나이든 노파

02. 통칙 제3호의 규정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칙 제3호는 하나의 물품이 일견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을 경우에 일정한 원칙과 조건을 정하여 하나의 호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품목분류의 대원칙은 이와 같은 융합제품이라도 실질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하나의 호에 일괄 분류함으로서 무역의 원활화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통칙 제3호는 가목, 나목, 다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전문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 통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통칙 제1호[②]를 우선해서 적용하기 때문이다.

〈표 1〉 통칙 제3호 전문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❶ 통칙 제3호가목

본 통칙의 핵심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the most specific description)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general description)된 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할 수가 있다.

② 통칙 제1호는 품목분류의 최우선 규정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의 그림1에 해당하는 두 제품은 호의 용어에 그렇게 분류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가. 품명은 종류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4〉와 같이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로 분류되므로 손으로 작동하는 전동공구로 보아 제8467호로 분류하거나 또는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진공청소기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림 4〉 품명이 종류보다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제품

대상제품	종류	품명
	• 손으로 작동하는 전동공구(제8467호) • 가정용 전기기기(제8509호)	• 전기면도기(제8510호)
	• 가정용 전기기기(제8509호)	• 진공청소기(제8508호)

나.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된 것이 구체적인 표현이다.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보다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그 품명은 그 물품을 불완전하게 표시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5〉와 같이 자동차용 터프트한 양탄자(제5703호)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제8708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는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은 항공기용 부분품(제8803호)보다 안전유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제7007호로 분류한다.

〈그림 5〉 완전하거나 상세한 표현에 해당하는 제품

대상제품	일반적 표현	완전한 표현, 명백한 표현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제8708호)	터프트한 양탄자(제5703호)

❷ 통칙 제3호나목

이 통칙은 통칙 제3호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이들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지닌 재료나 물질 또는 구성요소가 속한 호로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통칙 제3호에서 나목이 가장 중요하고 품목분류의 핵심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가. 적용대상물품

이 통칙을 적용하는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1) 혼합물

혼합물(mixtures)이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때 같은 상태(기체 · 액체 · 고체)끼리의 혼합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상태(예 : 고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기체 등)의 혼합일 수도 있다.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다른 재료(materials)의 복합물(composite goods)은 표면과 표면이 붙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표면에 도포되었거나 안에 삽입되었거나 일부를 박아 넣은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한다.

참고적으로 이 표의 분류원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내부(안)에 특정 재료를 두고 바깥층이나 겉면을 다른 재료로 완전히 싸게 되면 바깥층이나 겉면을 이루는 재료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강하다.

3) 서로 다른 구성요소(components)로 구성된 복합물

이러한 복합물(composite goods)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상호 적응되고 상호 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이 조항의 복합물은 이 글의 주제인 '융합제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제품을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의 기계류와 제85류의 전기기기 등)와 제90류(광학기기 · 사진용기기 · 영화용기기 · 측정기기 · 의료용기기 등)에서는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기계'라고도 하며, 이들 부나 류에서 이러한 제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류 주 제3호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③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소비자가 분리된 카메라만을 구매하지 않으며, 그런 상태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음 〈그림 6〉의 '커피메이커(커피 끓이는 기기)'와 '오븐'은 모두 제8516호(가정용 전열기기)로 분류한다. 둘 이상의 구성요소로 된 두 물품 모두가 본질적인 특성(주된 기능)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는 것은 같지만, 통칙 적용과 관련하여 커피메이커는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한 것이고, 오븐은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관련 호의 용어나 주의 규정에 복합제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인데 커피메이커는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븐은 별도로 정한 호의 용어나 주의 규정은 없다. 참고적으로 오븐을 제16부 주 제3호만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가정용 가스레인지가 제16부가 아닌 제15부(제7321호)에 속하기 때문이다.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예: 응축기와 증발기로 구성된 공기조절기는 제8415호로 분류한다)에 분류되면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즉, 공기조절기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팬이나 송풍기(제8414호)에 공기제습장치(제8479호) 또는 냉각수코일이나 냉장기계를 구성하는 증발기(제8418호)로 구성된 복합기계이나 이는 공기조절기로 제8415호로 분류토록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다.

〈그림 6〉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한 복합물(커피메이커와 오븐)

※ 커피메이커의 규격은 가정용

※ 오븐의 규격은 가정용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

이 물품은 이 글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 본질적인 특성의 결정 방법

이 통칙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본질적 특성을 간단히 정의할 논제는 아니지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요소가 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된 경우에 어떤 재료나 구성요소가 그 제품을 대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제16부 주 제3호(제90류 주 제3호도 포함한다)에 따라 어느 기계에 주된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관세율표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이 통칙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다.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한 사례

국제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융합된 제품으로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제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우선 갤럭시기어(또는 스마트워치)는 무선통신기기(제8517호)와 시계(제9102호) 중에서 무선통신기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 물품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융합되었지만 이들은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음으로 드론의 경우에는 헬리콥터(제8802호)와 디지털카메라(제8525호) 중에서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525호로 분류하였는데, 비행보다는 촬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7〉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분류한 사례

갤럭시기어 / 스마트워치	드론

같은 위원회에서 융합제품으로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하여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우선 갤럭시탭은 주된 기능이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또는 셀룰러폰(제8517호)로 볼 것인지에 관한 사항으로 주된 기능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8471호로 분류하였다. 다음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수신기기(제8528호)보다는 셀룰러폰이 주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17호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이온정수기는 정수기와 이온화장치(정수된 물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하는 기기로 제8543호로 분류한다) 중에서 정수기에 주된 기능이 있으므로 제8421호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런 융합제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규정이 형식상 구분되지만, 그 분류하는 방법이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8〉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따라 분류한 사례

갤럭시탭(태블릿PC)	스마트폰	이온정수기

참고로 이 위원회의 운영 및 품목분류의 결정 방법은 각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토론을 거친 후에 다수결로 결정한다. 드물게 전원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견이 나눠진다.

사회현상의 다른 분야의 의사결정과정도 그러하지만, 품목분류도 본질적인 특성이나 주된 기능을 결정할 때에 의사결정 주체의 입장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림 9〉의 비데①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은 신체의 특수한 부위를 세척하기 위하여 물을 분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제8424호로 분류하지만, 유럽은 '물을 데워주고 더운 바람과 시트를 가열시키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보아 제8516호로 분류한다.

〈그림 9〉의 먼지제거기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스와 손잡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926호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체 가격 중에서 이들이 100분의 70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만든 셀프접착테이프(제481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왜냐하면 옷에 묻어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실질적인 기능은 셀프접착테이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9〉 본질적인 특성이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따라 분류한 사례

먼지제거기	비데①	비데②[④]

결론적으로 기계나 전기기기와 같은 융합제품은 본질적인 특성이나 주된 기능을 결정할 때에 특히 구성요소의 성질이나 역할 또는 가격을 중시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❸ 통칙 제3호다목

이 통칙은 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때에 적용한다. 이 통칙을 적용할 때 동일(동등)하게 분류가능한 모든 호를 찾아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이 원칙은 당연히 제16부나 제90류에 속한 복합기계나 다기능기계에도 적용한다.

이 통칙은 품목분류의 과학적이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품목분류의 정책(약속)이라고 여겨진다.[⑤]

④ 관세율표에서 비데(bidet)란 플라스틱(제3922호)이나 도자(제6910호) 또는 스테인리스강(제7324호) 등으로 만든 물품을 말하며, 이들 물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에 다른 기능을 융합시킬 때에 이를 융합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향수와 같은 화장품을 분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이는 퓨전제품의 형식이 될 것이다.

⑤ 참고적으로 1976년 이전에 사용된 BTN(브뤼셀 품목분류표) 통칙 제3호다목은 '세율이 가장 높은 호로 분류한다.'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이라도 각각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어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1976년 CCCN(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표)부터 현행 규정과 같이 통칙 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다면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토록 하였다. 통칙 제3호다목은 다른 통칙 규정과 달리 논리적 근거를 가진 것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

우측 〈그림10〉의 냉온수기는 우리나라의 분류사례로 냉수기(제8418호)와 온수기 중에서 어느 물품도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온수기(제8516호)로 분류하였다. 이 물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냉수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할 것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역할이나 성질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림 10〉 냉온수기

03. 결론

융합제품의 품목분류 방법에 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적 쉽고 공감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다양한 유형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융합제품이 새롭게 개발되어 거래되는 실정에서 이러한 융합제품의 품목분류를 통칙 제3호나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이나 주된 기능을 조화롭게 결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또한 특정 국가의 품목분류 관행이나 무역환경에 따라 또는 납세의무자와 관세관청간에 얼마든지 다른 분류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품목분류의 결과로 관세율이나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은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융합제품은 수출국과 수입국 또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이견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이 품목분류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품목분류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FTA를 적용하기 위한 품목분류의 권한은 수입국에 있으므로 그 수입국의 품목분류의 관행이나 사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세청에서는 미국 · EU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가의 품목분류사례의 정보를 홈페이지(세계HS정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품목분류사례가 법적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융합된 완제품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계의 추세에 따라 모듈(module)화한 부분품의 품목분류도 다툼이 많다. 모듈(module)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분조립품으로 여러 가지 부분품이 하나로 집약된 것으로 교환 가능한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듈화한 부분품도 앞에서 언급한 통칙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모듈화한 부분품이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면 특정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에도 분류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이 글에서 제시한 의견은 관세청이나 국제원산지정보원 또는 필자소속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FTA 활용 성공사례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01. 동반성장 모델
02.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모델
03. FTA를 활용한 영세기업 성장 모델
04.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기업 협력형 모델
05. 체약상대국 FTA를 활용한 생산 · 물류거점 설립 모델
06. 누적기준 활용 모델
07. 특정공정 수행기준 모델
08. 완전생산기준 입증을 통한 FTA 수출 모델

01. 동반성장 모델

- FTA 적극 활용하니, 동반성장 따라 오네~
-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개요

- 수출기업(대기업)의 FTA 특혜 활용을 위해서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중소기업)의 협조*가 필수적, 이를 위해 대 ·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모델

  * 공급(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제공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수출기업(대기업)의 원부자재 공급업체(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제공 등 FTA 활용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FTA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대 · 중소기업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반성장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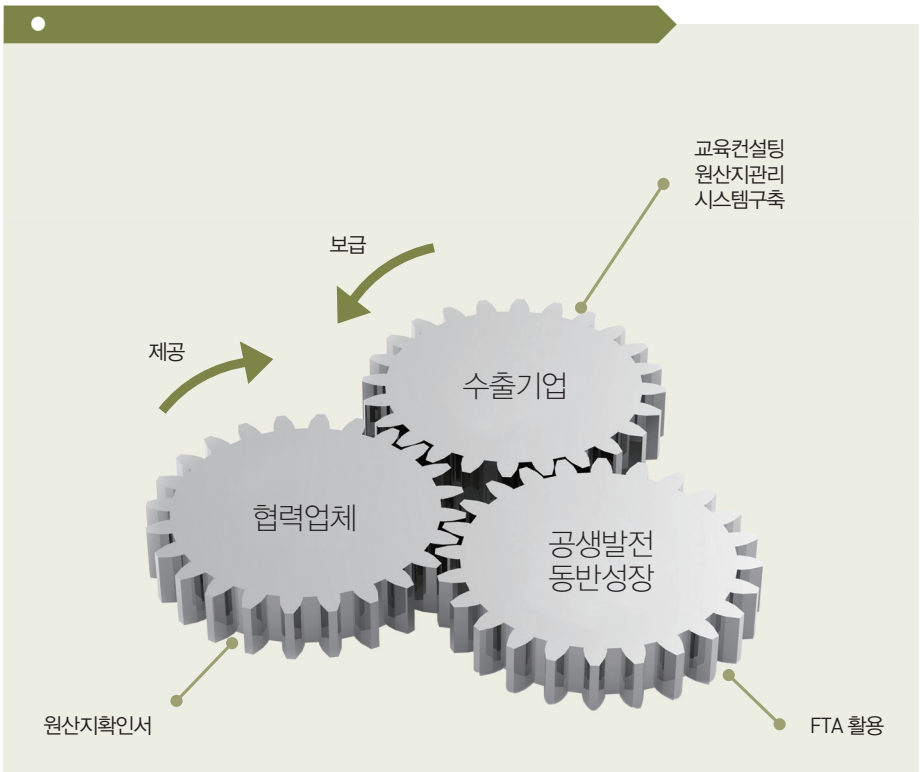

활용효과

- FTA 활용효과 거양을 통한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공생발전 가능
- FTA 활용능력 개선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가능성 증대
- 국내 거래단계에서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사후검증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위험 예방 가능

FTA 적극 활용하니, 동반성장 따라 오네~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L사는 공작기계 완성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미국, 유럽 지역으로 2013년 약 3,870대를 판매하여 4,730억 원의 매출(미국 약 1,860대 2,050억 원, 유럽 약 2,010대 2,68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중심기업

- 제품소개 : 공작기계(HS Code : 8457.10, 8458.11 등)

❷ FTA 활용 전 상황

- FTA 발효 전 A사는 EU 수출 시 2.7%, 미국 수출 시 4.2%의 관세를 지불하여 가격 경쟁력 저하
  - 대당 평균 1억 원을 상회하는 제품가격으로 공작기계 1대당 EU는 약 270만 원, 미국은 약 420만 원의 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A사에게 있어 FTA 혜택은 원가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무기

❸ 장애요소

- A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원산지관리 부담
  - 원산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400여 개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다보니 협력사 입장에서 사후검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하여 업무진행에 차질이 발생

❹ 극복방법

- 실무자의 원산지관리 능력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내 원산지관리 전담인력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4명)

- 4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경영진 및 담당자에 FTA에 대한 홍보를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합교육(년 8~10회 실시, 누적 35회)을 실시하고 240여 개 주요 협력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지도 실시

❺ 활용효과

- 원산지 비율이 낮아 한국산 판정을 받기 어려운 기종의 주요 수입산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협력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
  - 주요부품 중 대만산 ATC(자동공구교환장치)는 2013년 국산화에 성공하여 협력사 D사의 경우 현재까지 17.4억 원의 매출 달성
  - 또한 중국산이던 주물품을 국내산으로 전환한 후 현재 6개 협력사에서 23.8억 원의 매출 발생

- 발효초 80% 이하이던 FTA 협정 적용 물품 수가 99% 수준으로 향상

● A사 수출제품 한-미 FTA 적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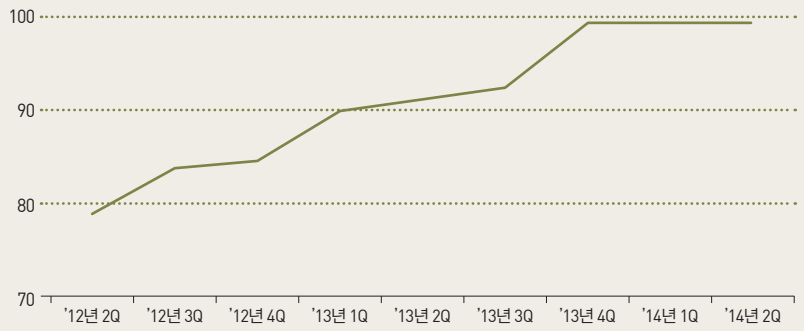

❻ 시사점

- FTA 활용을 위한 협력사 지원을 통해 FTA 활용 성공과 동시에 부품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협력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❶ 개요

- 한계점에 도달한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노력보다는 절감 폭이 상대적으로 큰 FTA 특혜세율의 수혜효과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창출 등 기업 외형성장 유도 모델

❷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상대적으로 절감이 어려운 재료비 등의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경영체제 전환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량 증대 → 생산시설 확충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 고용 및 생산시설 확대로 일자리 창출 모델

❸ 활용효과

-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해외시장 선점은 곧 주문량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생산라인 증설과 직원고용이라는 선순환효과 거양

- 원청기업의 주문량 파이(Pie) 확대는 곧 협력업체에 대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직결되어 원청기업과 동일한 고용효과 기대

02.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모델

- FTA로 세계를 낚은 1g의 작은 보물
- 강소기업, FTA로 세계를 한꺼번에 사로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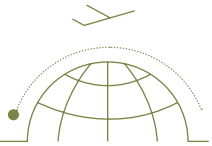

개요

- 강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高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으로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강소(强小)기업이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한국형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강소기업의 FTA 활용능력배양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모델

- FTA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CEO를 비롯한 내부직원의 FTA 인식확산, 원산지관리 전담팀 운영,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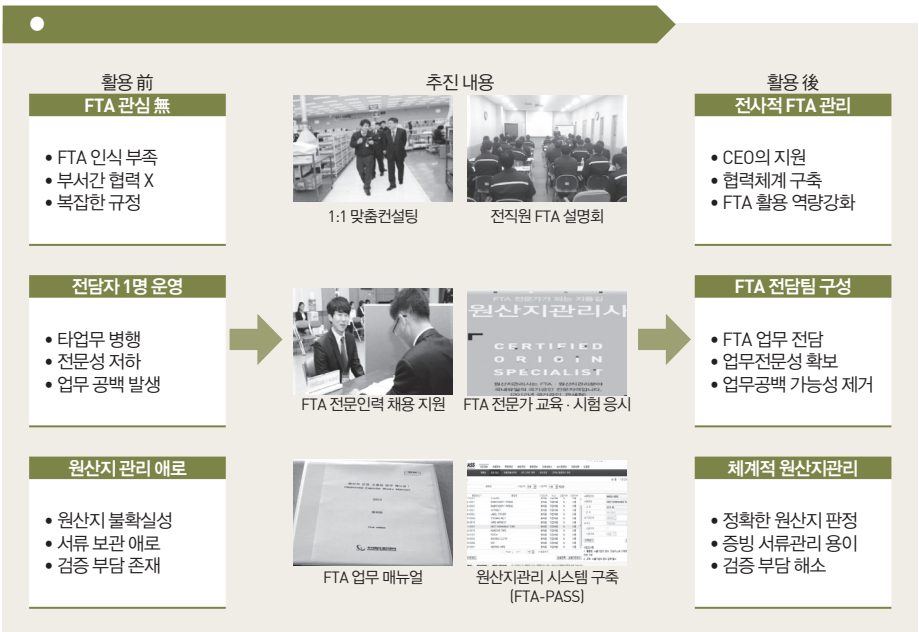

활용효과

- 강소기업의 세계적인 기술력에 FTA가 더해진다면 고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글로벌 톱 10 기업도 가능

FTA로 세계를 낚은 1g의 작은 보물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S사는 1979년 6월에 설립되어 전 세계 40여 개의 국가에 낚싯바늘(레저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고급 낚싯바늘 제조 전문 기업'

• 제품소개 : 낚시싯바늘(HS 제9507.20호)
  - 우리나라 낚싯바늘 제조업체 수는 총 23개 업체('13년 기준)이며, 종업원 수는 대부분 20인 이하의 영세업체임

❷ FTA 활용 전 상황

• 내수 침체로 국내 굴지의 낚시용품 생산업체인 a사가 도산하는 등 낚시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S사 역시 15억 원 정도의 부도를 맞고 회생이 불투명

❸ 장애요소

• FTA 활용지식의 부족, 협력업체들의 공감대 부족, 생산 공장 분산 및 원산지관리 전담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

❹ 극복방안

• 한-아세안 FTA 활용과 세계적 기술력 확보
  - [가격경쟁력 확보] 한-아세안 FTA 활용 시 1.5~15%의 수입국 관세인하 효과가 있어 아세안 시장을 발판으로 수출하기로 결정
  - [고품질의 제품생산]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 결과 발명특허 3건, 실용신안 12건 등 획득으로 일본과 대등한 세계적 수준의 낚싯바늘 생산 가능

•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재정비 및 세관 FTA 지원 등
  - [원산지관리 전담팀 구축] 사장님을 중심으로 원산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FTA 전담조직 재정비
  - [FTA 인식 제고] 세관 FTA 전문가를 초빙, 전직원 교육 및 협력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FTA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

- [세관의 FTA 지원] FTA 활용 실무에 있어 정확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 사전진단, 인증수출자 인증* 등을 진행하였고, 낚시업계를 대표하여 FTA 활용지원 CEO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FTA 활용기반을 마련"

  * 한-미, 한-EU, 한-아세안 FTA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 [박람회 참가] 또한,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낚시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만 개최하던 국제낚시박람회를 부산에 최초로 유치하여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참가업체에 FTA 활용정보 제공

❺ 활용효과

- 뛰어난 기술력과 FTA로 국내 5위 기업에서 세계 5위 기업으로 성장

- 한-EU 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유럽(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및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낚시박람회에 참가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 신규바이어 발굴('11년)로 약 89만불 신규계약

- 수출증가와 FTA C/O발급 100%로 회사 고속성장 견인
  - (한-EU FTA) 유럽은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며, 한-EU FTA가 발효('11.7월) 이후 수출 증가하여 전년대비 수출량이 150% 이상 증가
  - (한-미 FTA) 미국의 수출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12년에 수출 급증, '12년 말에는 전년대비 수출량이 350% 이상 증가

- FTA 활용률 100%
  - 한-아세안, 한-EU, 한-미 FTA 발효시기 이후 현재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율 100% 달성

- (생산시설 확충) 한-아세안 FTA 발효로 인한 수출량을 맞추기 위해 '06년에 제2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11년에는 한-EU 발효에 대비하여 제3공장을 증설하여 FTA 활용을 위해 2개 공장 증설
  - 3공장까지 증설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한-미 FTA 활용에 대비하기 위해 1공장 옆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구매하여 증설할 계획

- (고용창출) 늘어나는 수출량에 대비하여 '06년에 직원 15명, '11년에는 17명, 도합 32명 생산인력 증원, 낚시바늘 포장 인력 40명 증원(40명→ 80명)

❻ 시사점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FTA를 준비

- FTA 시대를 대비하여 내수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한 대표적 사례
  -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실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수준의 기술력이 담보되어야만 함

- 아울러 전 직원과 협력업체의 FTA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강소기업, FTA로 세계를 한꺼번에 사로 잡다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T사는 PET병, 페인트, 코팅제 등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PIA(석유화학제품)를 수출업체(세계1위 수출, 20만톤)

-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수십년간 축적된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 79개국에 2조1천억 원의 수출 달성
  * PX 국내 3위(75만 톤), PTA 세계 7위(200만 톤), PIA 세계 1위(20만 톤), PET 세계 7위(67만 톤)

• 제품소개 : PIA(Purified Isophthalic Acid, 고순도 이소프탈산, HS제2917.39호)
  - PET병 · 페인트(자동차 · 선박용 도료) · 접착제 · 코팅제 원료, 전세계에서 미국 · 일본 · 스페인 · 싱가포르 · 한국 등 7개국 7개사에서만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제품

❷ 장애요소

• 한-EU FTA 발효 초기에는 사내 직원들의 체계적인 FTA 지식 부족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FTA 활용 효과에 대한 관심 저조

• 유럽경기 불황으로 수출감소,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값싼 중국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날로 치열

❸ 극복방안

• FTA 활용을 위한 FIVE-STEP 전략

Step ① FTA 기업체질 개선	서울 세관, 구로세관 FTA 컨설팅 요청
Step ② 한-EU FTA 활용 자격 취득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11.5월)
Step ③ 해외 바이어 설득	C/O발급과 더불어 한-EU FTA 가격인하 효과를 해외 바이어에 설명
Step ④ FTA 교육 이수 의무화	사내 해외r영업팀 전체를 FTA 전담팀으로 구성, 부서 전직원 모두 FTA 교육 의무 이수화
Step ⑤ 원재료 수입비용 절감	기초원료 구매처를 중국에서 유럽, 미국으로 변경, 원재료 수입 관세 3% 절감(연 240억 원)

• 해외영업팀 · 구매 및 생산부서를 한데모아 전담팀으로 구성
  - FTA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의 충족여부를 입증하고자, 원재료부터 원산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생산공정과 BOM 작성, 마지막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모두에게 연관됨을 강조

• 관련부서 부서장부터 신참대리까지 모두 FTA교육이수 의무화
  -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사후 검증은 EU의 경우 연간 3,0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 FTA를 잘 알지 못하는 유럽측 바이어에게 FTA 활용 과정 설명

❹ 활용효과

• 한-EU FTA 활용효과(정량적)
  - 한-EU FTA 발효 전 9억 달러에서 발효 후 9억1천7백만 달러로 총 1천7백만 달러(약8.8%) 증가

• FTA 활용효과(정성적 성과)

- 철옹성 중국을 물리치고 EU시장 선점
- 그리스 재정 위기 등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출량 감소와 값싼 중국제품의 가격 공격에 매출확대가 어려워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EU FTA 덕분에 EU시장 진출 확대
-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였던 PET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수출 증가 기대

❺ 시사점

• 전직원 FTA 교육이수 의무화

- 한-EU, 한-미 FTA를 기업성장의 Key-factor로 인식하고 부서 사원들의 FTA인식 확대와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부서 전직원의 FTA 체계적인 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하여 FTA 활용역량 강화

• 수출만 활용인가 센스있게 원재료 수입에서도 FTA 더블활용

- 원가 절감을 위한 원재료 수입시 적극적으로 FTA 활용 기초원료인 MX(Mixed Xylene)의 구매처를 일본, 대만,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변경하여 한-미 FTA 활용 원재료 수입시 관세 3% 절감(연240억 원)으로 원가절감에 상당한 성공,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 있어 비교 우위 확보

• 드디어 더블경쟁력 확보!

- 값싼 중국제품과 유럽 시장 선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열세조건을 극복하고 FTA 활용은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어 EU, 미국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

03. FTA를 활용한 영세기업 성장 모델

- 영세기업도 한-미 FTA 활용할 수 있다!
- 영세 중소기업 제품, FTA로 북미시장을 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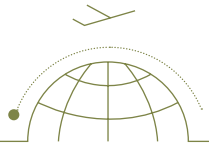

개요

-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대한 경험 및 원산지 전담인력 등이 부족하여 FTA 미활용 사례 발생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영세기업은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정보 부재로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반면, 제조방법, 원재료 등이 비교적 간단하여 작은 노력으로도 원산지판정 가능

- 정부의 영세기업의 FTA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기업의 관심으로, 산업하부구조에서부터 국가 전체적인 FTA 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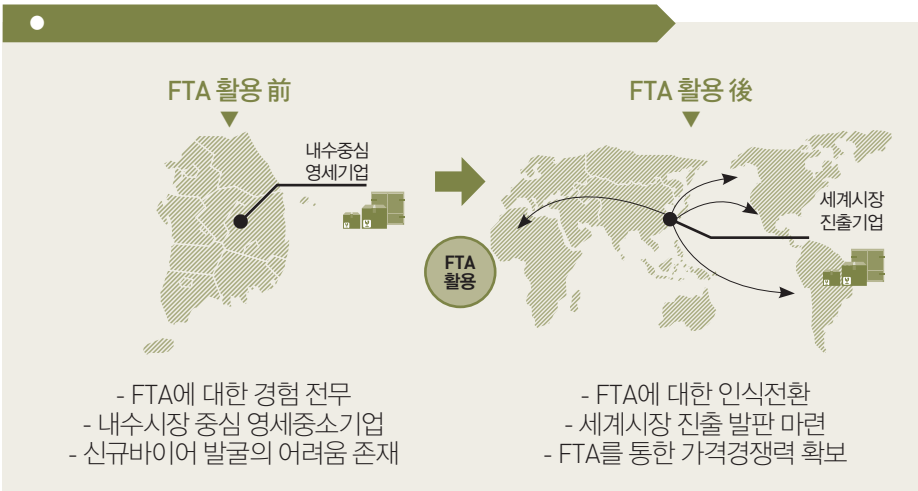

활용효과

- 영세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으로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인 FTA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다른 상위 기업들의 FTA 활용도 용이해짐

영세기업도 한-미 FTA 활용할 수 있다!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U사는 종업원 10여 명으로 비닐봉투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영세중소기업

(단위: 건, 천불)

설립일자	업종	종업원수	수출건수	수출금액
1989.4월	제조	10	57	2,138

- 제품소개: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제3923.21호)
  -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는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상자 · 케이스 · 바구니 · 색과 백 · 통 · 캔 · 카보이병 · 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

❷ FTA 활용 전 상황

- 동사는 미국으로 비닐봉투를 수출은 하고 있었으나, 한-미 FTA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여 한-미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세관에 FTA 컨설팅 요청

❸ 극복방안

- 세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FTA 활용
  - 주요 수출물품(HS 3923.21)에 대한 원재료 소요내역 및 가공공정을 확인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안내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 8가지 항목 안내 및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제공
  - 미국 원산지 검증 대비 서류보관의무 사항 안내 및 원산지 서명카드, 원산지 작성대장 비치 안내

❹ 활용효과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의 전체가 미국으로만 수출되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연도별 0.3%씩 향후 10년 균등인하로 연간 6백 ~ 7백만 원의 관세혜택

(단위 : 천불)

HS 품명	기본	협정	혜택금액
3923-21.0000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	3%	2.7%*	6.4

* 2012(2.7%) → 2013(2.4%) ·····→ (매년 0.3%씩 2021년까지 단계적 철폐) ·····→ 2021(0%)

- 한-미 FTA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미 FTA를 통한 관세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세관의 1:1 FTA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한-미 FTA를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시 협상카드로 제시

- 대미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정도 증가하였으며, 계속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인력과 설비를 늘려나갈 계획

❺ 시사점

- FTA에 대해 전혀 모르던 영세기업도 FTA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영세 중소기업 제품, FTA로 북미시장을 날다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V사는 반도체 기술을 축적하여 한국신기술(NT) 인증, 신기술인정서(KT)를 획득한 업체로서 초정밀 가스감지기를 북미시장으로 수출

- 제품소개 : 초정밀 가스감지기(제9027.10호)
  - 가연성 가스 또는 코크스로 가스발생로, 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

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 특히,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산소, 수소, 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됨

❷ 장애요소

기술자에게는 FTA가 너무나도 먼 길 !

- V사는 CEO를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3명, 자재관리 1명, 경리직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FTA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부재

- FTA 활용하고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FTA 교육을 참석하였지만, 원산지소명서, BOM 등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FTA C/O발급에 포기

❸ 극복방안

-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집중 컨설팅
  - 관할세관은 V사가 작성한 BOM을 1차 분석 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사후검증 대비 등 종합적인 현장 컨설팅 실시
  - 또한, 한-미 FTA C/O, 원산지확인서, 소명서, BOM, 공정도 등 관련 서류작성 추가 지원

- FTA 인식 전환이 FTA 혜택으로 직결
  - V사는 FTA 혜택이 수출자에게 직접 돌아오기 보다는 수입자에게만 수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어 FTA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관할세관은 V사의 CEO, 직원과 3차례의 상담을 통해 한-미 FTA의 간접적인 관세특혜 수혜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줌

❹ 활용 효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 미국 바이어는 '11년에 단발적으로 500~700개의 소량으로 구매해오던 가스검색기를 '12.3월 한-미 FTA 발효 후 관세 1.5% 감소, 현지 화물핸들링비용 1.2% 절약 등 가격인하로 35,000개 계약

- V사는 미국을 거점으로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미 FTA 활용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하반기에는 한-칠레 FTA를 활용하여 남미시장의 교두보 확보에 주력 예정

❺ 시사점

- 인원이 소수인 영세기업체는 FTA 담당자 및 전문지식 보유자의 부재로 FTA 활용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그러나 세관 및 국내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및 영세기업 대상으로 하는 집중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서 FTA 활용 기회 획득

04.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기업 협력형 모델

- 협력사와 상생(相生) FTA로 글로벌 동반성장 이끈다
- 생산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FTA 활용 극대화

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생산능력은 있으나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비한 생산기업과 FTA 활용능력 및 수출시장 확대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무역상사가 다수 존재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생산기업(완제품 생산자)과 무역상사(수출업체)간의 기업별 특화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관세환급 지원, 원산지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

●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업체 협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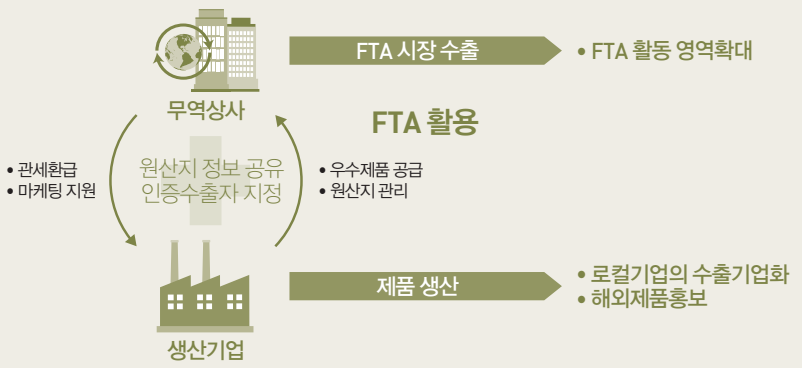

활용효과

- 무역특화기업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FTA 특혜세율로 저가에 수출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향상

- 생산특화기업은 무임으로 해외에 자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으며, FTA 활용능력 배양으로 수출기업화 가능

협력사와 상생(相生) FTA로 글로벌 동반성장 이끈다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W사는 클리닝 유닛 등 소모성 자재를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EU, 아세안 등 협정 체결국으로 원상태 수출

• 제품소개
  - 클리닝 유닛(CLEANING UNIT, HS 제8424.89호) : 분사 · 살포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 · 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는 기기
  - 다이버터 컨베이어(DIVERTER COVEYOR, HS 제8428.33호) : 물품을 이동시키면서 여러 레인(Lane)으로 구분되도록 분류해주는 시스템

❷ FTA 활용 전 상황

• W사는 제조하지 않고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만 하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을 위한 BOM, 제조원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기 어려움

❸ 장애요소

• 산업자재 유통서비스(구매대행사)의 업무특성
  - 실질적으로 제조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국내제조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BOM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 원산지 판정시 제조사로부터 BOM을 획득하기가 어려움(단가 등 공개 꺼림)

• 협력사의 기업정보 접근성 제약
  - 실질적으로 원산지의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는 제조원가, 중간재 등의 산정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기본사항들을 정확히 알아야하는 바, 이에 대한 협조를 얻기 어려움

• 다수의 협력사 관리
  - 대다수 업체가 영세하고, 제조사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수많은 제조사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어려움 존재

❹ 극복방안

- 마중물* 프로젝트
  - 협력사와 함께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중소기업 FTA 체결국가의 수출의 물꼬를 열어주는 역할 수행

    * 마중물 활용 : 펌프에서 고인물(협력사인 중소기업의 FTA 미활용)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마중물)로써 I社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협력사와 함께 FTA 활용을 높이도록 지원

- 품목분류 확인
  - 수출하는 물품이 신규 아이템인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 기존 아이템은 관세사의 DB 공유, 관세사 자문 활용

-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 수출품목에 대한 기본 교육, 고객사 ERP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동

- 전사적 원산지 관리
  - 프로그램을 웹으로 구현함에 따라 다수의 영세업체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산지 포괄확인서 제출가능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지정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2011.10.20)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2012.02.08)

❺ 활용효과

-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관세환급기회 제공
  - W사를 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경쟁력을 얻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또 하나의 혜택은 바로 관세환급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로 지정되어있고, 환급 또한 수출자로 지정하여 실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을 구매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W사의 '중소기업 상생'실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기회를 제공

- 마케팅기회 제공
  -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기존의 W사의 Global Infra를 이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꾸준한 홍보(FTA 발효국의 경우 가격경쟁력 홍보) 및 각종 해외 전시회 참가로 인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며, W사가 보증함으로써 초기 시장 개척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의 절감혜택을 향유

- 영업판로 확장을 통한 수출증대
  - 기존의 W사의 구매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Global 고객의 needs를 파악, 수출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며, 획기적인 중소기업 신제품을 연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해외 구매자를 개척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

❻ 시사점

-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협력업체들과의 상생경영을 위해 노력해온 △△社는 FTA를 통하여 협력 중소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진출 ·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수출지원

- (협력사 '성장발판' 마련) 협력사의 품질확보 및 FTA 원산지관리 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동반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社를 통하여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FTA 발효국 바이어와의 가격협상력 제고로 간접 '성장발판'마련(매출확대 ⬆)

생산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FTA 활용 극대화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X사는 수용도료(페인트)용 첨가제인 폴리아크릴아미드를 수출

• 제품소개 : 폴리아크릴아미드(HS 제3906.90호)
  - 유기산과 아민이 반응하여 생기는 아미드 결합을 가지는 중합체. 일반적으로 강도, 염색성이 우수하여 대부분 섬유로 사용되며, 내마모성이 뛰어나서 기계 부품으로도 사용됨

❷ 활용과정

■ FTA 활용 어려움과 극복과정

① FTA 활용상의 어려움

•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하나, 세번분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화학원재료에 대한 세번분류가 곤란

• 최종수출업체로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 원재료 내역에 대한 HS분류 등은 직접적인 물품의 관리가 아닌 서류(원산지확인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여 공급업체도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 가능

② FTA 활용을 위한 경영방법 변화

• 최종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FTA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 공유

• 두 업체 모두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함으로써,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원산지 증명서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FTA 활용혜택 극대화

❸ 활용 효과

• FTA 활용에 따른 (예상)경제효과: 연간 1.6억 관세절감효과 발생

수출국	연간 수출액($)	관세율		관세 절감액 (천원)
		현행	FTA	
미국	1,040,000	6.5%	0%	75,712
유럽	838,000	6.5%	0%	61,006
칠레	353,000	6%	0%	23,722
아세안	190,000	6.5%	5%	2,128
계	2,421,000			162,568

• 수출실적

- FTA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 추세로서 미국은 약 7억3천만 달러, EU로는 1억5천만 달러의 수출증가를 기록함

• 한-EU FTA 활용을 위하여 인증받은 품목 이외 추가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한 FTA 활용 효과 향유

• 자율증명방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통하여 FTA 활용이익을 극대화하고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의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

❹ 시사점

• FTA 활용의 극대화 및 정착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완제품 공급자, 원재료 공급자 등 모든 연관 기업에서 FTA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

05. 체약상대국 FTA를 활용한 생산·물류거점 설립 모델

• 해외 생산시설 설립으로 FTA 2배 활용!

개요

• FTA 체결흐름으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s)은 총 585개 체결되었고 그 중 379개 발효됨

※ 2014년 6월 15일 현재 WTO에 접수된 건수 기준

• 수많은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뿐만 아니라, 체약상대국이 체결한 FTA까지 활용하여 2중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제3국간의 FTA도 활용할 수 있음

- 원료 및 반제품을 체약상대국에 수출하고, 체약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제3국으로 무관세 수출

● FTA로 생산 및 물류 거점형 발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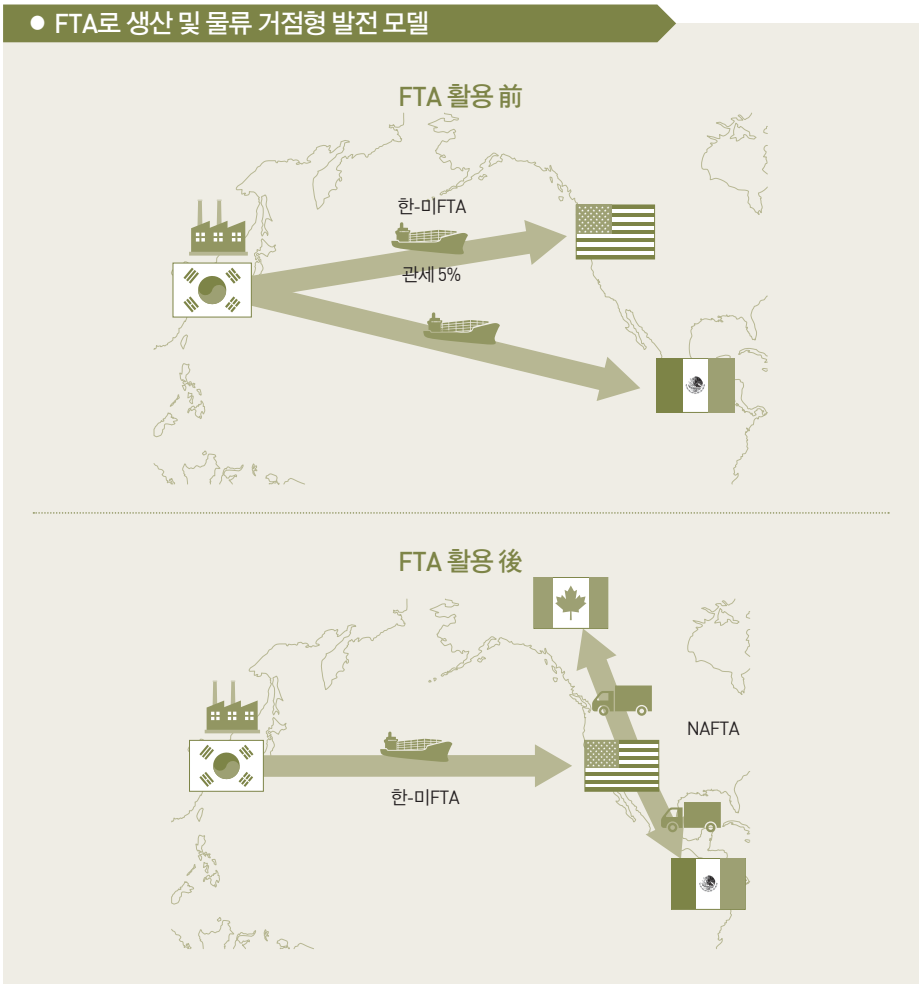

활용효과

- 우리나라-체약상대국 FTA와 체약상대국-제3국 FTA의 연속 활용을 통한 2중 관세절감 효과

해외 생산시설 설립으로 FTA 2배 활용!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Y사는 미국 자동차부품회사 E사의 아시아 지역 납품을 총괄하고, 국내 생산기지 역할 수행 및 물류관리를 대행하는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로 매년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제품소개 : 자동차부품(HS 제8708.9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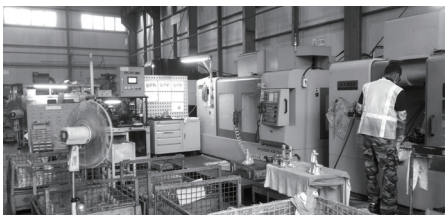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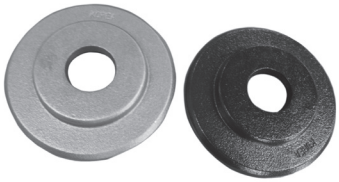

❷ FTA 활용 전 상황

-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주문하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 쇄도

- 對미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자체 원산지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FTA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

❸ 장애요소

- FTA의 활용으로 바이어의 주문이 증가하여 매년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유 값 상승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년 물류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이익의 증가폭이 크지 않음

❹ 극복방안

- 對미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1,500평 규모의 생산기지 확충을 계획
- 원부자재를 FTA를 활용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미국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NAFTA 등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예정

❺ 활용효과

- (수출 증가) 한-미 FTA 발효 전 철저한 사전 준비에 의한 FTA 활용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액이 100% 증가

- (물류 거점) Y사는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보하여 현지의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및 생산량을 증가시켜 미주 지역 납품 총괄책임이자 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❻ 시사점

- 對미 수출량 증가 및 캐나다, 멕시코의 신규 수요에 대비하고 NAFTA 등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를 연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장이전을 통한 생산설비 확대를 결정

06. 누적기준 활용 모델

• FTA, 수출전선에 무지개를 띄우다

추진배경

• 수출자가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

*누적기준 :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재료누적)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판정 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며 모든 FTA 협정에서 인정

• (공정누적)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페루 FTA에서는 인정되나 한-인도, 한-아세안, 한-EU, 한-EFTA FTA에서는 불인정

● 누적규정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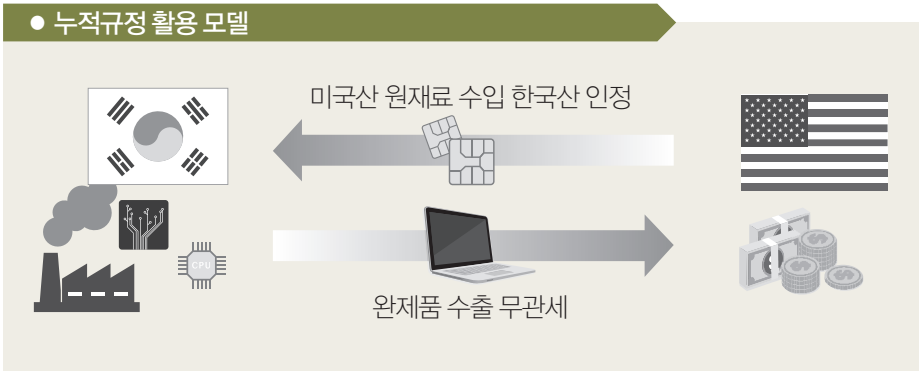

※ (유의사항)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하며, 협정에 공정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에서 누적을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정누적 인정 가능

〈누적기준 적용 유형〉

구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인도	아세안	EFTA / EU / 터키
ⓐ 재료누적	○	○	○	○	○	○	○
ⓑ 공정누적	○	○	○	○	×	×	×
근거규정	제4.5조	제4.9조	제6.6조	제6.5조	제3.7조	제7조	3조

활용효과

•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체약국간 교역촉진)

FTA, 수출전선에 무지개를 띄우다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E사는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코팅 도료(Paint) 전문제조업체로 국내 자동차 회사에 내수판매와 미국, EU, 인도, 중국 등 해외로 수출
  ※ 2009년도 500만 불 수출의 탑, 2010년도 1,0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 수출물품(Paint, HS 3208)은 자동차 내 · 외부의 범퍼, 핸들, 휠커버, 라디에이터 그릴, 썬루프, 센터 콘솔, 글로브 박스, 오디오판넬, 에어백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코팅재로서 첨단 기술 적용 제품

❷ FTA 활용 전 상황

- 동사는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FTA 협상 및 발효국인 인도, 체코, 중국, 미국 등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화 전략 추진

- 2011년 FTA 체결국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55%(850만 불)를 차지하여 FTA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 FTA 협정별 현황

[단위: USD]

수출물품	적용협정	기본세율(%)	협정세율(%)
3208.10	한-미	3.7	0
	한-EU	6.5	0
	한-인도	12.5	7.8
3208.20	한-미	3.6	0
	한-EU	6.5	0

수출물품	적용협정	기본세율(%)	협정세율(%)
3208.20	한-인도	12.5	7.8
3208.90	한-미	3.2	0
	한-EU	6.5	0
	한-인도	12.5	5

- 한-미, 한-EU는 관세 즉시철폐 품목으로 3.2%~6.5% 관세 혜택
  ㅇ 2012.3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한-EU, 한-인도 CEPA 등 활용

❸ 장애요소

• 한-미 FTA 활용 장애요인
-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미제출 ⇒ 원산지결정기준(CC) 미충족
- 인적 물적 비용 발생 ⇨ 소요 원재료 전체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미확보

❹ 극복방안

• 한-미 FTA 활용 극복과정 : FTA 활용 Total Consulting 실시
-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재료관리 단순화(인력 / 비용 절감)
- 미국산 원재료를 수입하는 국내 협력업체를 설득하여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여 누적기준을 적용(세번변경기준 충족)

• 한-미 FTA 협정의 도료(Paint) 원산지결정기준

HS	품목	원산지결정기준
3208.10	Based on polyester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C)
3208.20	Based on acrylic or vinyl polymer	
3208.90	other	

❺ 활용효과

●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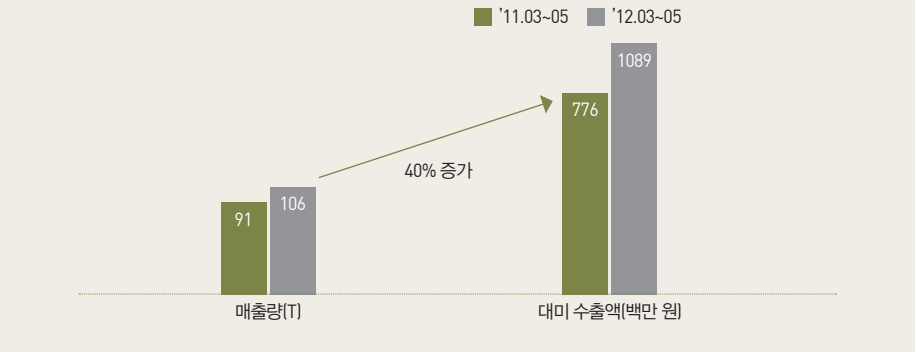

● 발효 전 3개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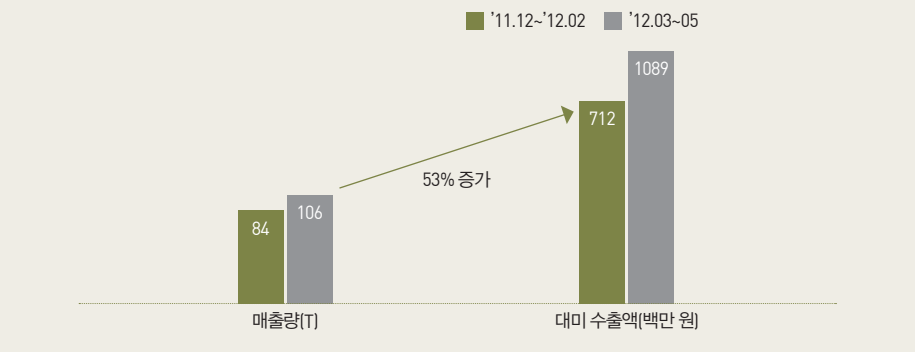

• 수출증가에 따른 2012년도 연간 관세혜택 예상액은 약 6.6억원으로 추정

❻ 시사점

• 적극적인 노력하여 협력업체와 유대관계로 외국산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변경하여 FTA 활용 수혜 사례

07. 특정공정 수행기준 모델

- 화학기업 3가지의 약점을 버리고 1가지의 장점으로
- 협력업체를 통한 손쉬운 FTA 활용

개요

-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개별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류 또는 호의 주 형식으로 특정가공공정을 규정

  * 특정공정기준은 제품의 제조공정 중 각 제품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가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 · 가공작업을 열거하여 지정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원재료의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발생수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고 특정공정만 입증하면 되므로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모델
  - 해당 공정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춘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 특정 공정 수행 기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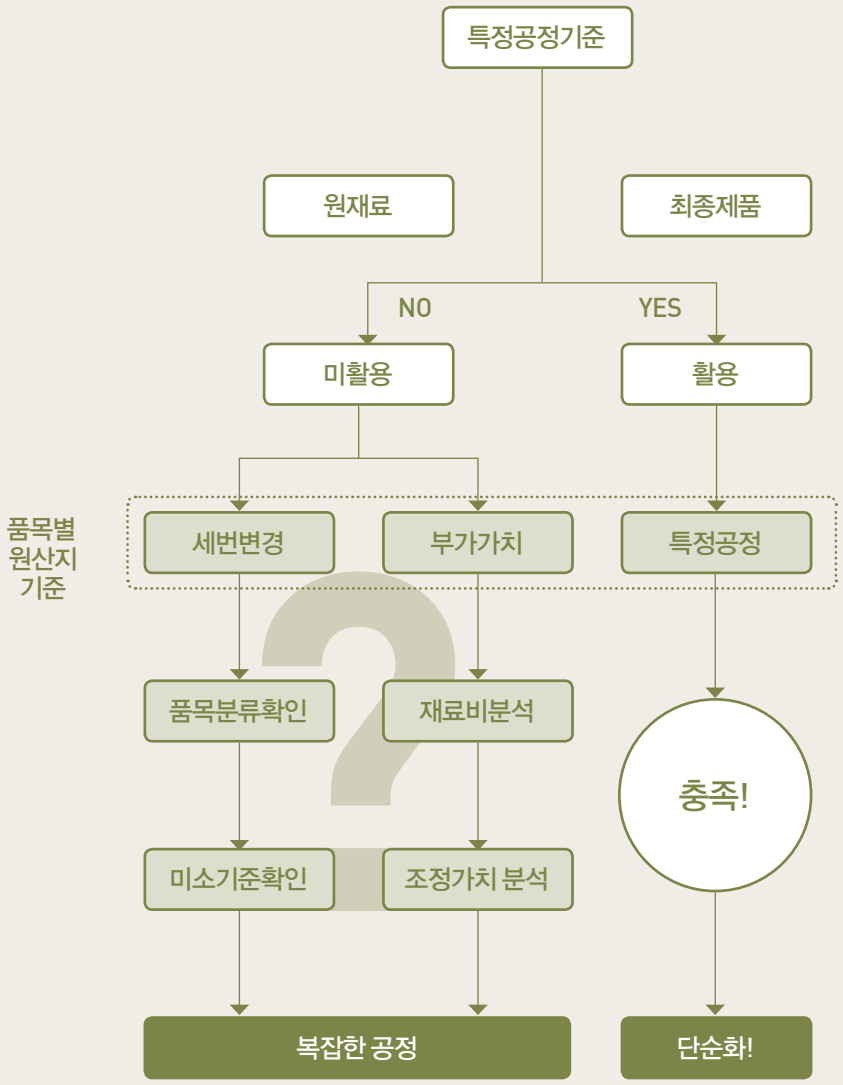

※ (유의사항)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의 특정공정기준 적용가능 여부를 확인 후 수행 공정이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엄밀한 확인 필요

활용효과

- FTA 활용 수출업체의 사후 원산지검증 등 원산지 관리 비용 감소와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가능성 증가

- 원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원산지가 인정되므로 단가가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가능

화학기업 3가지의 약점을 버리고 1가지의 장점으로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F사는 글리신과 자일리톨 등 식품 및 의약품용 소재, 중합방지제 및 기타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❷ FTA 활용 전 상황

- FTA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달리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매출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대응 미흡

- FTA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시 오히려 기존 국내 거래처 및 바이어에 대한 거래 중단 우려

❸ 장애요소

• FTA 활용 시 장애요인(세가지 약점 : 3W(Weakness))

1W	2W	3W
전문인력 부족	세번분류와 원가관리의 어려움	원산지 판정 · 관리 능력 부재
중소기업으로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부재	HS품목분류 전문지식 부족, 원재료 가격관리 어려움	협정 규정 이해도 낮음, 지속적인 관리능력 부족

❹ 극복방안

• 다양한 협정기준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많은 본부세관 컨설팅팀에서 화학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상세기준 정밀분석

• 화학제품의 경우 한미-FTA 협정이 타 FTA 협정과 다른 결정기준이 있음에 착안

〈화학제품류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물품 및 HS	미국	칠레	싱가포르	EFTA/EU
석유 및 화학제품 (27류~38류)	CTH Or 규칙	CTH Or RVC(45/30)	CTH	CTH or MC50

• 한-미 FTA 협정의 화학제품 원산지 규칙 세부내용

-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는 규칙1의 내용을 설명, 화학물질의 혼합 · 여과 공정 등 수행시 분자구조식이 변경되어 원산지 충족됨을 확인

● 화학제품 가공공정기준 적용 예시(제6부 주)

① 화학반응 : 반응 전 재료의 세번과 반응 후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나 원산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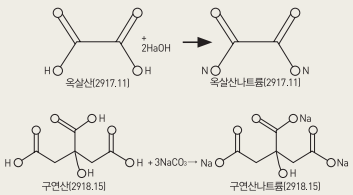

② 정재공정 : 정제 전 재료의 세번과 정제 후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나 원산지 인정

95% 에틸렌 C_2H_4 (2901.21) → 99.9% 에틸렌 C_2H_4 (2901.21) → 90% 페놀 C_6H_5OH (2907.11) → 99% 페놀 C_6H_5OH (2907.11)

❺ 활용효과

-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에 신뢰감 생성으로 공급처와 수출자 모두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감 해소

- 국내 공급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손실 위기 해소와 동시에 연계산업의 FTA 활용 지원

❻ 시사점

- 화학제품류(28~39류)의 한-미 FT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 대한 확대 가능

- 화학반응에 따른 분류는 기업에서 더 전문성이 있어 결정기준을 이해하기 쉬우며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

협력업체를 통한 손쉬운 FTA 활용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G사는 섬유제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Polyester Staple Fiber를 구입하여 아프리카,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도매업체임

-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매업만을 영위

❷ FTA 활용 전 상황

- 폴리에스터 화이버의 경우 국내 섬유산업 환경상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함에도 원산지 관리능력 및 시스템 부재로 활용 저조

  * SP: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FTA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원산지확인서 등 증명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이 어려움

❸ 극복방안

- 한-EU FTA 활용을 위해 발효 이후 세관 설명회 참석

- 인증수출자 제도 이해 및 FTA 활용방법 제고를 통해 두려움 해소

- 완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의 협조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11.8.1)
  - 컨설팅으로 완제품 생산업체 원산지결정기준(SP) 충족 확인 및 원산지확인서 등 필요서류 구비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

• 한-EU FTA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 발효 즉시 활용
  - 한-EU FTA 원산지기준 충족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도 충족
  - EU 인증담당자와 바로 연락하여 한-미 FTA 발효 즉시 원산지증명서 발행방법 등 상담을 받고 즉시 활용

품명	HS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 → 협정세율
Polyester Staple Fiber	5503.20	한-EU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4% → 0%
		한-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201부터 5203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 및 5403.42부터 5405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4.3% → 0%

⇨ 화학재료(Polyester Resin)로부터 제품이 생산되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❹ 활용 효과

• 한-미 FTA 발효 100일간 전년 동기 대비 대미 수출액 100% 증가
  - 미국 수출물량이 증가추세로 단일의 수입자와 거래를 해왔으나, 한-미 FTA 발효 후 새로운 바이어 확보를 통한 향후 대미 수출확대 예상

- 한-EU FTA 발효 후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하여 원산지 인증품목을 수출함으로써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

❺ 시사점

- 수출자, 완제품 공급자 등의 연관기업간에 FTA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류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FTA 활용효과를 극대화 필요

구분	상세내역
업종(품목)	인조섬유,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HS5503.20)
적용협정	한-EU FTA
추천업체	섬유제품 수출업체

08. 완전생산기준 입증을 통한 FTA 수출 모델

• 역내산이 된 진도 맛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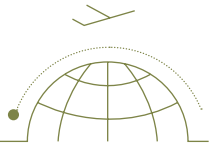

개요

•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농수축산물 등 1차 생산제품이 많으며, 대부분 생산자가 농어민으로 원산지확인서 구비에 어려움이 있음

* (예시) 수산물인 경우 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초생산자(선주)가 바다에 있어 원산지확인서 징구가 어렵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또한 공산품과는 달리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서류가 없고, 서류 확보 또한 어려움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원산지 입증
  - 일반적으로 거래단계에서 발행*되고 있거나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으로 완전생산 및 획득사실 입증(해당서류로 원산지확인서 대체)

    *농산물 출하확인서, 조합원확인서류, 수산물수매확인서, 어촌계장확인서 등
    **농지원부, 경작증명서,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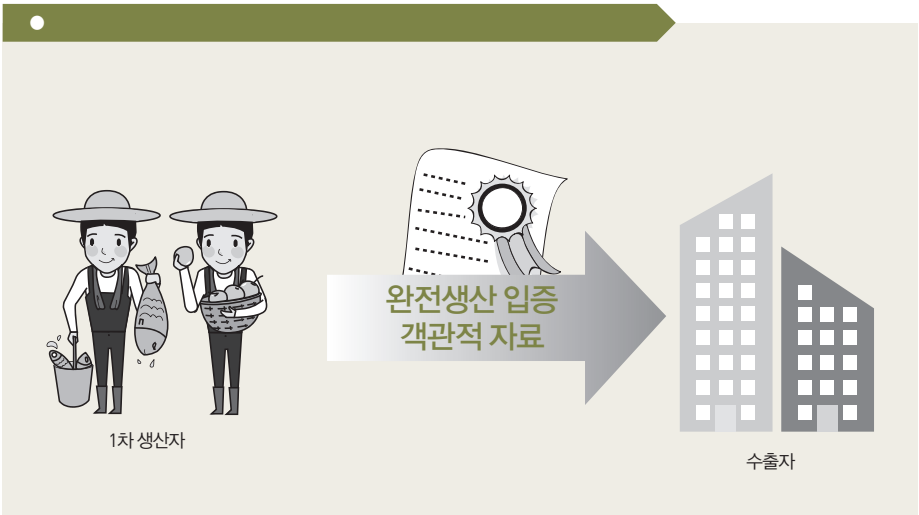

활용효과

- 원산지확인서 대체가능 서류로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입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1차 생산품의 FTA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

역내산이 된 진도 맛김

❶ 기업 및 제품소개

- H사는 2000년에 설립된 종업원 30여명의 소규모 업체로 조미김, 김밥김 등 해조류를 가공하여 수출하며 수출 실적이 2012년 인증수출자 인증 후 매년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수출실적〉

[단위 : 천 불]

HS(품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12.21-1010 (건조김)	5	27	14	945	15	806	7	764
2106.90-4010 (조미김)	11	98	17	297	35	689	32	699

❷ FTA 활용 전 상황

- 2010년, 2011년 총수출은 각각 142천 불(11건), 125천 불(16건)으로 주로 내수에 치중, 주로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직접 수출실적은 미비

- 2012년 해외로 판매시장을 확장함에 따라 필요에 의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득함

- 동사는 국내 김 생산자로부터 물김을 공급받아 자회사인 ○○○푸드에서 건조김을 가공한 후 건조김을 공급받아 수출하거나 조미한 후 수출

생산자 (진도 어촌계)		○○○푸드		○○○물산
물김생산	⇨	물김 → 건조김	⇨	건조김 → 조미김
1212.20(HS 2007)		1212.20(HS 2007)		2106.90

❸ 장애 요소

- 마른 김은 각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규정한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입증할 근거자료 확보 어려움
  - 공장에서 제조되는 물품은 원재료 공급 시 생산자가 발급하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나 어업인 발급 원산지(포괄)확인서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
  - 1차 산물인 '김'의 경우 물김의 국내 생산자로부터 국내 재배, 수확, 채취를 입증할 근거서류가 무엇인지와 근거서류의 확보가 어려움

〈조미김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체결국	결정기준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의 것, 제1212.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아세안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건조김은 완전생산품이어야 하고 아세안, 페루 FTA에서 조미김의 재료로 사용되는 '김'은 완전생산품이어야 함.

- 체결국별 품목분류 상이로 품목분류에 어려움
  - '김' 은 제조 공정에 따라 건조김(HS 1212.20 2007 기준), 구운김(HS 2008.99), 조미김(HS 2106.90)에 각각 분류되나 EU에서는 조미김이 HS 2008.99호에 분류

❹ 극복 방법

• 1차 산물의 국내 생산 근거자료 확보

- 우리나라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업권이 있는 어업인(어촌계)은 당해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협에서 위탁판매를 실시한다는 수산업계 현황을 파악
- 면허가 있는 어업인(어촌계)과 수협의 어업권행사계약서 및 물김의 위탁판매 출하확인서(수협), 수협의 물김 송품장 등을 근거서류로 확보

❺ 활용 효과

• 2012년 이후 매년 건조김 및 조미김에 대한 수출 증가

- 수출자에 대한 공급을 포함하여 2013년 수출 전년대비 20% 증가
- 2013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2%, 6% 증가

• 국내생산 완전생산품의 업계 현황을 분석, 각 협정의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지원

❻ 시사점

• 1차 산업 생산품의 원산지 증빙 방법 체계화로 우리 농어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농어업이 FTA 최대 피해산업에서 FTA 활용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FTA 시대 농어촌 활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 그것이 알고싶다 . What is the 원산지관리사?
- 원산지관리사 합격 수기

이번호에서는 원산지관리사에 대해 자주 문의되는 사항인 시험 자격 취득기간, 합격률, 원산지관리사와 실무사의 차이 등에 대해 질문과 답 형식으로 원산지관리사에 대해 소개한다. 원산지관리사 수기를 통해 시험공략법과 실무에 원산지관리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들어본다.

그것이 알고싶다
What is the 원산지관리사?

김설룡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

Q 원산지관리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인가요?

네, 원산지관리사는 2010년 12월에 민간자격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2012년 국가공인 심사를 통과하여 2013년부터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만큼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격증입니다.

Q 원산지관리사는 주로 기업의 어느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인가요?

구매 및 해외영업 전략 부서, 생산경영 전략 부서 등에서 필요로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리와 ERP 원산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가격 전략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Q 원산지관리사는 주로 어느 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나요? (무역리포트 2014년 7월호 참조)

수출입과 연관된 산업이라면 어디든지 진출이 용이합니다. 실제로 원산지관리사 취득자는 대기업과 대기업에 부품이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를 실제로 기업에서 우대하고 있나요?

네, 실제로 LS 엠트론, 넥센, 이랜드 월드 등의 유명 기업에서 직무에 따라 원산지관리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 보통 어느 정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한가요?

처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2~3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합격 소요 기간을 더욱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는 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학습을 하나요?

전공이나 직업 등 유관한 경험이나 지식을 쌓는 분들은 교재를 통한 독학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학습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의 경우, 원산지관리사 과목들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간하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온라인 강의를 통해 보다 쉬운 합격의 길로 다가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www.ftaedu.or.kr에 접속하셔서 FTA 원산지 아카데미로 오시면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관련 교육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1년에 3번 시험 일정이 있으며 보통 5월, 8월, 11월 이렇게 3번에 걸쳐 본 자격증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원산지관리사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진행한 원산지관리사 합격률은 12회 31%, 13회 16%, 14회 10%, 15회 38% 였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산지관리사는 정규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기업의 원산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반면, 원산지실무사는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기업의 원산지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Q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을 보유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원산지관리사 학습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준비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혹시 두 개의 자격증과 원산지관리사의 학습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수출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군요. 그 열정으로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 경우에는 무역 실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역량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역량을 평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FTA 협정에 근거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준 및 조항, 품목분류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 통관실무에서 관세법 부분은 국제무역사나 원산지관리사 모두 공통된 부분입니다. 학습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 FTA의 기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관리사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사 합격 수기

- 원산지관리사 합격자(12회, 1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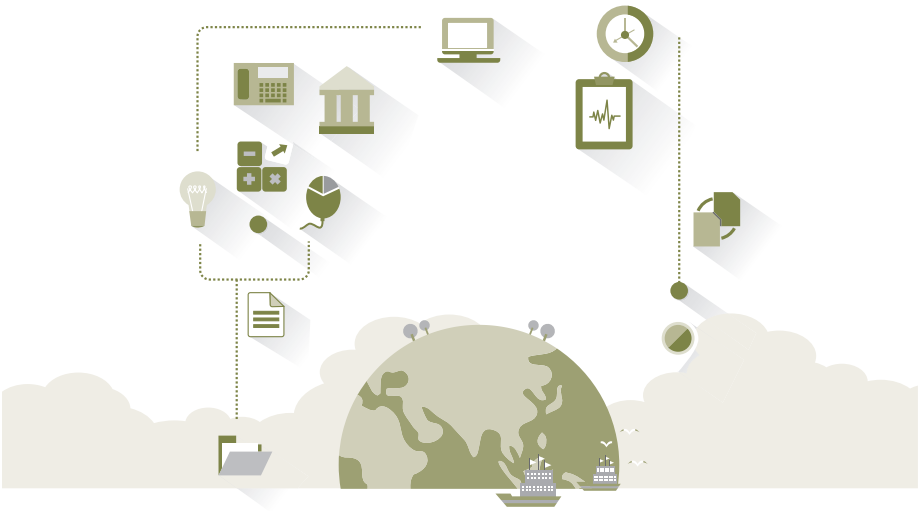

윤원채(15회 합격자)

1.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FTA 활용연구팀 인턴으로 근무 중인 윤원채라고 합니다. 담당하는 일은 FTA 관련 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TPP 관련하여 TPP 가입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HS code를 정리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교재에 필요한 최근 타결한 FTA 협정문 자료를 수집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예시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어떤 경로로 취득하게 되었나요?

사실 관세사 시험을 약 2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과목 가운데에는 관세법이라든지, FTA 이행 특례법, HS 품목분류 등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사 과목들에 대한 거리감은 적었습니다. 관세사 시험 과목들을 강의해주시는 강사분들이 원산지관리사를 소개해 주신 것이 원산지관리사를 알게된 계기였습니다. 소개와 더불어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을 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C/O)의 자율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인증수출자의 필요요건 중 하나인 원산지 전담관리자에 원산지관리사가 근무한다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원산지관리사가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되면서 관세사 대비 학원에서도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취업에 뛰어들면서 그 해 8월, 원산지관리사 제15회 시험에 응시를 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3.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취업에 도움(또는 업무에 도움)이 된 점을 작성해 주세요.

인턴 업무에 있어서 HS code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였는데,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님들의 업무 지원 시 원산지관리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타결된 한-콜롬비아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의 협정문 자료를 조사할 때 본 자격증 준비 시 습득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협정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작업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유로 인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4. 자격증 취득 후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하여 더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아마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고자 준비하는 학생, 취업 준비생들이나 직장인들의 경우,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개인마다 학습 습관이나 본 자격증과 관련된 기본 지식의 양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과목별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산지관리사 공부 방법

학습 기간: 약 1달

- 크게 3개로 나누어서 과목별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 통관 실무, FTA 협정 및 법령 (70점 이상 목표로 하기)

- 이 두 과목을 한 묶음으로 둔 이유는 공부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과목은 다른 두 과목에 비해 개인적으로 학습의 어려움이 훨씬 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관 부분의 경우에는 수출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학습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령, 수입 통관의 과정인 "수입신고 → 서면심사 및 현품 검사 → 수입신고 수리"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생시키며 학습하시면 빠른 습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을 종종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예전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 시험장에서 개정된 내용의 출제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최신 교재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품목 분류 실무 (50점 이상 목표로 하기)

- 처음 이 시험을 접하는 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 과목일 것입니다. 생소한 과목인 만큼 어떻게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할지 난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학습해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목일수록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덜 중요한지 경중을 잘 따지면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제84류, 제85류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전체 출제 빈도의 약 40% 정도였던 걸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기출문제집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www.ftaedu.or.kr)

  이렇게 빈도가 높은 류 부분은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들을 꼼꼼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 규정에도 언급된 호의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암기

를 동반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가령, 제85류 주3에는 "가정용 전기기기"라는 호의 용어를 설명하며, 당해 호에 해당하는 예시 물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완벽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50류~제63류의 섬유, 의류 관련 부분에서는 예시를 통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 접근은 주 규정에 근거하여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주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양을 암기하실 때는 적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할 시 시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자주 보면서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자주 접하게 된다면 객관식이라는 본 시험의 특성상, 시험 당일 어떤 문제를 접하더라도 자신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 (60점 이상 목표로 하기)

- 이 부분은 관세사를 준비했던 분이나 처음 준비하는 분 모두에게 생소한 과목입니다. 한 번 공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분류와 마찬가지로 매일 한 번씩은 보신다는 마음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FTA 협정마다 협정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반면에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콜롬비아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끼리 비슷한 내용이 있고 EU, EFTA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아세안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끼리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암기하면 학습이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과목 역시 협정 추가 등에 따라 개정 가능성이 있기에 가장 최근 교재로 학습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5원산지관리사교재

2015원산지실무사교재

이소영(12회 합격자)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이행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이소영입니다. 현 부서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 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제도)를 활용하려는 업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분야의 업무에 호기심이 생겨 앞서 설명드린 업무를 하고 있는 FTA 이행지원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부서에서 근무했지만 FTA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품목분류나, 수출입통관, 원산지 결정기준 등 일반인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원산지 관리사' 교육과목이 낯설지 않았는데도, 막상 '원산지 관리사'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었습니다.

다만, 업무가 '원산지관리사' 자격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업체담당자에게 원산지 인증수출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다 보니, 교육내용이 바로 실무와 접목이 되어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후 업체가 제출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서류를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었고, 담당자와의 업무 상담도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관리자 자격 취득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품목분류'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FTA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공부했던 부분은 업무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접착식테이프 제품을 수출했던 A사가 제3919.10호(접착식테이프 제품)를 제3926.10호(사무용제품)로 품목분류를 잘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한-EU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FTA를 적용받지 못할수도 있었습니다.

HS No.	제3919.10호	제3926.10호
한-EU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MC25%	MC 50%
	4단위 세번변경 또는 공장도가격 25% (선택기준)	공장도가격 50%

다시 말해, 해당물품은 세번변경기준(CTH)이나 부가가치기준(MC25%)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제3926.10호로 잘못 분류한 탓에 좀 더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인 MC50%을 적용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원산지 관리사를 통해 배운 지식과 FTA업무실무를 통해 경험한 부분을 통해 업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 업체 입장에서 더 유리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자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FTA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 11월 30일에 우리나라 교역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과의 FTA가 지난 12월 20일 발효했습니다. 대중국과의 원할한 교역을 위해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앞으로 FTA 업무를 잘 알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FTA 전문가로서의 시작을 '원산지 관리사' 자격을 취득을 통해 하신다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역환경에서 여러분이 'FTA 전문가'로서 우뚝 설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활용하기 쉬운 FTA PASS

FTA - PASS 이모저모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FTA-PASS 추가기능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통합원산지관리 시스템과 발효되는 협정에 대한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 서비스가 더해지는 것이다.

우선, 신설되는 기능은 통합 원산지관리 시스템으로 주요 골자는 원산지 관리 대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기능은 관세사와 기업의 담당자가 원산지관리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다리역할을 해주는 기능이다.

다시 말해, 관세사가 원산지관리를 요청한 기업별로 원산지관리 업무를 대행하면, 기업의 담당자는 지점의 원산지관리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FTA-PASS는 신규 FTA 협정 발효에 맞춰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원산지판정, 서류발급 서비스를 2015년 1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경우 기존 서비스에 이어 원산지 서류발급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콜롬비아 FTA에 대한 원산지 판정 서비스 역시 해당 협정이 발효되기 전 지원할 예정이다.

FTA-PASS 기능 개선 노력외에도 FTA-PASS 사후관리팀에서는 1년에 2회 FTA-PASS 활용지원 강화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후간담회를 실시한다. 하반기 사후간담회는 11월 열렸고, FTA-PASS 기능개선 부분, 활용점검, 활용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FTA-PASS 간담회에서도 기업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FTA-PASS 간담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번 열리며, 신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해당간담회에 관한 사항은 국제원산지 정보원 FTA-PASS 사후관리팀에서 발송하는 FTA-PASS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ftapass.or.kr/index.do)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FTA 100% 활용하기

베트남 통관환경 동향 및 FTA 활용방안

베트남 통관환경 동향 및 FTA 활용방안

명재호 청솔관세법인 관세사

FTA 100%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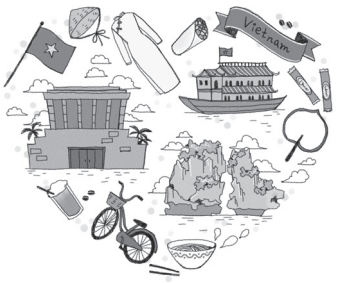

01. 개요

베트남은 매년 약 5~6%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인구가 약 9천만에 달해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시장이다. 관련 지표상으로도 '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교역규모가 40배 성장하였고, 한국은 베트남에 4,110개 프로젝트, 372억불을 투자하여 '14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의 제1투자국으로 등극하였으며, 반면 베트남은 2015년 5월 기준 한국의 4위 교역국이자, 5위의 투자대상국으로 아세안 회원국 중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역파트너로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5.05 한-아세안 FTA와는 별도로 개방수위를 대폭 상향한 한-베트남 F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일-베트남 EPA가 체결('09.10)되어 그 동안 우리 주요 수출품목들이 일본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베트남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무상 빈번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의 통관제도와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수출입통관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02. 베트남의 관세제도

❶ 베트남의 통관행정 조직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베트남의 정부기관은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으로 관세총국의 기능은 통관절차 수행, 수출입화물의 검사·감독, 밀수조사, 단속 등 기타 세관 업무의 집행 등이다. 베트남 관세 총국의 조직은 본청(해관총국), 성급세관(해관국), 지역세관(해관지국) 등 3단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3개 직할시 및 성 가운데 31개 직할시 및 성에 성급세관(해관국)이 설치되어 있다. 다만, 각 성급세관의 경우 중앙의 재무부와 본청의 강한 지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세관 직원 역시 성급세관별 자율선발체계로 세관원의 재량과 권한이 막강하여 신속통관 지연, 일관성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❷ 베트남의 관세율

1999년 1월 1일 베트남은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기존의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 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관세율 체계〉

구분	내용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 및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MFN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일본, EU 등 총 163개국에 대해 적용하는 특혜관세
특별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특별 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적용하는 관세로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간 실시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등이 이에 해당

❸ 베트남의 비관세 장벽

베트남의 비관세 장벽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자동수입허가, 안전인증서, 라벨링, 표준규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수입허가 및 안전인증서는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라벨링 및 표준규격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베트남의 비관세 장벽〉

구분	내용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산업무역부에서 지정하는 화장품, 철강제품 등 특정 품목은 물품의 하역 전 자동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안전인증서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이 필요함
라벨링(Labelling)	모든 수입물품은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 · 감독을 위해 포장용기에 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정보를 기재할 것
표준규격	품목별 표준 규격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기준에 맞추어 표준규격이나 제품설명을 작성해야 함

❶ 자동수입허가(AIL) 신청

AIL의 신청은 품목별로 하여야 하고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대금송금 관련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서류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우편 접수하면 통상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AIL(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이 발급된다.

❷ 안전인증서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관련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 위원회(STAMEQ,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❸ 라벨링(Labelling)

수입재화의 라벨은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내용에 추가하거나, 제조자 라벨 옆에 수입업체의 라벨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하며 상품명, 수입자의 상호 · 주소, 수량정보, 성분정보, 원산지 등 8대 법정항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❹ 표준규격

특정제품의 표준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제공 받기도 하고,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❹ 관세면제제도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근거로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용 공장 설비 기계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에 면세수입을 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베트남 투자기획부로부터 투자허가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수입계획을 각 성의 투자기획부(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입되는 설비 기계류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여 주고 있다.

"투자용 공장 설비 기계류" 이외에 일반적인 면세규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으며, 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재수입용 일시 수출물품,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에 대하여도 관세부과가 면제된다.

03. 베트남의 통관절차

❶ 수입통관절차

베트남의 수입통관은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① 수입신고 → ② 세관심사 · 검사 → ③ 관세납부 → ④ 물품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통상 5~7일 정도 소요된다.

수입신고는 전산과 서류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나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로 물류업체 등을 통해 통관하거나 업체에 자체통관 전담직원을 두어 통관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구분	서류
필수제출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입계약서(Sales Contract)
추가제출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 수입허가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허가증(I/L) - 쿼터대상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증명서 - 면세제품인 경우 면세신청서

● 베트남의 수입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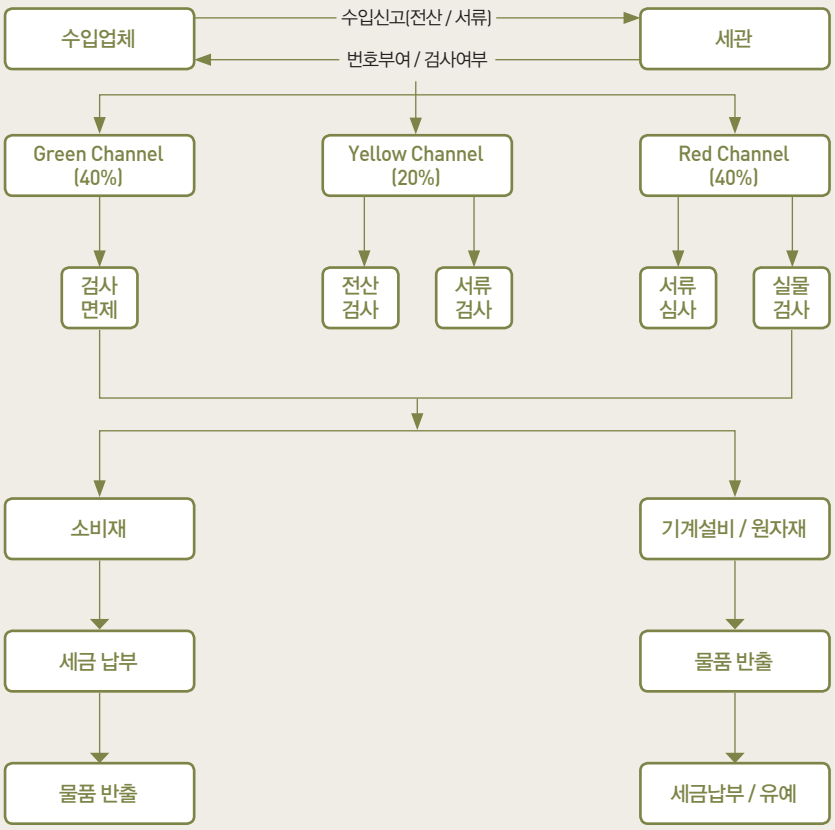

* 출처 : 베트남 통관환경 보고 (주 베트남 관세관)

수입신고 후 세관검사는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중위험), Red Channel(고위험) 3가지 중 한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 되는데 저위험물품(Green Channel)에 대해서는 세관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모두 면제되고, 중간위험물품 (Yellow Channel)에 대해서는 물품검사만 면제, 고위험물품(Red Channel)에 대해서는 세관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모두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세관검사시 Channel별 필요절차〉

Channel 분류		필요 심사 절차
Green Channel		전산신고만으로 신고수리 가능 -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
Yellow Channel	E-Yellow Channel	전자서류(e-document) 세관 제출
	Paper-Yellow Channel	종이서류 세관 제출
Red Channel		종이서류 제출 및 세관물품검사

* 출처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조세연구원)

❷ 수출통관절차

베트남의 수출통관절차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① 선적일정확인 → ② 서류준비 → ③ e-customs 신청, 세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신청번호확인 → ④ 면장신청 및 승인 → ⑤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⑥ 컨테이너 CY 이송 → ⑦ 선적 전 검사 → ⑧ 면장과 Booking Note를 세관에 신고 → ⑨ 통관종료 후 선적 → ⑩ 선적 후 세관 최종승인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신고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이며 필요시에는 수출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서를 출력하여 수출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출세 납부대상 품목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❸ 관세 납부 유예 · 환급 · 보세제도

베트남 수출입 세법(제11조2항)에 의해, 세금연체 또는 이로 인한 벌금 없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현지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신고일로부터 275일 동안 관세징수를 유예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데 동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자가

당해 원부자재가 수출용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시에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한 후 가공·수출하고, 275일 이내에 해당금액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시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대금결제확인 서류이며 환급대상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로 관세는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의 제척기간은 당초 수출목적으로 신고된 경우는 무제한이며, 당초 내수 목적으로 신고된 경우는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은 보세공장과 보세운송제도는 없으나 전국 276개의 공업구(Khu Cong Nghiep, Industrial Zone) 및 76개의 수출가공구(Khu Che Xuat, Export Processing Zone)에서 관세유예제도와 구역외 임가공을 허용하고 있어 보세공장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04.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14.12 베트남 재정부(MOF)는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 부패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❶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하고 있다.

❷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❸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 현지의 통관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아갈 때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겪을 애로사항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트남 통관단계별 유의사항〉

단계	유의 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단계	• 산업무역부(MOIT)에서 정하는 수입자동허가(AIL) 대상 품목은 수입신고 이전, 물품의 하역 전, 산업무역부에서 허가를 획득해야 함 • 일부 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베트남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FTA 세율 적용 희망 시, 한국에서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함
2. 수입신고 및 세관심사 단계	• 세관별로 업무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 제품에 대하여 다른 관세율을 적용 받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관세총국과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음 •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수입신고에 전문성이 다소 감소하는 경우가 있음 • 전산시스템으로 수입신고 후 추가적으로 서류도 제출해야 함 • 세관통관시스템상으로 통관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세관 방문 등으로 인해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 기계류 HS 분류가 우리나라에 비해 자세하지 않아 품목분류가 어려움
3. 면세 등 특혜 적용	• 면세가 적용되는 '투자 목적의 고정 자산인 공장 설비' 기준 판단에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면세 신청에 있어 정형화된 면세신청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 샘플과 광고 및 홍보 물품도 관세 납부의 대상임
4. 수입신고 수리 이후 단계	• 통관 이후 물품은 관세법령 이외 현지의 내국 법령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 • 특정 처분이 추후 일방적으로 변경 ·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5. 수출 및 환급단계	• 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여 수입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정해진 기간보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자금 계획에 반영,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음

*출처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 조세연구원)

FTA 지도

- 지도로 보는 2015 상반기
  FTA 특혜 대상 품목의 수출입실적
  - 품목별 세분화(MTI* 6단위 기준)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는 HS품목분류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품목분류 체계로 이번 호에서는 MTI 3단위 품목과 MTI 6단위 품목에 대하여 FTA 협정별 특혜대상 품목의 수출입실적을 알아보았다.

01 수출 자동차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11,709,094,584 (32%)	24,994,156,572 (68%)	36,703,251,15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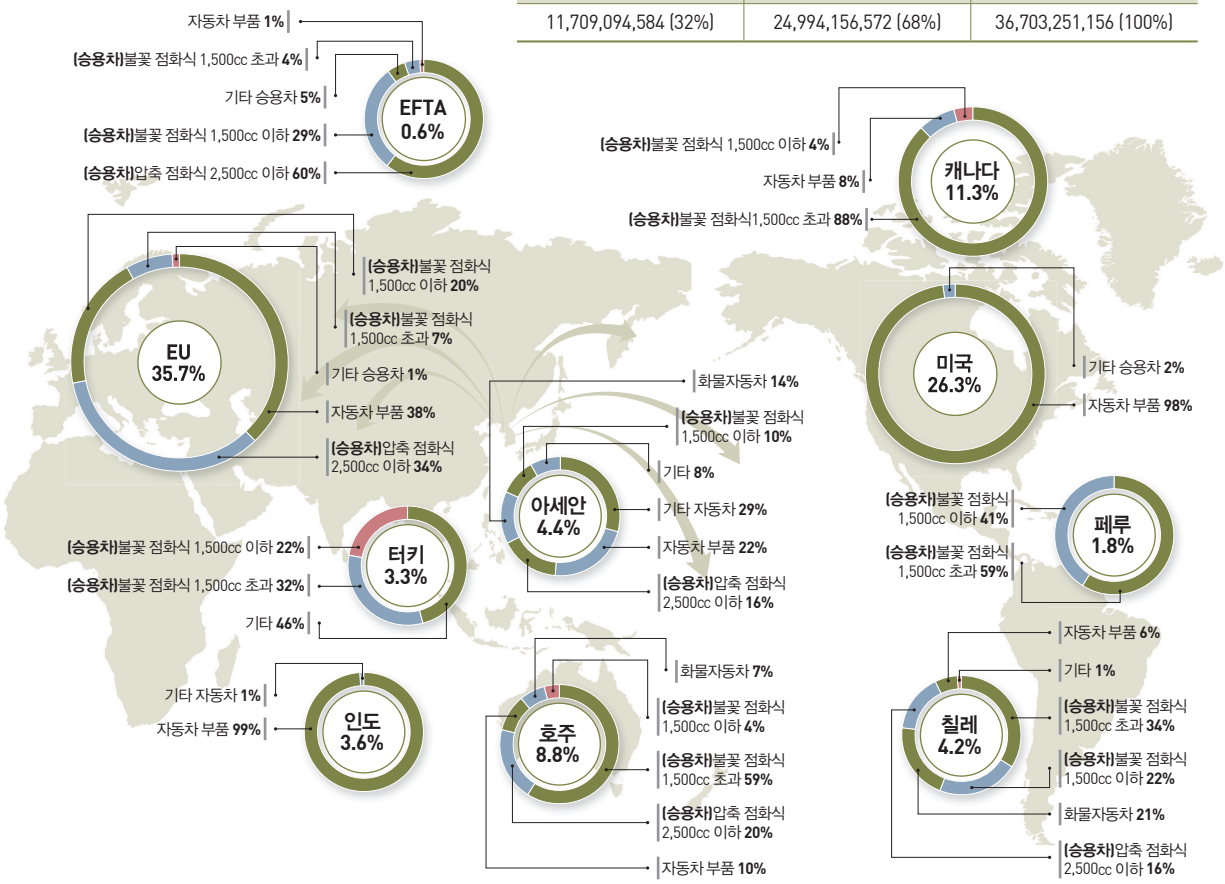

협정별 자동차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11,709,094,584

자동차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부품	5,595,954,763	47.8
2	(승용차)불꽃 점화식 1,500cc 초과	2,385,470,567	20.4
3	(승용차)압축 점화식 2,500cc 이하	1,925,129,933	16.4
4	(승용차)불꽃 점화식 1,500cc 이하	1,212,525,228	10.4
5	화물자동차	301,896,217	2.6
6	기타 자동차	160,305,468	1.4
7	기타 승용차	107,459,040	0.9
8	특장차	19,170,544	0.2
9	(승용차)압축 점화식 2,500cc 초과	1,182,824	0.0
	총계	11,709,094,584	100.0

*불꽃 점화식 : 가솔린 *압축 점화식 : 디젤

02 수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218,651,769 (1%)	22,172,310,643 (99%)	22,390,962,4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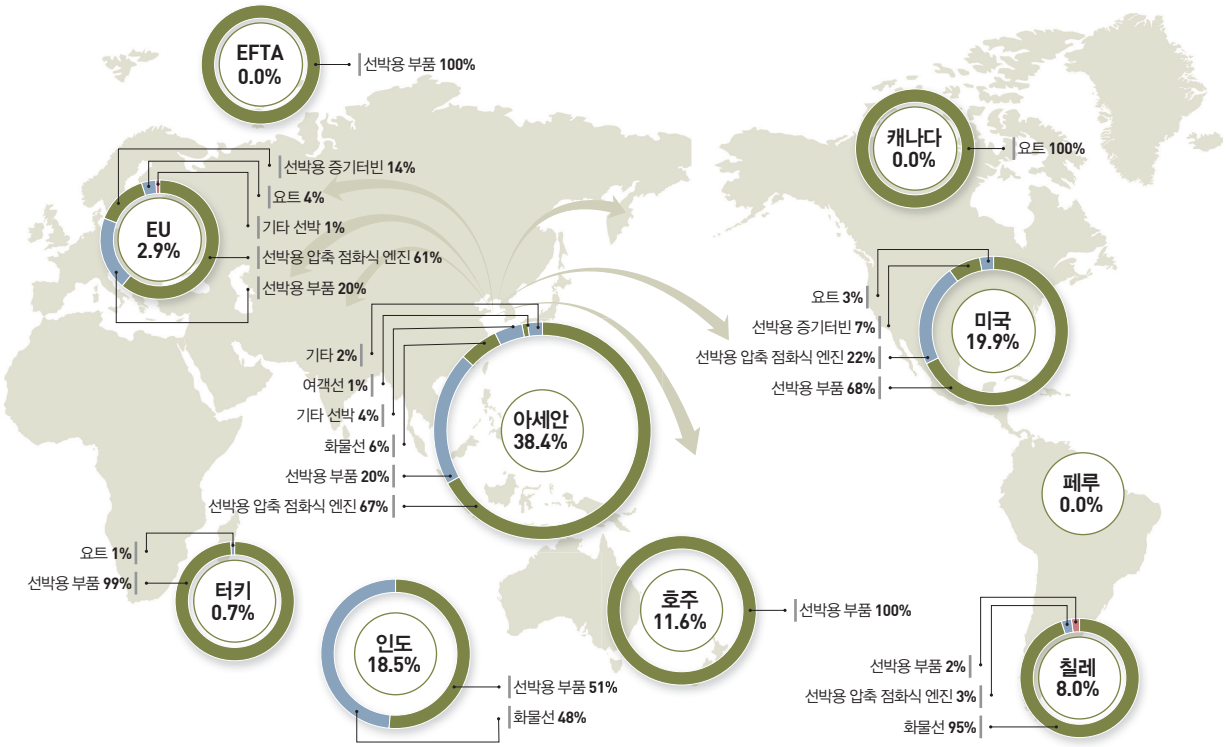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218,651,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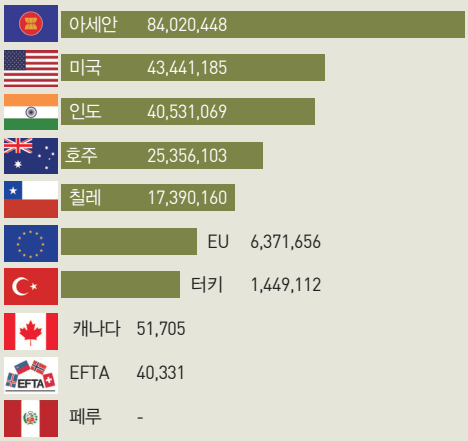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선박용 부품	95,035,776	43.5
2	선박용 압축 점화식 엔진	70,400,101	32.2
3	화물선	40,811,901	18.7
4	선박용 증기터빈	4,142,408	1.9
5	기타선박	3,837,123	1.8
6	요트	2,027,270	0.9
7	여객선	1,220,000	0.6
8	어선	418,297	0.2
9	해양구조물	367,705	0.2
10	예인선	350,000	0.2
총계		218,651,769	100.0

03 수출

석유 제품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2,121,916,548 (13%)	14,498,721,114 (87%)	16,620,637,66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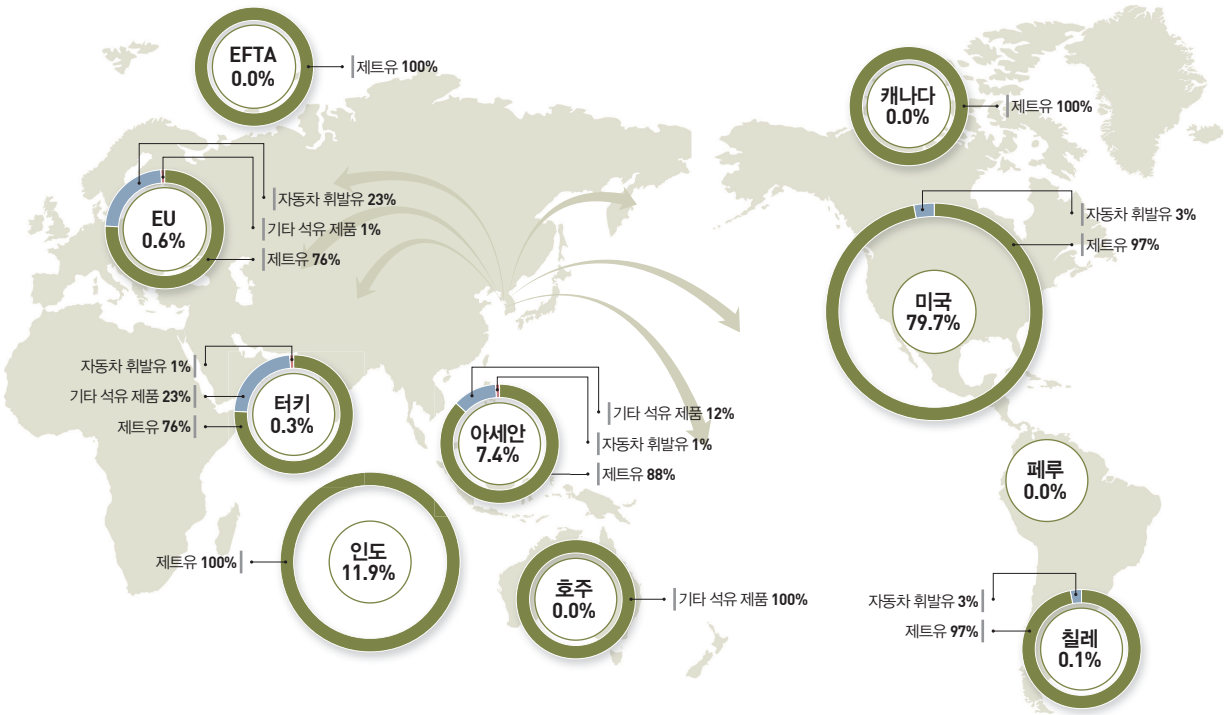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석유 제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2,121,916,548

석유 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제트유	2,048,869,543	96.6
2	자동차 휘발유	53,374,056	2.5
3	기타 석유 제품	19,672,949	0.9
4			-
5			-
	총계	2,121,916,548	100.0

04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141,386,513 (1%)	16,225,486,950 (99%)	16,366,873,46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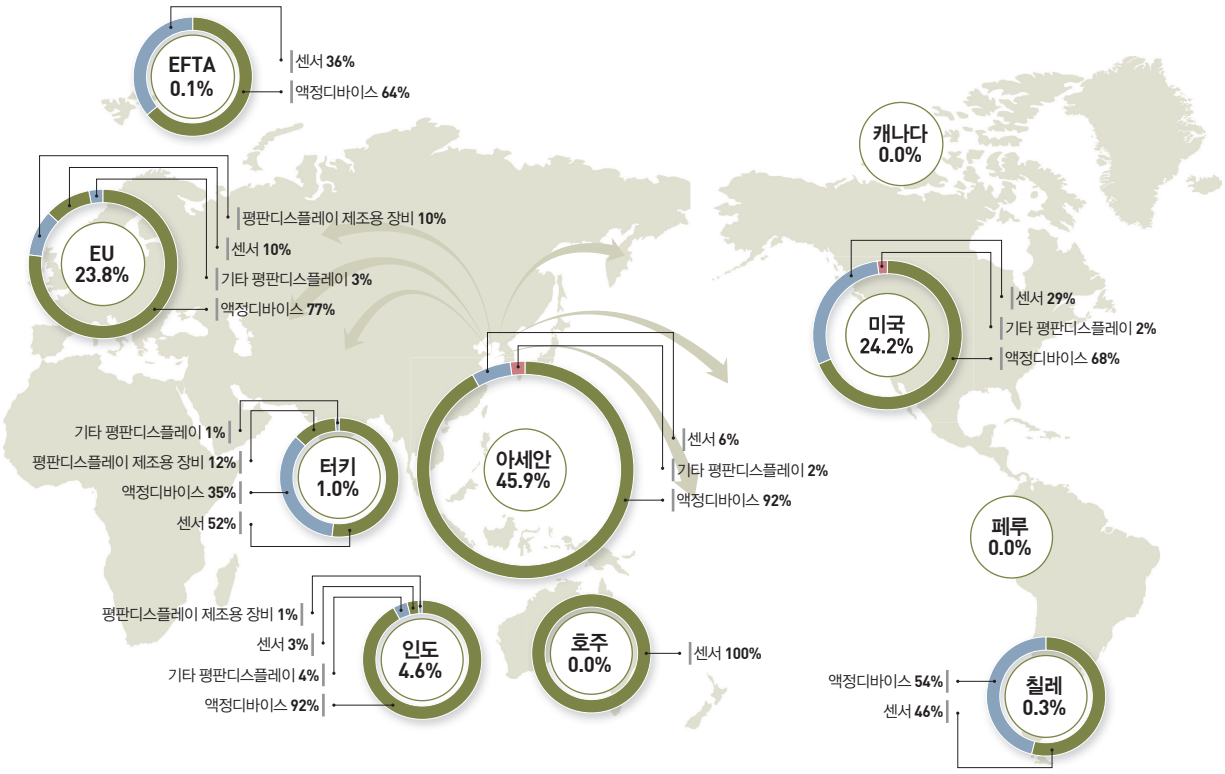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141,386,51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액정디바이스	115,643,991	81.8
2	센서	18,592,208	13.1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3,691,882	2.6
4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3,458,432	2.4
5			-
	총계	141,386,513	100.0

합성수지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2,322,683,928 (24%)	7,190,458,220 (76%)	9,513,142,1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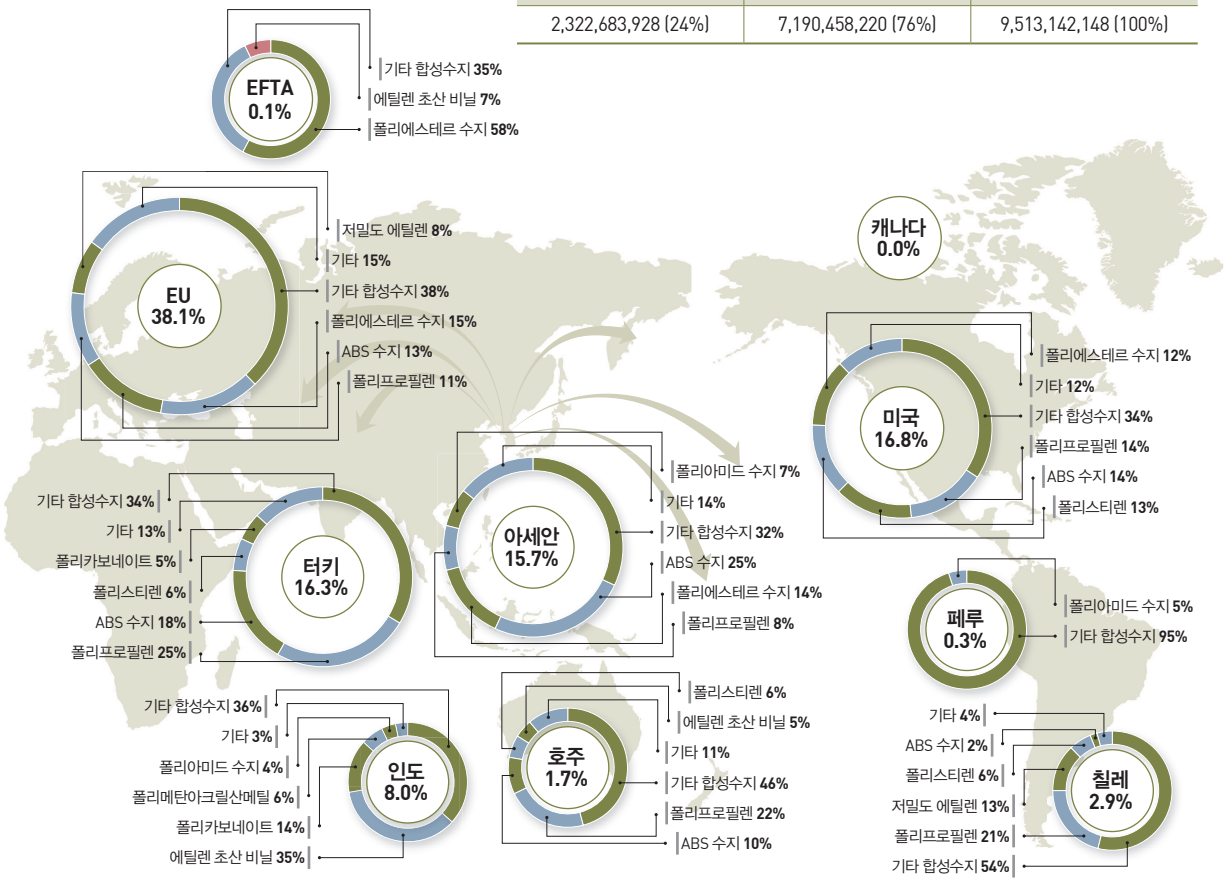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합성수지 제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2,322,683,928

합성수지 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 합성수지	844,235,428	36.3
2	ABS 수지	335,714,351	14.5
3	폴리프로필렌	300,045,657	12.9
4	폴리에스테르 수지	244,341,352	10.5
5	폴리스티렌	140,917,659	6.1
6	저밀도 에틸렌	118,310,338	5.1
7	폴리카보네이트	97,541,829	4.2
8	에틸렌 초산 비닐	76,108,049	3.3
9	아세탈 수지	54,499,405	2.3
10	폴리아미드 수지	48,416,445	2.1
총계		2,322,683,928	100.0

06 수출 플라스틱 제품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1,518,027,967 (34%)	2,996,403,686 (66%)	4,514,431,65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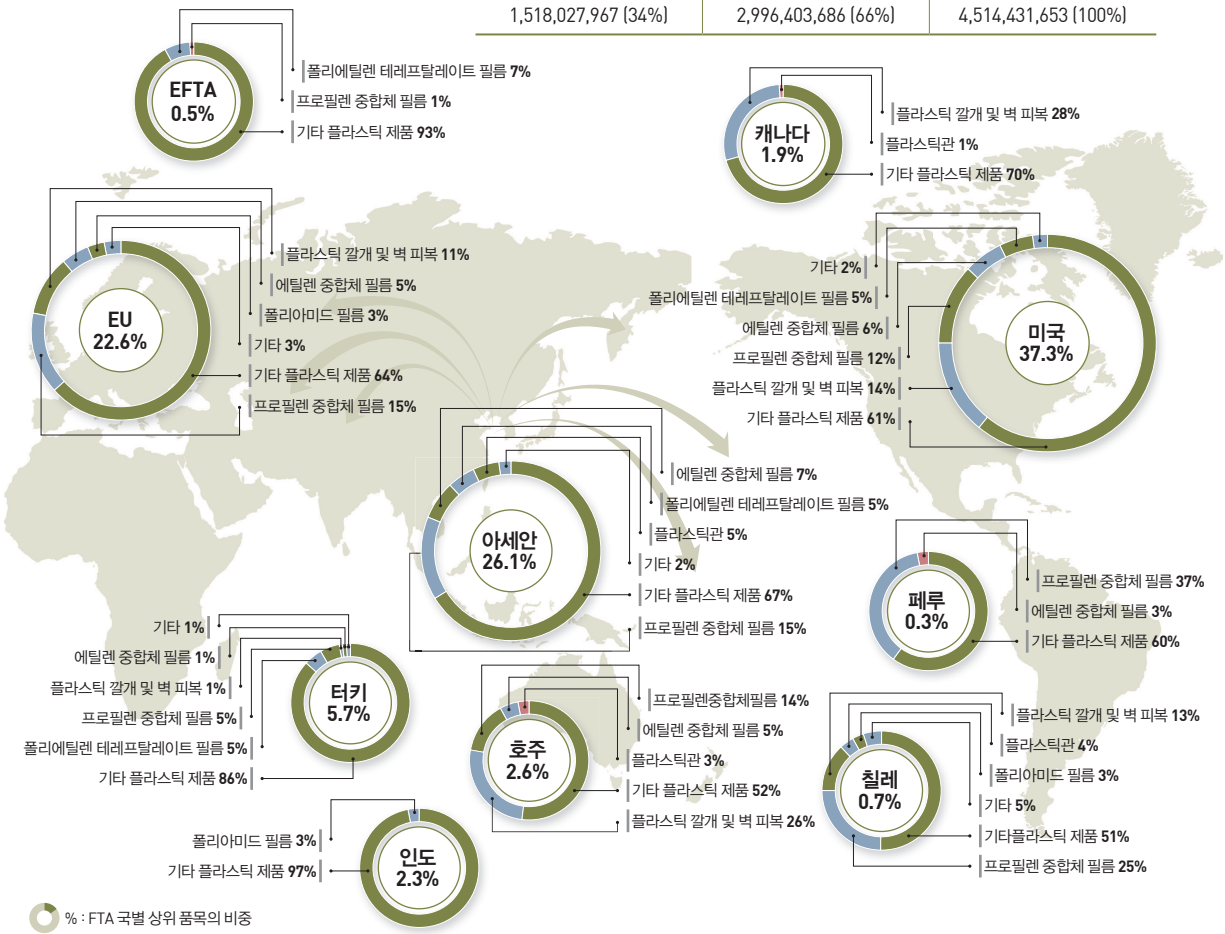

협정별 플라스틱 제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1,518,027,967

플라스틱 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 플라스틱 제품	994,834,254	65.5
2	프로필렌 중합체 필름	192,915,448	12.7
3	플라스틱 깔개 및 벽 피복	140,083,475	9.2
4	에틸렌 중합체 필름	77,066,646	5.1
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51,120,410	3.4
6	플라스틱관	43,479,186	2.9
7	폴리아미드 필름	18,528,548	1.2
8			-
9			-
10			-
총계		1,518,027,967	100.0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1,151,944,023 (13%)	7,788,964,260 (87%)	8,940,908,28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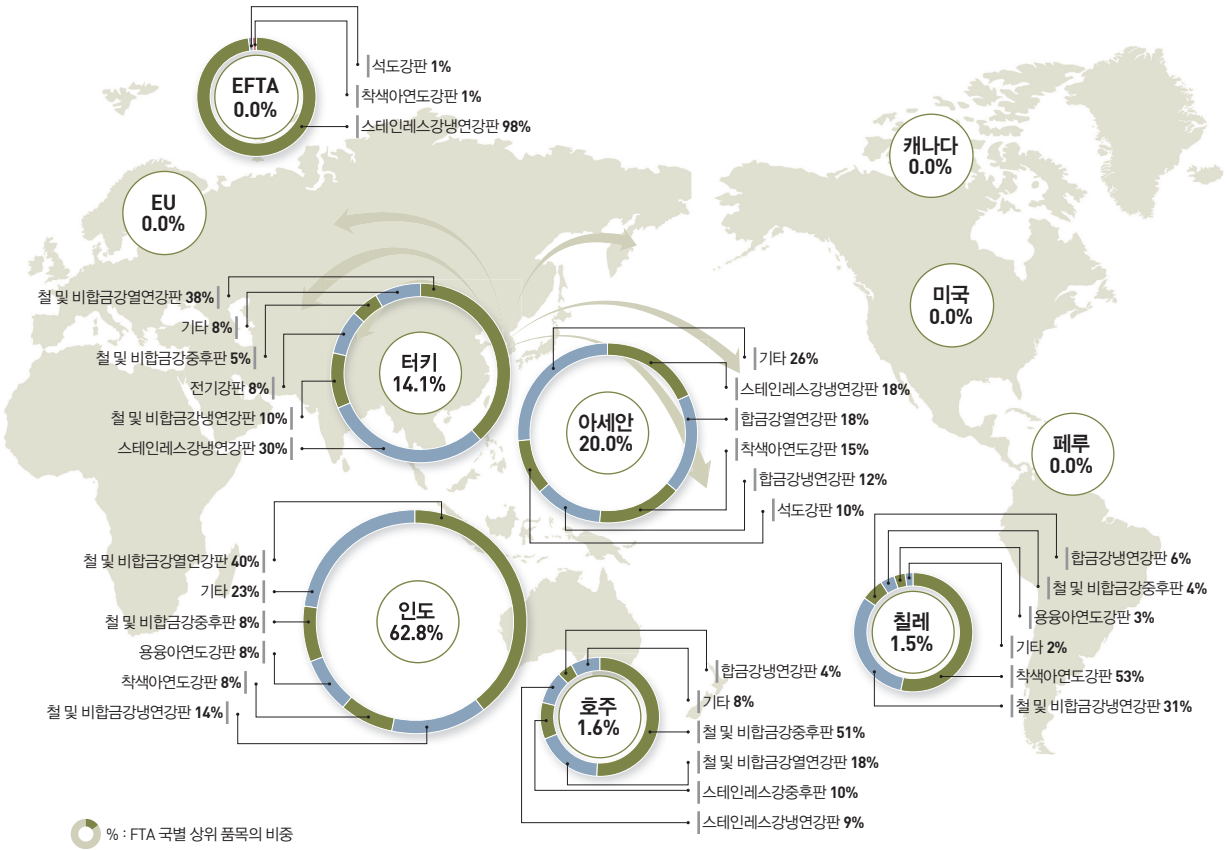

협정별 철강판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1,151,944,023

철강판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철 및 비합금강열연강판	355,273,454	30.8
2	철 및 비합금강냉연강판	133,351,114	11.6
3	스테인레스강냉연강판	120,796,855	10.5
4	착색아연도강판	104,481,868	9.1
5	용융아연도강판	80,338,766	7.0
6	철 및 비합금강중후판	74,247,086	6.4
7	합금강냉연강판	72,224,713	6.3
8	합금강열연강판	63,893,239	5.5
9	전기강판	57,941,524	5.0
10	석도강판	29,913,687	2.6
총계		1,151,944,023	100.0

08 수출 컴퓨터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47,285,436 (1%)	3,899,444,207 (99%)	3,946,729,6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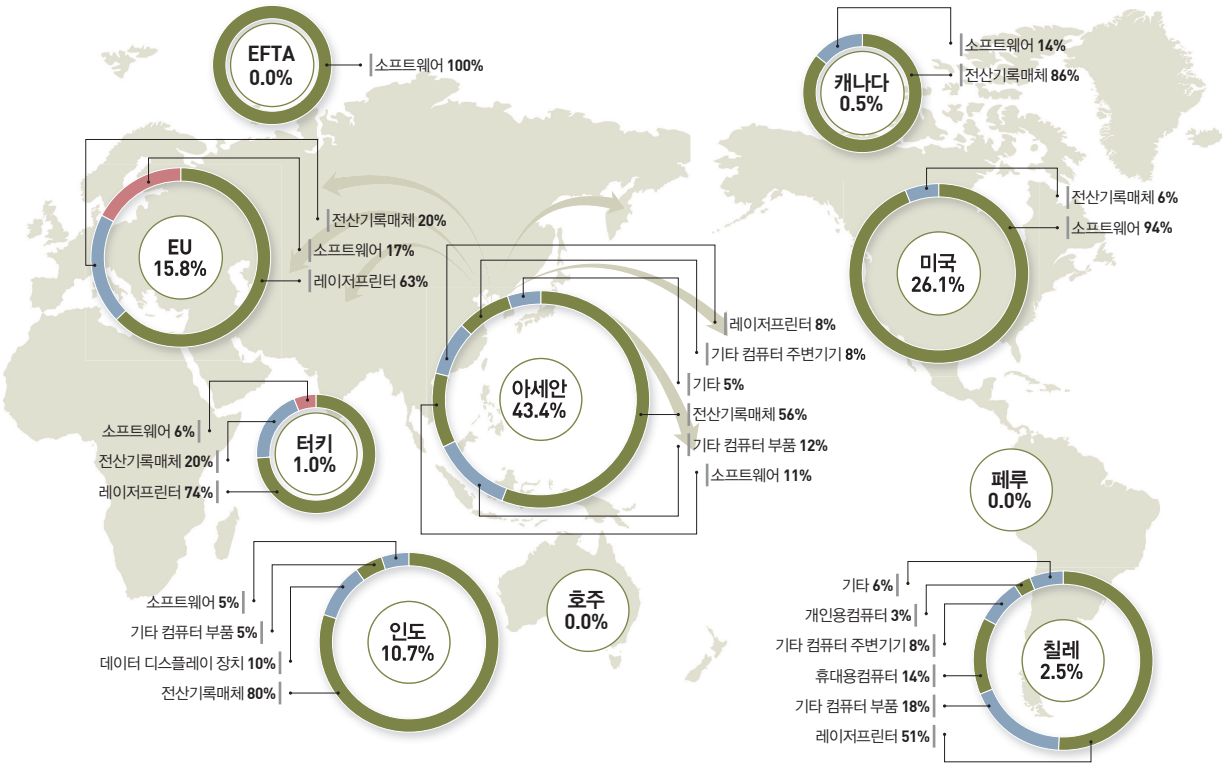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컴퓨터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47,285,436

컴퓨터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전산기록매체	18,132,090	38.3
2	소프트웨어	15,561,211	32.9
3	레이저프린터	7,282,301	15.4
4	기타 컴퓨터 부품	2,859,298	6.0
5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1,685,345	3.6
6	데이터 디스플레이 장치	891,480	1.9
7	개인용컴퓨터	445,360	0.9
8	스캐너	229,900	0.5
9	휴대용컴퓨터	177,353	0.4
10	음극선관 단말기	21,098	0.0
총계		47,285,436	100.0

09 수출 원동기 및 펌프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745,184,539 (20%)	3,016,634,162 (80%)	3,761,818,7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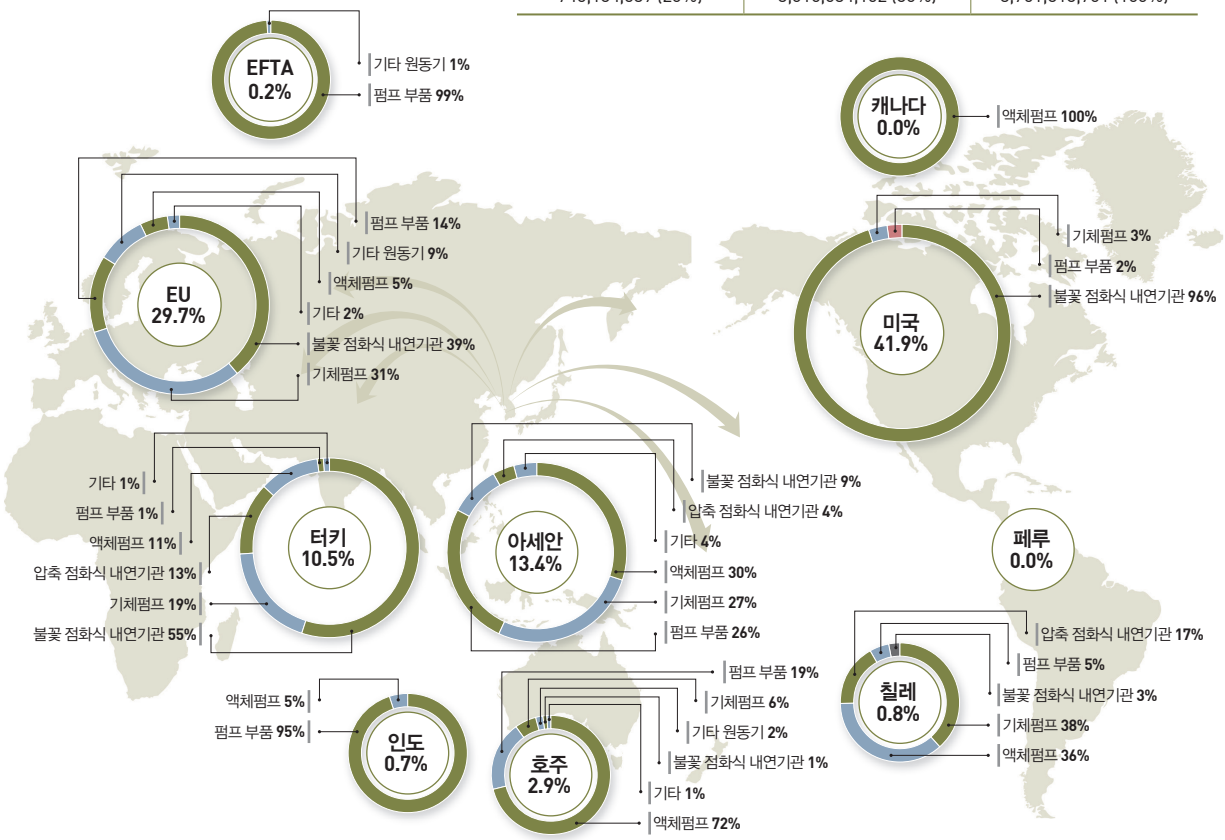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원동기 및 펌프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745,184,539

원동기 및 펌프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436,800,017	58.6
2	기체펌프	122,636,100	16.5
3	펌프 부품	72,259,114	9.7
4	액체펌프	67,823,523	9.1
5	기타원동기	24,757,397	3.3
6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	16,891,435	2.3
7	원동기 부품	4,016,953	0.5
	총계	745,184,539	100.0

*불꽃 점화식 : 가솔린 *압축 점화식 : 디젤

10 수출 전자응용기기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640,355,364 (23%)	2,205,209,368 (77%)	2,845,564,73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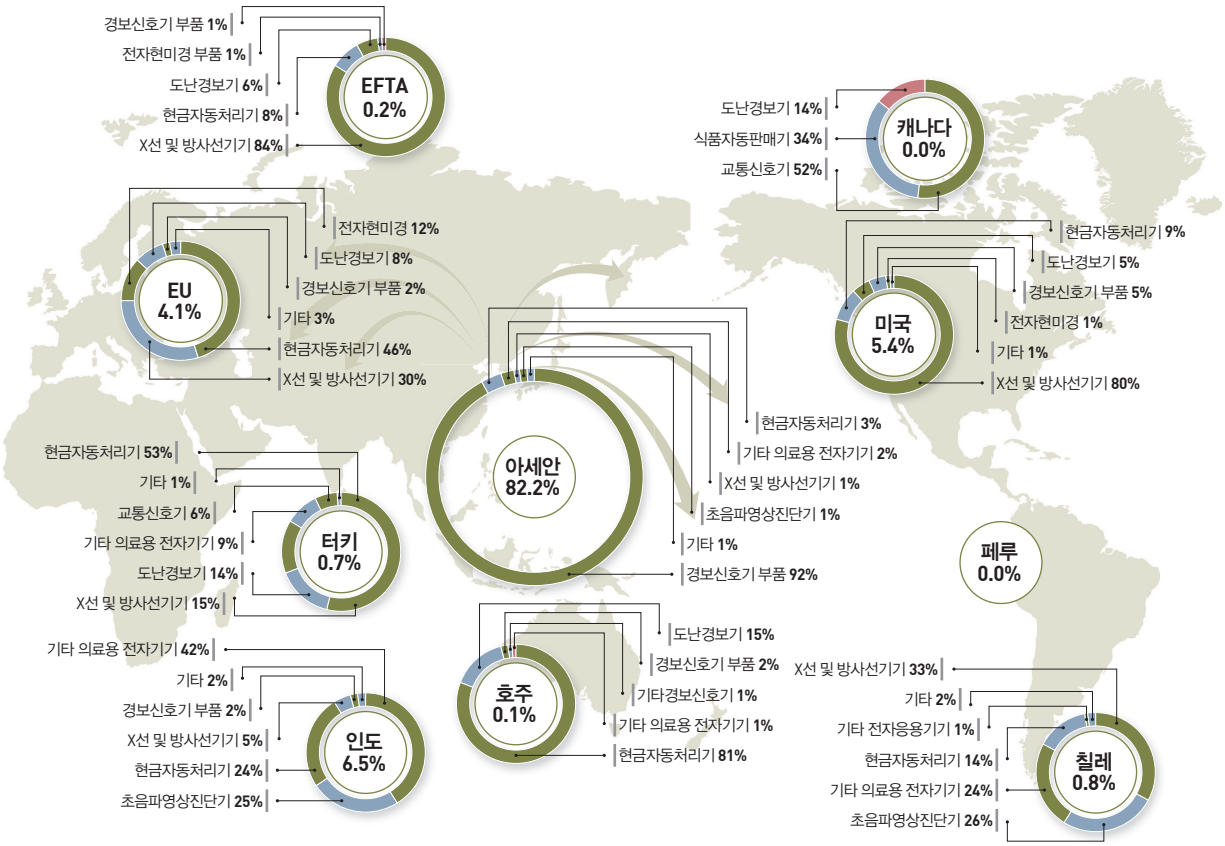

협정별 전자응용기기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640,355,364

전자응용기기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경보신호기부품	488,342,833	76.3
2	X선 및 방사선기기	47,566,515	7.4
3	현금자동처리기	42,090,517	6.6
4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	28,009,774	4.4
5	초음파영상진단기	17,383,465	2.7
6	도난경보기	6,284,191	1.0
7	전자현미경	5,166,512	0.8
8	교통신호기	1,817,262	0.3
9	X선 및 방사선기기 부품	716,393	0.1
10	교통신호기 부품	630,171	0.1
총계		640,355,364	100.0

01 수입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5,027,645,811 (9%)	48,005,607,726 (91%)	53,033,253,5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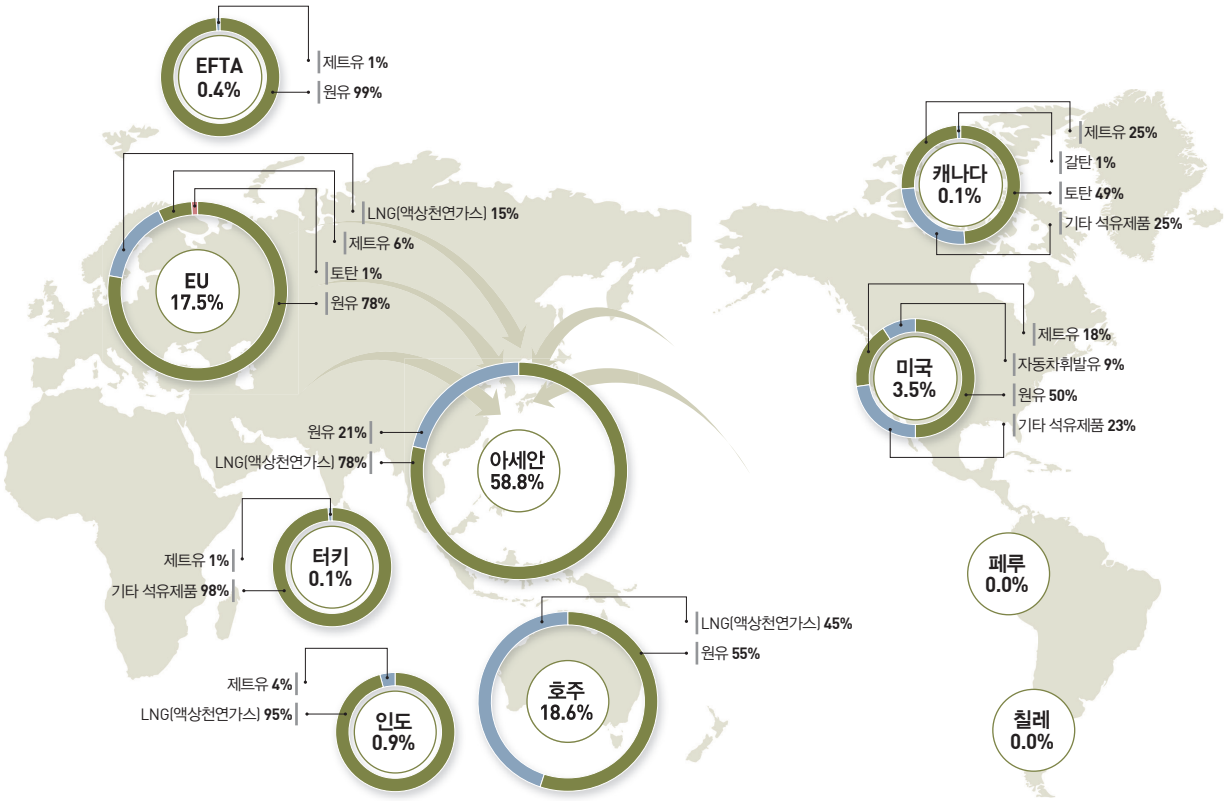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5,027,645,811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LNG(액상천연가스)	2,948,043,705	58.6
2	원유	1,938,923,001	38.6
3	제트유	105,134,257	2.1
4	기타 석유제품	64,968,800	1.3
5	자동차휘발유	16,723,355	0.3
6	토탄	8,321,244	0.2
7	기타 석탄	233,860	0.0
8	갈탄	106,732	0.0
9	PNG(기상천연가스)	36,154	0.0
10	유연탄	-	-
총계		5,027,645,811	100.0

02 수입 자동차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5,601,462,322 (75%)	1,880,420,298 (25%)	7,481,882,6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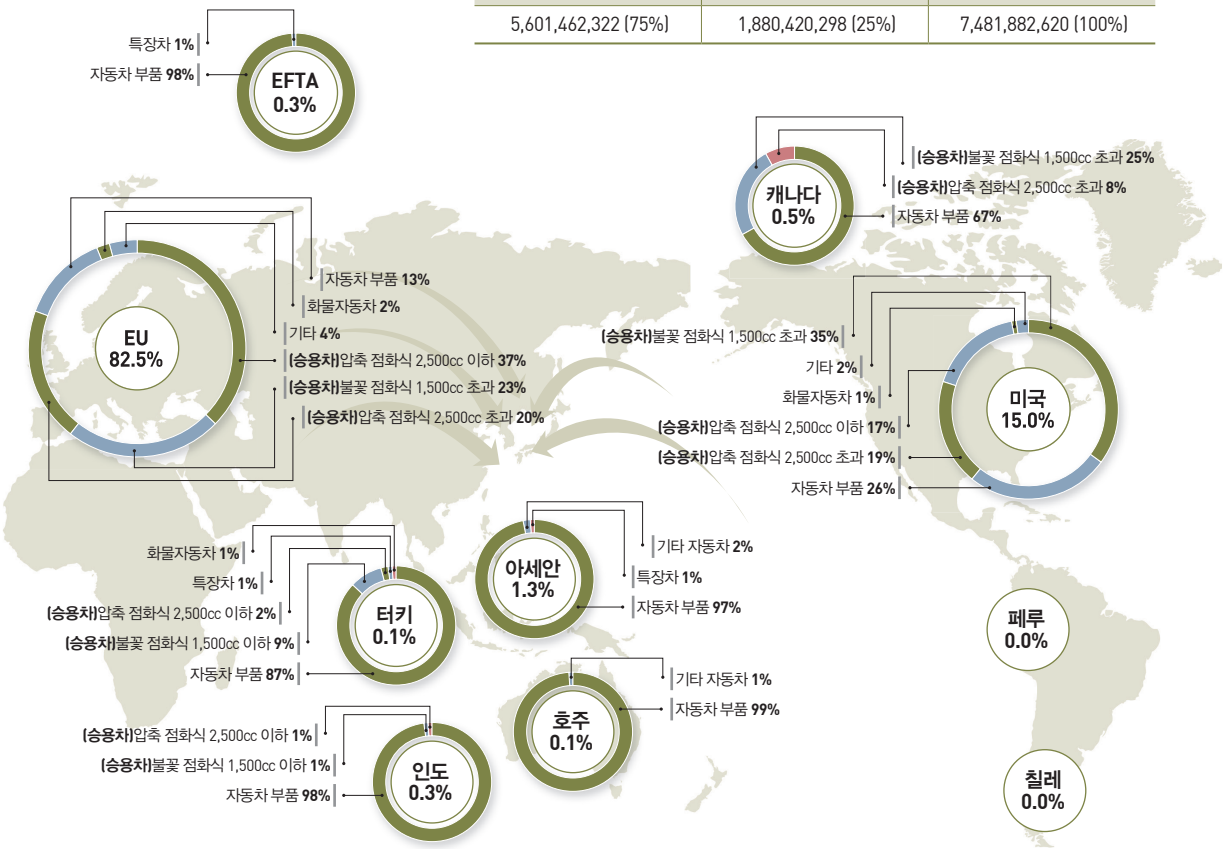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자동차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5,601,462,322

자동차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승용차)압축 점화식 2,500cc 이하	1,869,992,593	33.4
2	(승용차)불꽃 점화식 1,500cc 초과	1,379,232,382	24.6
3	(승용차)압축 점화식 2,500cc 초과	1,084,352,536	19.4
4	자동차 부품	973,839,555	17.4
5	화물자동차	118,843,478	2.1
6	기타 자동차	80,452,412	1.4
7	특장차	56,187,764	1.0
8	(승용차)불꽃 점화식 1,500cc 이하	39,359,165	0.7
9	기타 승용차	5,835,851	0.1
10		-	-
총계		5,601,462,322	100.0

*불꽃 점화식 : 가솔린 *압축 점화식 : 디젤

03 수입 의류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1,567,167,959 (46%)	1,809,884,982 (54%)	3,377,052,9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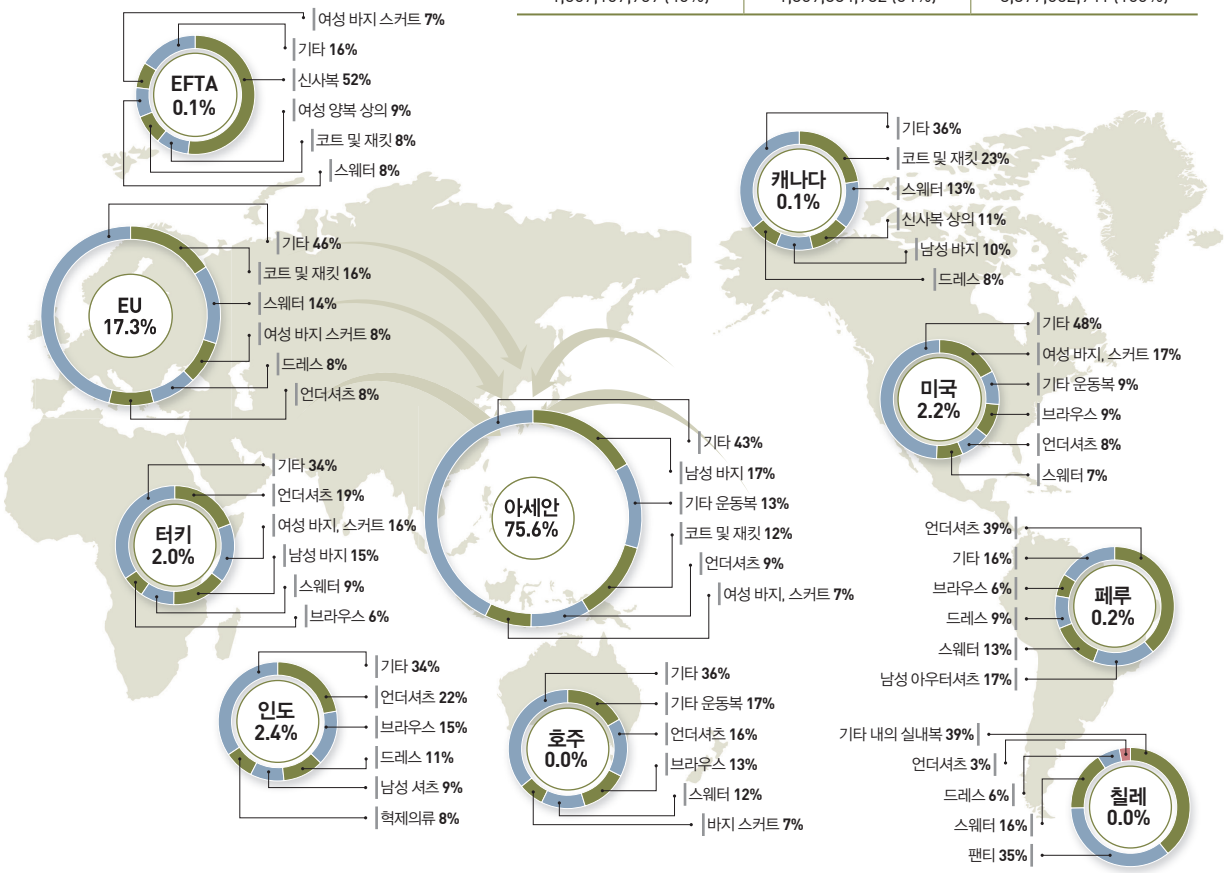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의류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1,567,167,959

의류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남성 바지	221,911,551	14.2
2	코트 및 재킷	188,215,802	12.0
3	기타 운동복	162,435,715	10.4
4	언더셔츠	140,425,914	9.0
5	여성 바지, 스커트	120,596,869	7.7
6	스웨터	84,306,722	5.4
7	브라우스	83,297,720	5.3
8	코팅제 의류	75,804,638	4.8
9	바지 스커트	55,702,575	3.6
10	드레스	53,138,237	3.4
총계		1,567,167,959	100.0

원동기 및 펌프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1,492,864,535 (45%)	1,804,708,285 (55%)	3,297,572,8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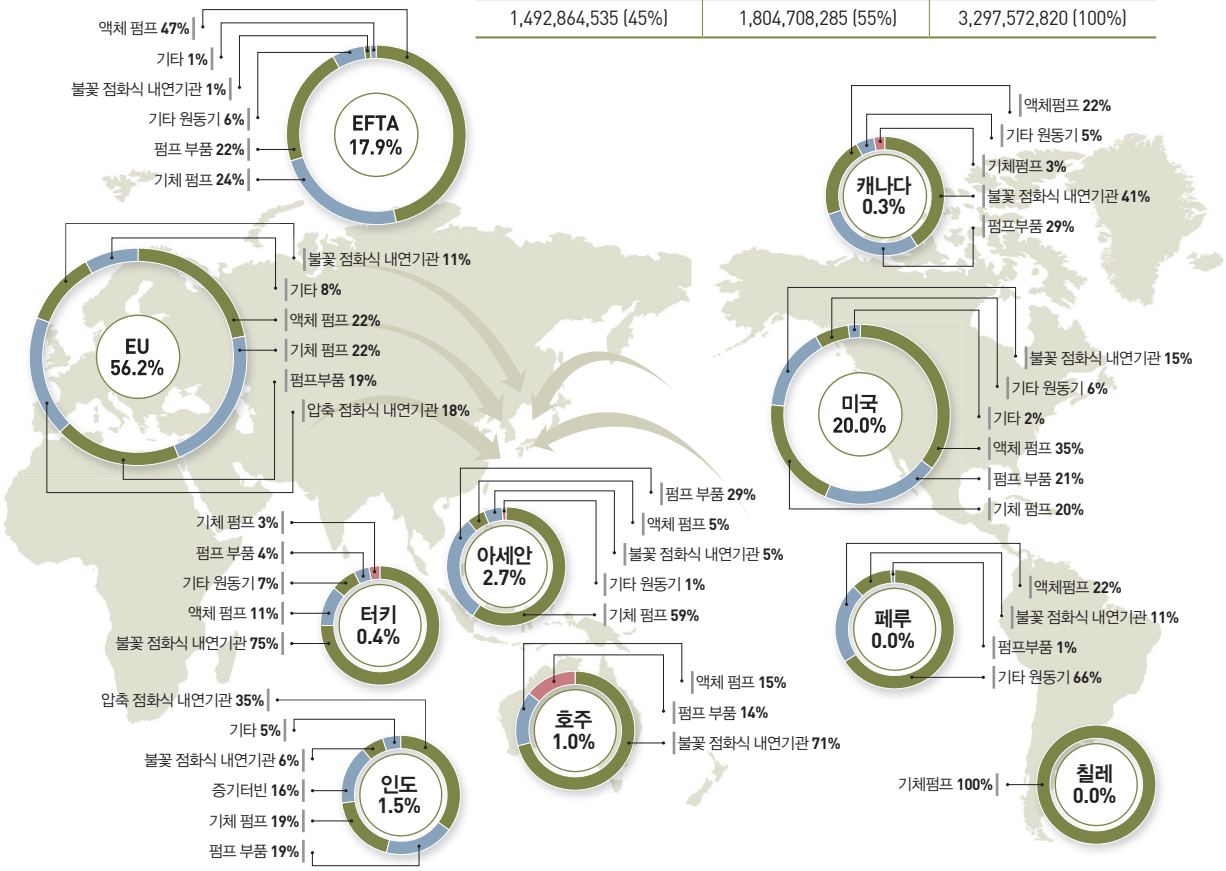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원동기 및 펌프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1,492,864,535

원동기 및 펌프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액체 펌프	428,435,542	28.7
2	기체 펌프	335,550,618	22.5
3	펌프 부품	301,414,067	20.2
4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	163,706,962	11.0
5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159,359,920	10.7
6	기타 원동기	92,325,475	6.2
7	원동기 부품	16,488,947	1.1
8	증기터빈	6,341,684	0.4
9	수력터빈	-	-
10			-
총계		1,492,864,535	100.0

05 수입 계측제어분석기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545,116,041 (17%)	2,731,939,477 (83%)	3,277,055,51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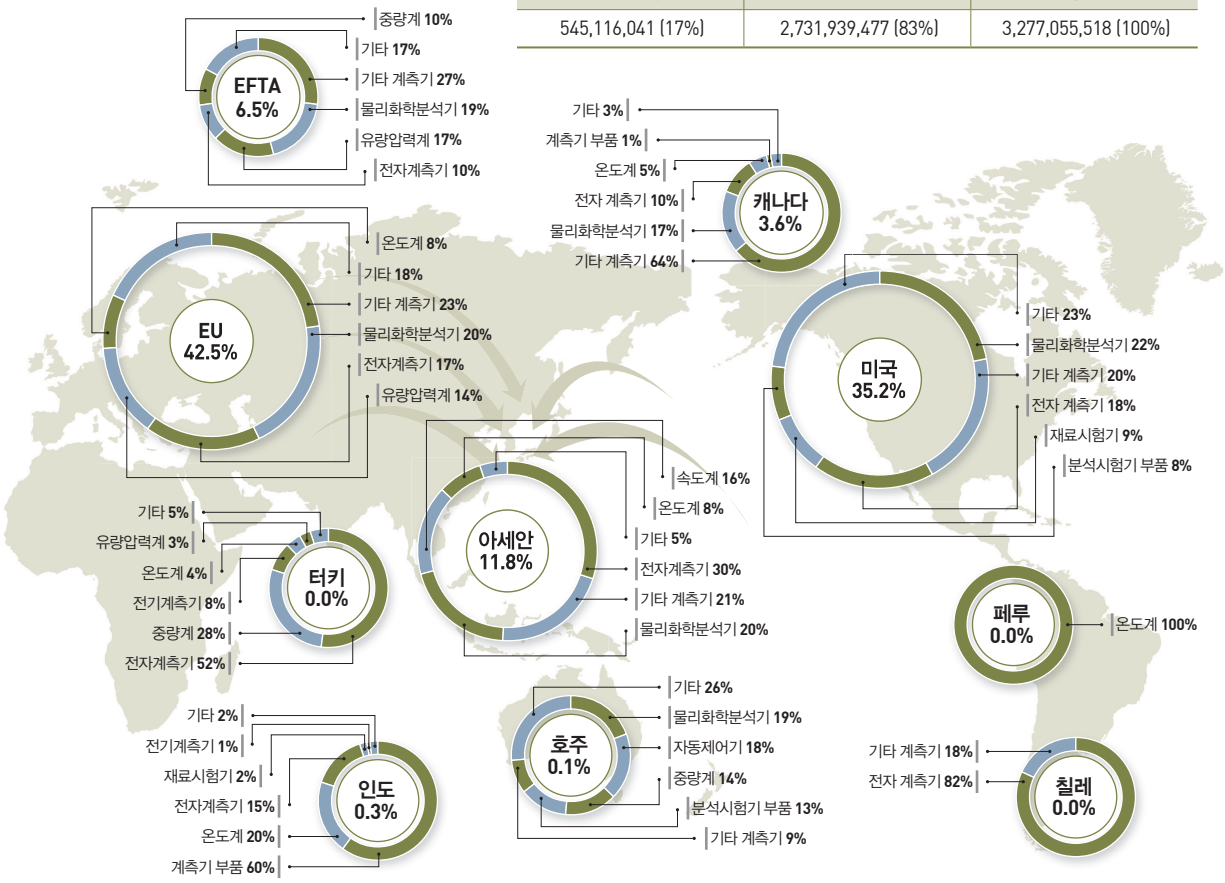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계측제어분석기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545,116,041

계측제어분석기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 계측기	132,006,910	24.2
2	물리화학분석기	112,732,809	20.7
3	전자계측기	99,911,347	18.3
4	유량압력계	48,225,880	8.8
5	온도계	35,320,148	6.5
6	재료시험기	30,268,934	5.6
7	분석시험기 부품	28,808,072	5.3
8	속도계	22,129,625	4.1
9	계측기 부품	14,238,001	2.6
10	전기 계측기	12,415,253	2.3
총계		545,116,041	100.0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1,143,442,804 (35%)	2,086,977,142 (65%)	3,230,419,9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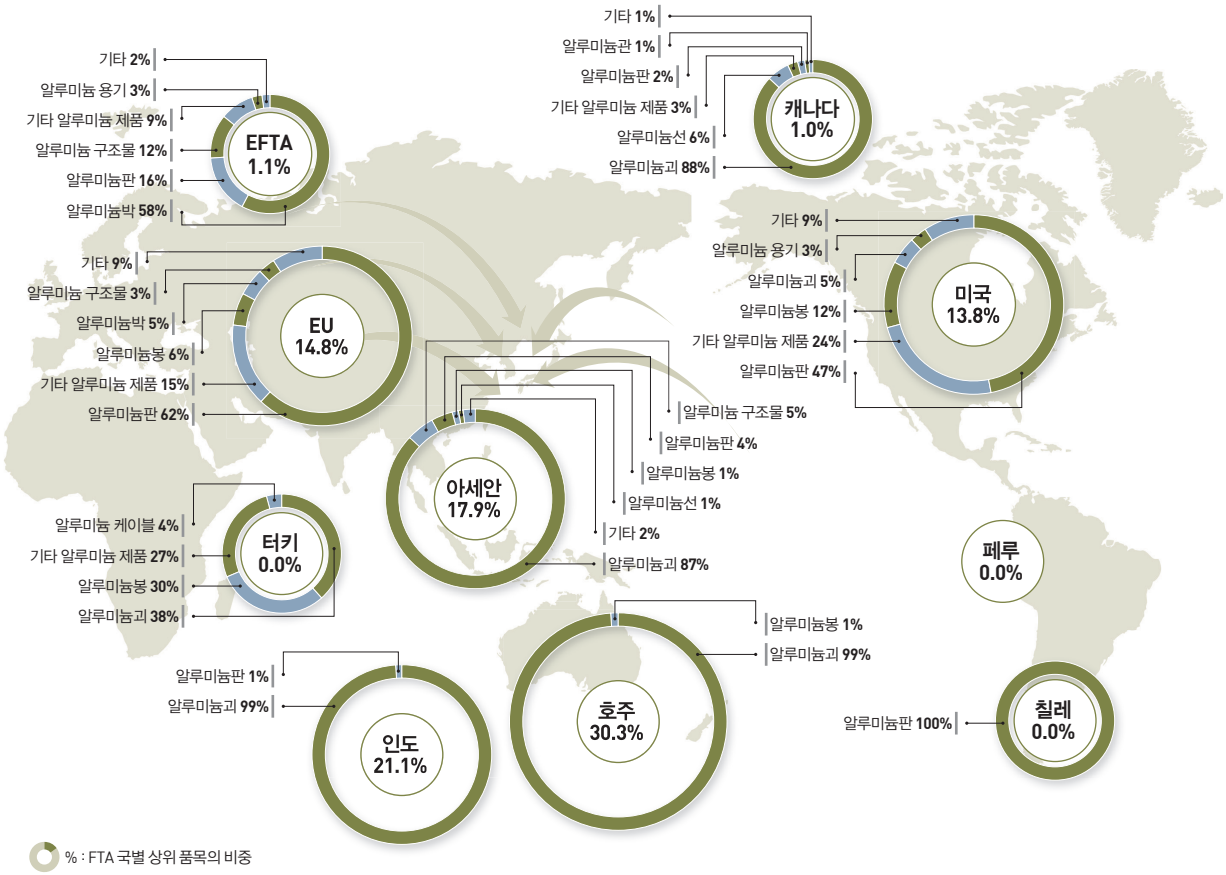

협정별 알루미늄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1,143,442,804

알루미늄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알루미늄괴	780,813,633	68.3
2	알루미늄판	192,020,326	16.8
3	기타 알루미늄 제품	66,670,841	5.8
4	알루미늄봉	33,793,450	3.0
5	알루미늄 구조물	20,861,454	1.8
6	알루미늄박	20,587,578	1.8
7	알루미늄 용기	9,091,895	0.8
8	알루미늄선	7,619,414	0.7
9	알루미늄관	5,858,448	0.5
10	알루미늄분	4,123,152	0.4
총계		1,143,442,804	100.0

07 수입 동제품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904,036,399 (30%)	2,108,996,355 (70%)	3,013,032,7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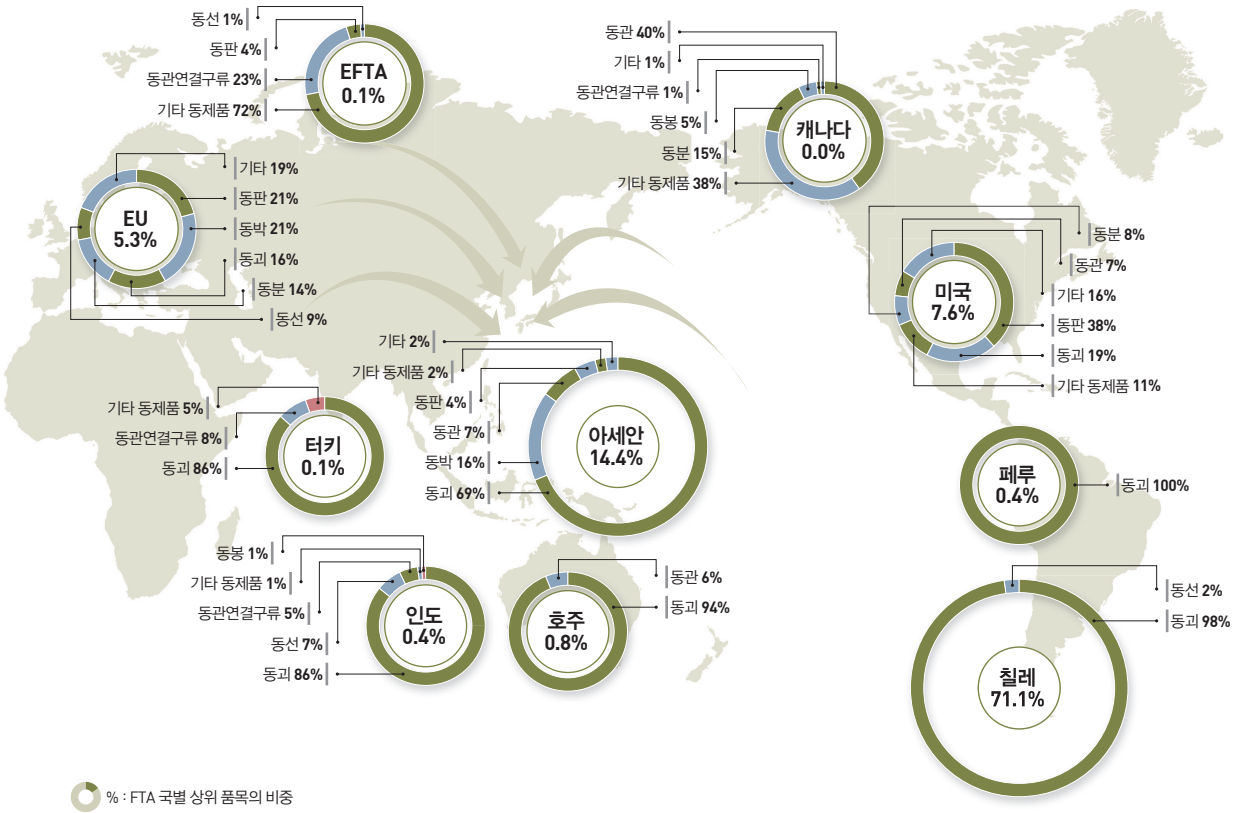

협정별 동제품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904,036,399

동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동괴	755,972,336	83.6
2	동판	43,776,844	4.8
3	동박	38,668,121	4.3
4	동선	18,874,659	2.1
5	동관	16,088,099	1.8
6	기타 동제품	14,827,774	1.6
7	동분	12,909,035	1.4
8	동봉	4,145,611	0.5
9	동스크랩	2,581,618	0.3
10	동관연결구류	2,327,942	0.3
총계		904,036,399	100.0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1,140,471,791 (39%)	1,748,259,394 (61%)	2,888,731,18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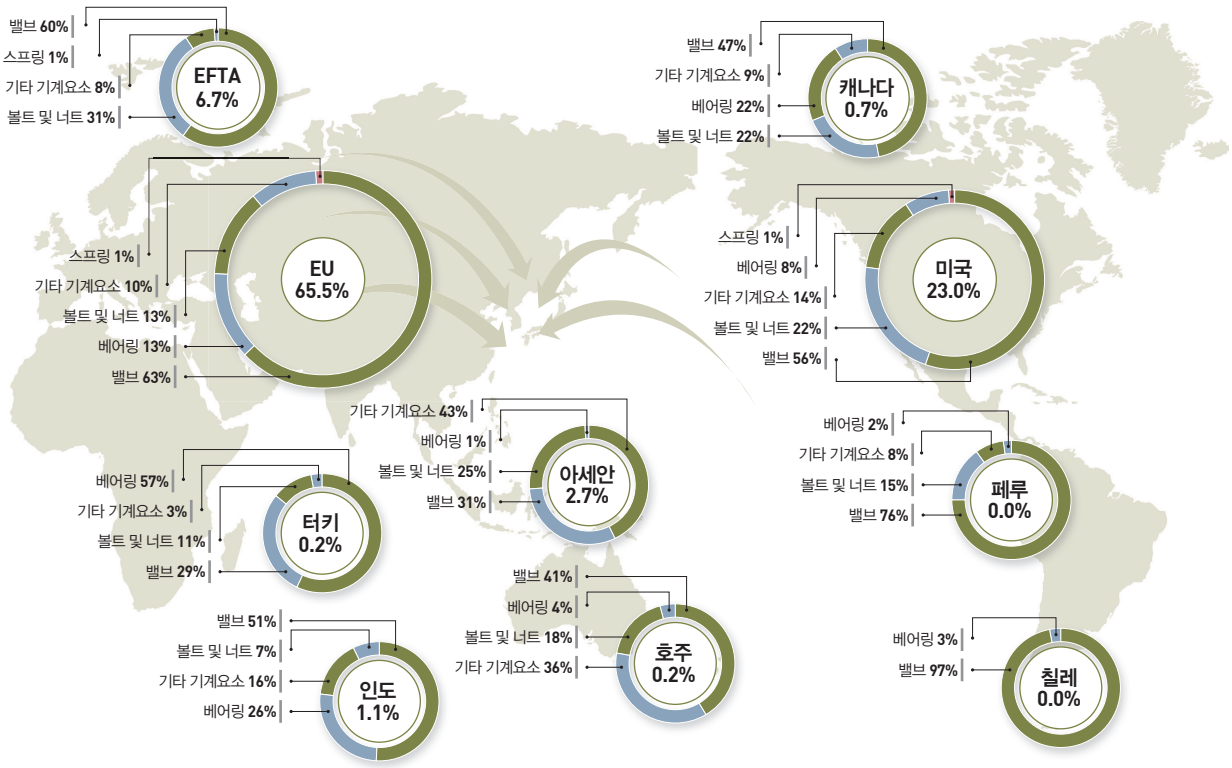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기계요소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1,140,471,791

기계요소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밸브	692,543,512	60.7
2	볼트 및 너트	187,224,368	16.4
3	기타 기계요소	139,480,680	12.2
4	베어링	127,880,144	11.2
5	스프링	6,684,138	0.6
6			-
7			-
8			-
9			-
10			-
총계		1,140,471,791	100.0

09 수입 식물성 물질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1,341,802,895 (47%)	1,537,876,997 (53%)	2,879,679,8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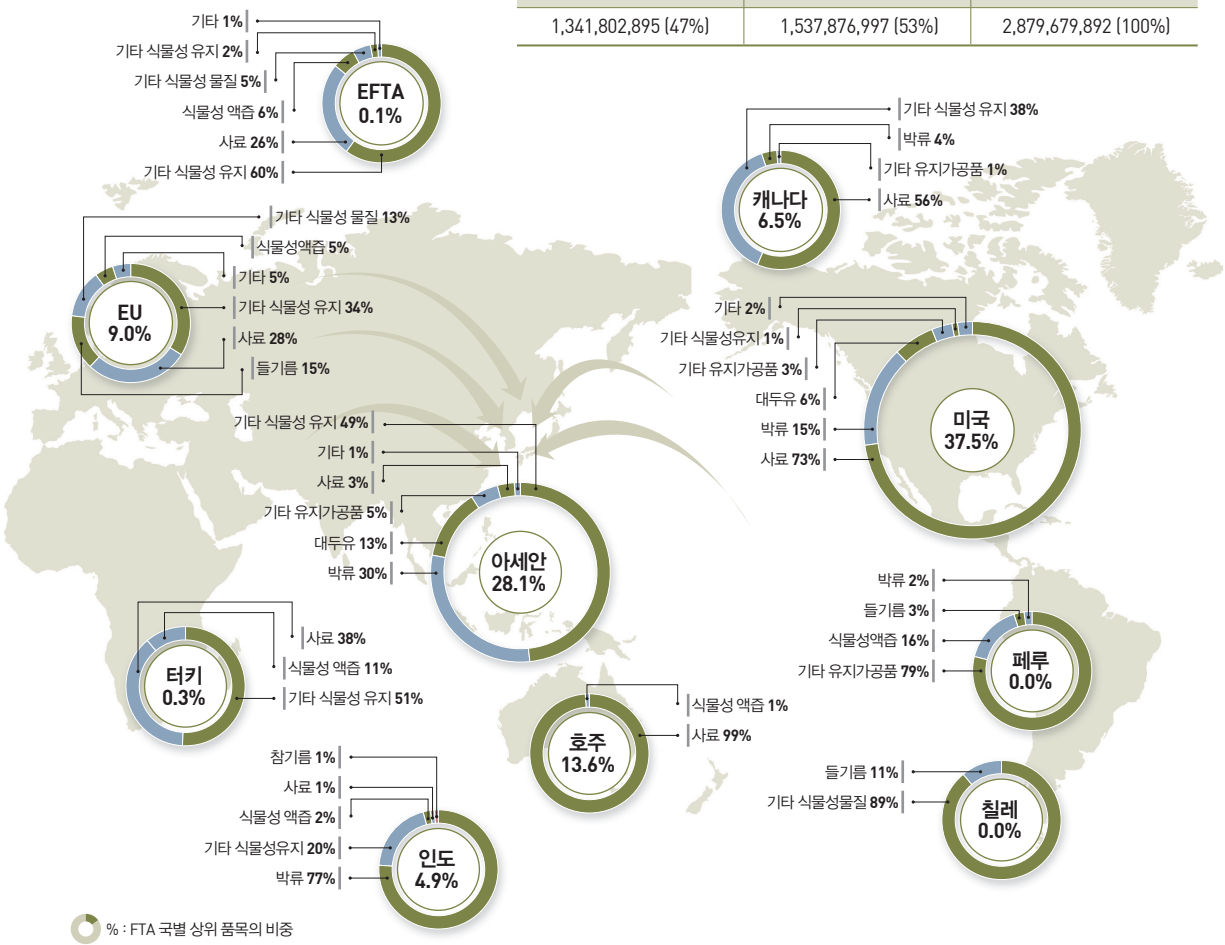

협정별 식물성물질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1,341,802,895

식물성물질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사료	645,959,545	48.1
2	기타 식물성 유지	280,793,860	20.9
3	박류	243,402,927	18.1
4	대두유	79,266,656	5.9
5	기타 유지가공품	44,830,963	3.3
6	들기름	20,779,256	1.5
7	기타 식물성 물질	19,635,056	1.5
8	식물성 액즙	13,060,743	1.0
9	마아가린	4,435,911	0.3
10	농산물 왁스	810,947	0.1
총계		1,341,802,895	100.0

10 수입 플라스틱 제품

단위 : 달러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695,058,637 (25%)	2,044,861,310 (75%)	2,739,919,94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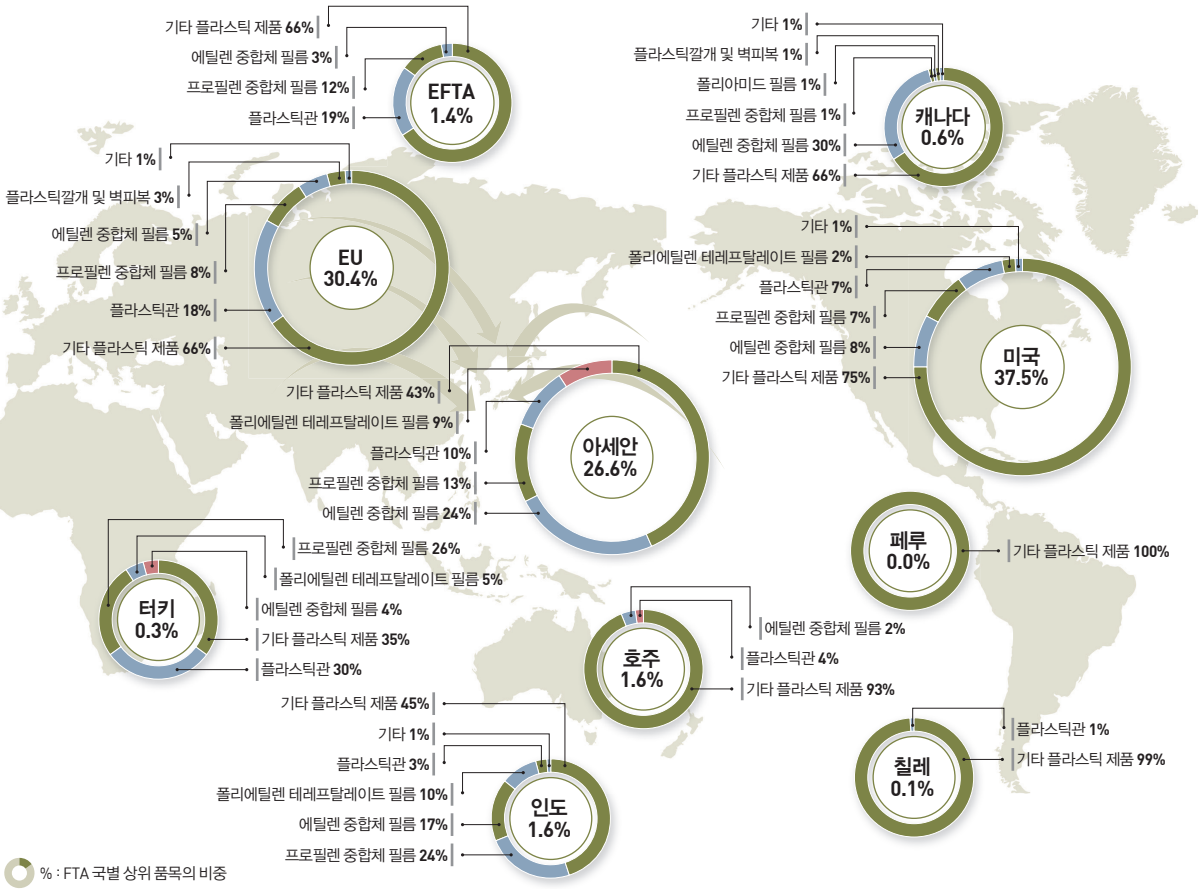

협정별 플라스틱 제품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695,058,637

플라스틱 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 플라스틱 제품	447,353,802	64.4
2	플라스틱관	94,082,174	13.5
3	에틸렌 중합체 필름	80,310,577	11.6
4	프로필렌 중합체 필름	67,368,564	9.7
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23,214,052	3.3
6	플라스틱깔개 및 벽피복	7,862,278	1.1
7	폴리아미드 필름	1,132,444	0.2
8			-
9			-
10			-
	총계	695,058,637	100.0

FTA
TRADE
REPORT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FTA 무역리포트]를 읽고 느낀 점이나 편집실에 바라는 점을 "독자의 소리"를 통해 소개해드리며, 앞으로 [FTA 무역리포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fta-report@origi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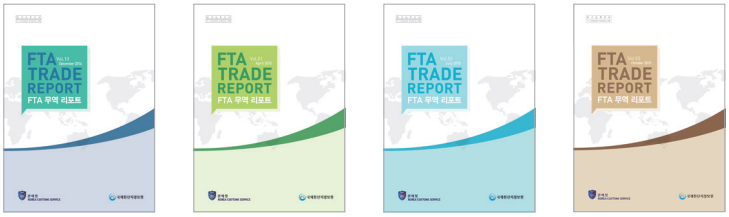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 · 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분석

FTA 맞춤형 교육, 자격검정

관세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FTA 연구용역 수행

협정별 · 산업별 · 품목별
FTA 활용현황 연구 분석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보급, 지원

수출입 기업 FTA 활용지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대표전화 ☎ 031.600.0701~3
www.orgin.or.kr

FTA 무역 리포트

Vol.04 December 2015 〈비매품〉

발 행 일	2015년 12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 · 인쇄	아미고디자인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